

FULLERTON SCHOOL DISTRICT ANNUAL NOTICE TO PARENTS/GUARDIANS 2025-2026 SCHOOL YEAR

TABLE OF CONTENTS 목차

Student Discipline 학생 훈육	Page 2
Student Records 학생 기록	Page 3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Page 5
Attendance 출석	Page 7
Non-Discrimination 비-차별	Page 8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 학생	Page 8
Miscellaneous 기타	Page 8
Attachment 1 - 정학/퇴학	Page 11
Attachment 2 - 따돌림/괴롭힘 정책	Page 14
Attachment 3 - FERPA 가족 교육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Page 15
Attachment 4 - 살충제/제초제	Page 17
Attachment 5 - 편입학 정책	Page 18
Attachment 6 - 면제적 결석/질병	Page 21
Attachment 7 - 학생 출석 달력	Page 25
Attachment 8 - 성희롱	Page 26
Attachment 9 - 대안 학교	Page 32
Attachment 10 - 불만제기 통합 처리 절차	Page 33
Attachment 11 - 의약품 관리/양식	Page 47
Attachment 12 - 응급 처치 용품	Page 50
Attachment 13 - 알러지 인식	Page 51
Attachment 14 -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정보	Page 52
Attachment 15 - 목발/휠체어 사용 절차	Page 56
Attachment 16 - 머릿니/유충 정보	Page 60
Attachment 17 - HPV 공지	Page 61
Attachment 18 - 학교 화장실	Page 63
Attachment 19 - 정신 건강 정보	Page 64
Attachment 20 - 시정 정책/행동 강령	Page 69
Attachment 21 - 학부모 참여 정책	Page 73
Attachment 22 - 방문객/외부인사 정책	Page 79
Attachment 23 - 통학 교통 운임	Page 81
Attachment 24 - 영양 서비스	Page 82
Attachment 25 - 학생의 이민 신분/지위	Page 88
Attachment 26 - 보편적 행동 검사	Page 94
Attachment 27 - 비상 사태 시의 절차	Page 95
Attachment 28 - 언어 프로그램	Page 97
Attachment 29 - CAASPP 주 학력 평가시험	Page 99
Attachment 30 - 국제 학사 학위 과정	Page 100
Attachment 31 - 애완 동물 및 교실 동물 면제	Page 101
Attachment 32 - 집이 없는 아동의 교육 / 권리와 보호	Page 102
Attachment 33 - 위탁청소년 권리	Page 103
Attachment 34 - 총기 안전에 관한 알림	Page 105
Attachment 35 - 오피오이드 자료표	Page 106

KEY TO LEGAL REFERENCES

법률적 참조를 위한 이해

줄임말	공식 명칭
B&PC	Business & Professional Code 사업 및 전문적인 규정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캘리포니아 규정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 규정
EC	Education Code 교육법
ESSA	Every Student Succeeds Act 모든 학생 성공 법안
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 Privacy Act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H&SC]	Health & Safety Code 건강 및 안전 규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자 교육법
LC	Labor Code 노동법
PC	Penal Code 형사법
§ 504	See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3 년 재활법 504 항
USC	United States Code 미국 법규
W&IC	Welfare & Institutions Code 복지 및 제도 법규

친애하는 학부모 /보호자님께: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80 항은 정규 첫 학기 또는 분기 초에 각 교육구의 이사회가 교육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학부모/보호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및 미국 법의 다른 조항들 또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조항 48982 는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처음 등록할 때와 매년 학년 초에 시행하는 연간 데이터 확인 과정 중에 연례 정보 검토 (Annual Information Review, AIR) 학부모 포털을 통해 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십시오. 연간 정보 검토 (AIR)를 완료하는 동안, 귀하의 서명은 귀하의 권리에 대해 통보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특정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가 주어졌거나 보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및 미국 법은 자녀의 교육과 출석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공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풀러튼 교육구는 법에 따라 공지 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사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토인 "훌륭한 학교 - 성공하는 아이들" ("Great Schools - Successful Kids")은 모든 학생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대인 관계 기술을 습득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개발시켜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STUDENT DISCIPLINE

학생 훈육

RULES PERTAINING TO STUDENT DISCIPLINE (EC §§35291, 48980):

(학생 훈육 관련 규정)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이사회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학교들의 행정과 징계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학생의 품행, 효율적인 교실 운영과 학부모/보호자 참여 및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징계의 필요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oard Policy 5144). 이를 위해 각 학교는 법에 따라 징계 규정을 개발했습니다. 학생 훈육과 관련된 규정들은 각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UTY CONCERNING CONDUCT OF STUDENTS (EC §44807):

(학생의 품행 의무) 풀러튼 교육구는 학생들이 직면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추가적인 책임을 학교들에 부과한 법안에 기인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또는 휴게 시간 동안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법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치, 자긍심, 책임있는 태도로 의견을 발전시키고, 자신이 내린 결정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이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과 그들이 택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소통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1714 조에 따라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1714.3 조는 미성년자의 총기 발사로 인한 인명 손상에 대해서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UTIES OF PUPILS (EC §48908, 5 CCR §300):

(학생의 의무) 모든 학생들은 정시 및 규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교사와 권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지시를 즉각 따라야 하며, 질서와 예의 범절을 준수하고, 근심하게 공부하며, 자신의 교사와 권위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며, 학교 급우들에게 친절하고 예의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불경스럽고 저속한 언어 사용을 철저히 삼가해야 합니다.

SAFE STORAGE OF FIREARMS AND GUN VIOLENCE: (EC §§48980, 49392):

풀러튼 교육구는 풀러튼 경찰국과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기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된 아동 총기 접근 방지법에 관한 정보는 첨부 34 를 참조하십시오. 총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총기 보관함에 잠그고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탄약을 별도로 잠근 상태로 보관). 다른 집(놀이 날짜, 이웃, 가족)에 총기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살과 우울증의 위험 요인과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End Family Fire 및 Be Smart 웹사이트의 두 가지 추가 리소스는 가족의 총기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ATTENDANCE OF SUSPENDED CHILD'S PARENT/GUARDIAN (EC §48900.1, LC §230.7):

(정학처분 받은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 출석)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교사에 의해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교실에서 하루 중 일부 수업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정책 (BP 5144.1, Attachment 1) 을 채택 했습니다. 학부모 출석은 학생이 수업에 복귀하는 날 또는 그 후 일주일 이내에 요청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근로자를 직장으로부터 해고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 할 수 없습니다.

CAUSE FOR SUSPENSION (EC §§48900, 48900.2, 2.15, 48900.3, 48900.4, 48900.7, & 48901):

(정학의 근거)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육감/피지명인 또는 학교장이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세부 조항에 따라 특정지어지는 행동을 그 학생이 범했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권고 받지 않을 것입니다:

- (a) (1)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했거나 유발하려고 시도했거나 또는 위협을 한 경우
(2) 정당 방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과 물리적 행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 (b) 어떤 종류이든 화기, 칼, 폭약, 혹은 레이저 포인트를 포함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공급한 경우, 형사법 조항 417.27(b)에 의거하여
- (c) 처방약 Soma (쏘마), 알코올성 음료 또는 모든 종류의 취하게 하는 물질을 소지, 사용, 판매, 공급하거나, 또는 모든 통제 물질의 영양 하에 있는 경우
- (d) 알코올성 음료, 혹은 어떤 종류의 마취제이든, 통제된 물질을 제공, 제작, 또는 판매를 위해 협상한 경우, 그리고 그 액체와 물질 또는 물건이 알코올성 음료 혹은 마취제와 같은 통제 물질로 간주되는 것을 사람에게 판매, 전달, 또는 공급할 경우
- (e) 약탈 또는 강탈행위를 범했거나 시도한 경우
- (f) 전자 파일 및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개인 사유 재산 혹은 학교 재산에 대해 파손을 초래했거나 초래를 시도한 경우
- (g) 전자파일 및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 학교재산 혹은 개인 사유재산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고 시도한 경우
- (h) 담배, 어떤 종류든지 담배가 포함되어있는 제품, 니코틴 제품, 담배, 전자담배와 시가에 국한되지 않는 소형시가, 유사한 담배, 무연담배, 향기를 맡는 담배, 씹는담배, 팩으로 된 담배, 혹은 담배와 유사한 잎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 (i) 불경한 행위와 무례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외설적 행위를 범한 경우
- (j) 마약 관련 기구를 소유, 제공, 혹은 제작하거나, 판매하려고 시도한 경우
- (k) 학교활동을 해방하거나 의도적으로 감독관, 교사, 행정가, 학교 공무원 혹은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하는 다른 학교직원의 적법한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 (6-8 학년)

- (l) 고의적으로 도난당한 학교재산 또는 개인 사유 재산을 받은 행위, 전자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
- (m) 모형 화기를 소유한 경우
- (n) 성폭력 내지 성폭행을 범했거나, 시도한 경우
- (o) 학생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또는 증인이 된 학생에게 앙갚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징계 과정에서 항변하는 증인 혹은 증인인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p) 처방약 Soma (쏘마)를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판매를 위한 약속을 하거나, 판매를 위한 협상을 하거나, 혹은 판매한 경우
- (q) EC 32050 정의에 의거, 가담하거나, 가담을 시도하거나, 혹은 신고식 행위를 한 경우
- (r) 포함되지만, 국한되지는 않는, 구체적으로 학생 혹은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지시된 전자 행위 수단에 의한 따돌림/괴롭힘을 의미하는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 (s)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의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주는 일에 보조, 그리고/혹은 충동할 경우

EC 48900.2, 212.5 – 성희롱 시도 (gr. 4-8)

EC 48900.3 – 증오폭력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발을 시도, 위협하거나, 혹은 가담하는 경우 (gr. 4-8)

EC 48900.4 – 학생(들) 혹은 교육구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에 연루된 경우, 혹은 적대적 교육환경이나 위협을 조장하는 경우 (gr. 4-8)

EC 48900.7 – 테러 위협 조작.

위협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학교 연락 담당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즉시 모든 위협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수색이 위협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EC 49394). EC 49393 은 위협 또는 인지된 위협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교 관계자가 즉시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ULLYING POLICY:

(따돌림/괴롭힘 정책)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Bullying-따돌림/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출석과 학업에 대한 해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구 직원들은 학생의 안전을 최상의 순위로 정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학생이든 따돌림/괴롭힘행위를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 입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따돌림/괴롭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Attachment 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따돌림/괴롭힘의 피해자인 경우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학교의 정원이 찬 경우, 풀러튼 교육구 내 다른 학교로 전학이 허용됩니다. 학군 내에 피해자 학생의 학년으로 전학할 수 있는 학교가 한 곳 밖에 없어 학군내 전학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은 다른 학군으로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전학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Attachment 5 를 참조하십시오.

DRESS CODE (EC §§35183, 51101):

(복장규정)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적절한 복장과 차림새는 생산적인 학습 환경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부지들은 학교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캠퍼스에 보여지는 경우, 학생의 학습 습관이나 교실 또는 학교 환경에서 필요한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며 건강 및/또는 안전에 위험 내지 산만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의복을 금지하는 복장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혹은 대행자는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학교 부지에 적합한 복장 및 차림새 기준을 결정하는 단독 재량을 갖습니다. 학교 부지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학생은 적절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복장 규칙의 사본은 각 학교의 학교장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CIVILITY POLICY (EC §44050):

(시민 정책) 행동 강령에서 직원과 학생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교육구의 서면 사본이 이 통지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Attachment 20을 참조하십시오.

STUDENT RECORDS

학생 기록

PUPIL RECORDS/NOTICE OF PRIVACY RIGHTS OF PARENTS AND STUDENTS (EC §49063, et seq., §49069.7, §49073, 34 CFR 99.30, 34 CFR 99.34 and the federal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학생기록/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통지 및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Types of Student Records:

(학생기록 종류)

학생기록은 인명 정보라기 보다는 학생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직접 관련된 정보인데 그것은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 보존되며 필기, 프린트,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 필름, 디지털, 온라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무수행을 맡은 풀러튼 교육구 직원에 의해 보존되도록 요구됩니다. 학생기록은 학생의 건강기록을 포함합니다.

Responsible Officials:

(책임 담당관들)

자녀의 학교에 있는 학생 기록의 보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다. 풀러튼 교육구에 보존되는 학생 기록들을 위해서는, **Administrative Services/행정부서**와 **Child Welfare and Attendance Office/아동복지출석관리 부서** 책임자들이 맡게 됩니다.

Location of Log/Record:

(업무일지/기록 장소)

법은 업무일지 또는 기록을 각 학생의 기록을 위해 보존하도록 요구하며 그것은 기록과 적법한 관심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받는 모든 사람들, 취급기관들, 혹은 단체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 보존되는 기록들을 위해 업무일지는 교장실에 두게 되며, 풀러튼 교육구 보존의 기록을 위한 업무일지는 행정부, 자녀 복지 출석관리 사무실 책임자에게 두게 됩니다.

School Officials and Employees/Legitimate Educational Interests:

학생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 담당관들과 직원들은 적법한 교육관련사항을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 담당관이란 행정관, 감독관, 검증된 직원 혹은 지원담당직원

(제한되지는 않지만 준교육가, 건강 혹은 의료진 그리고 법률실행직원을 포함),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에서 섬기고 있는 회원들, 풀러튼 교육구가 특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계약을 한 직원 혹은 회사 (변호사, 회계감사관, 교육 커리큘럼 공급자 또는 온라인이나 인공지능 사용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앱 개발자, 혹은 치료 요법사); 교육구가 기관 서비스 또는 기능을 아웃소싱한 공급 업체, 계약자 또는 기타 당사자, 또는 교육구가 커리큘럼, 생산성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 앱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계약한 당사자: 대행사 사회 복지사 또는 아동 복지 기관이 법적 책임과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공공기관들, 다른 공립학교들 혹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도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거나 풀러튼 교육구 학생이 등록할 의향이 있거나 등록하도록 지시되는 학교 체제들: 미성년자의 기록 자문원 등으로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기록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요구자의 적법한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기록들을 위해서만 허락이 됩니다. 요청이 있을 시, 풀러튼 교육구는 동의 없이 교육적 기록을 학생이 등록하기 원하는 학교의 담당관들 또는 학교 공무원 자격을 갖춘 공급 업체나 사람과 공유합니다. 적법한 교육관심사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49076 과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 정책 5152 와 5152.1 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ttachment 3 을 참조하십시오.

Right of Access and Review/Expungement:

(기록 접촉과 검토/삭제의 권리)

귀하께서는 자녀와 관련된다면 어떤 것이든 풀러튼 교육구에 보존되는 모든 기록들에 접촉할 절대적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 학교에 보관된 자료를 보기 원하시면, 교장실로 연락하시거나 혹은 검토하기 원하는 기록들을 확인하는 서면 요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풀러튼 교육구 사무실에 보관된 기록들을 보기 원하시면, 행정 책임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혹은 교육구 사무실은 기록들에 접속하도록 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업무일자를 갖습니다.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서 제적이 일시 정지된 학생의 회복을 위한 과제가 만족스럽게 달성되면, 이사회는 제적 처리과정의 모두 혹은 어떤 것이든 기록들에 대한 삭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렌지 카운티 교육 위원회가 학생 퇴학에 대한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의 결정을 교정하는 지시를 접한다면,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제적 조치와 관련하여 교육구의 기록들과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후에 귀하께서 서면으로 취소 동의서를 제출하면, 풀러튼 교육구는 자녀의 특수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이든지 삭제하기 위하여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Challenging the Content of Records (EC §49070):

(기록내용 이의제기)

귀하는 풀러튼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자녀와 관련된 서면 기록 안에 기술된 어떤 내용이든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서면 요구서를 제출하셔서 기록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것은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틀린 것, (2) 근거가 없는 개인적 결론 혹은 추정, (3) 관찰자의 권한 밖의 결론 혹은 추정, (4) 관측 시간과 장소를 가진 지명된 사람의 개인적인 관측에 근거하지 않는 것, (5) 오판된 것, 혹은 (6) 학생의 다른 권리들 혹은 사생활의 침해에 있는 것입니다.

Copying Costs:

(복사비용)

풀러튼 교육구 규정 1340 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행자가 중복의 직접 비용을 반영하는 사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서비스는 요청한 첫 8 페이지/ 사본은 무료입니다. 추가 페이지/사본은 페이지 당 \$ 0.20 (20 센트)의 비율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Transfer of Records:

(기록 이전)

교육구는 10일 이내로 학생의 영구적 기록 사본을 등록하기 원하는 학교로 보내도록 요구됩니다.

Complaints:

(불만제기)

귀하는 미국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United States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을 준수해야 하는 풀러튼 교육구에 의한 주장된 오류에 대해 연방 가족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USC §1232g)

Prospectus of School Curriculum:

(교과 과정 안내) 자녀의 학교 교과 과정은 최소 매년 일회씩 내용 설명서로 편집되는데 그것은 www.fullertonsd.org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 링크에 접속하여, Educational Services, Curriculum 에 들어 가서 책자의 학년별 사본을 클릭하십시오.

Statement or Response to Disciplinary Actions:

(훈육 조치에 대한 진술 또는 대응) 자녀와 관련된 어떤 훈육 조치에 대한 정보가 자녀의 기록 안에 포함될 때면 언제든지 귀하께서는 자녀 기록 안에 훈육 조치에 대해 서면 진술 또는 대응을 포함할 권리를 가집니다.

Destruction of Student Records:

(학생기록 파기)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학교들이 자료 집계되도록 캘리포니아의 규정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 원본 또는 정확한 복사본의 필수적인 영구 학생 기록 (1급-영구기록) 을 무기한 유지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더 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필수 임시 학생 기록 (2급-선택기록) 의 규정된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3급-처분기록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캘리포니아의 규정들 (5 CCR 432)에 의거하여 파기 처분 됩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학생 기록은 파기되기 전, 풀러튼 교육구에서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했을 때 IDEA 에서 학부모 통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단 학부모/보호자는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정보가 미래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혹은 감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 이전에 학생 기록 사본 및/또는 접속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 기록 파기 요청을 위한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34 CFR 300.624, 5 CCR 16026). 영구적 기록으로 분류되지 않는한, 다른 모든 학생들의 기록들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5년 후에 파기됩니다. (5 CCR 16027)

RELEASE OF DIRECTORY INFORMATION

(EC §49073):

(인명 정보 공개) "Directory Information" 인명 정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학생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공부의 전공분야, 공식적으로 승인된 활동과 운동에의 참여, 운동팀 멤버들의 체중과 신장, 출석날짜, 수여된 학위와 수상, 그리고

학생이 다닌 가장 최근의 이전 공립 혹은 사립학교. 그것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학부모/보호자를 위해 연락정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 담당관들, 혹은 단체들이 인명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학부모회 (PTSA/PTA), 학부모 위원회 (PTA Council), 학교 위원회 (School Site Council), 아동 예술 재단 (All the Arts for All the Kids Foundation), 풀러튼 교육 재단 (Fullerton Education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과 그리고 범죄수사를 돕기 위한 법률 집행 기관, 인명 정보는

계약가, 자문가, 자원봉사자, 혹은 풀러튼 교육구가 업무 혹은 기능을 하청한 개인이 개인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사용과 제공개와 정보에 대한 사용과 보존을 위한 풀러튼 교육구의 요구 조건을 순응한다면 그들에게 인명 정보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가, 자문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른 개인들과 단체들은 그러나 회사들에 제한되지 않는 연감을 발행하는,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 귀 자녀의 역할, 우등생 명부, 표창 목록, 졸업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활동 과일을 프린트하는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 회사들, 또는 교실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커리큘럼, 생산성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섹션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정보도 고용주 및 신문, 잡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뉴스 매체 대표 이외의 개인 영리 법인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의 학교 관계자 및 직원/정당한 교육적 이익 섹션에 설명된 학교 관계자의 면제하에 면제를 받은 개인, 기업 및 판매 업체를 제외하고, 풀러튼 교육구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인명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자녀와 관련된 인명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려면 자녀의 학교 교장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CALIFORNIA COLLEGE GUIDANCE INITIATIVE (EC §§10861.51225.7(f)(3), 51229(a)(6), 60900.5 & 69432.9(c)(2)(A)): (캘리포니아 대학 진학 안내

이니셔티브)

캘리포니아 대학 진학 안내 이니셔티브(CCGI)는 www.CaliforniaCollege.edu 를 관리합니다. 이 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식 대학 및 진로 계획 플랫폼으로, 6 학년 부터 12 학년까지의 모든 캘리포니아 학생과 그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CCGI 는 현재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부터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등록한 모든 공립학교 학생의 등록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된 데이터는 학생과 가족에게 온라인 도구 및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학생은 CCGI 와 공유된 정보를 다음 두 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입학 및 학업 배치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2) 학생 재정 지원 자격 결정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학생 지원 위원회.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20 USC §1232g):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에서 규정된 연방 가족 교육법은 학생의 기록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FERPA 에 따른 학부모 권리에 대한 요약은 첨부 내용인 Attachment 3 Notification of Rights under FERPA 를 참고하십시오.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REFUSAL TO CONSENT TO PHYSICAL EXAMINATION (EC §§49451, 48980):

(신체검사 동의에 대한 거절) 학부모께서는 귀하께서 자녀의 신체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면서 자녀 학교의 학교장에게 매년 서면 진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인된 전염병이나 감염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면 언제나, 자녀는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리고 학교당국이 아무런 전염 혹은 감염질환이 없다고 판단하기까지는 학교로 돌아오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STUDENTS SUICIDE PREVENTION AND DOMESTIC VIOLENCE HOTLINE (EC §§215.5, 231.5, 48980):

(자살 예방 및 가정 폭력 핫라인) 국립 자살 예방 생명선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1-800-273-8255), 또는 988, 위기 문자 라인 (Crisis Text Line) (HOME to 741741) 및 국립 가정 폭력 핫라인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7233) 전화번호는 7-12 학년 학생의 신분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PUPIL MENTAL HEALTH SERVICES (EC §§49428, 48980):

(학생 정신 건강 서비스) 캠퍼스 내 또는 지역 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촉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와 학생 핸드북/안내서를 통해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는 첨부사항, Attachment 19 를 참조하십시오.

CONTINUED MEDICATION REGIMEN FOR NON-EPISSODIC CONDITION (EC §49480):

(비-일시적 상태를 위한 지속적 약물 치료요법) 만약 자녀가 비일시적 상태를 위한 약물치료 식이요법을 계속하고 있다면, 학부모께서는 학교 상주간호원 혹은 다른 지정 검증된 학교직원에게 (1) 먹고 있는 약물, (2) 현재 복용량, 그리고 (3)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이름을 통보하도록 요구됩니다. 학부모의 동의로, 학교 상주간호원은 자녀의 담당의사와 의논하며 그리고 자녀의 신체적, 지적, 그리고 사회성 뿐만 아니라 부작용, 생략, 과잉투여의 가능한 행동적 증상과 징후에 대한 약의 가능한 영향을 학교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지속적인 약물치료요법을 하고 있다면, 이 통지서 첨부 사항 Attachment 11 에 명기된 정보에 따른 올바른 양식서를 위해 학교사무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ON OF IMMUNIZING AGENTS (EC §§49403, 48980):

(예방 접종 관리)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의사 또는 외과 의사로 면허를 받은 사람, 간호사로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의사나 외과 의사의 감독 지시하에 활동하는 기타 면허있는 의료 종사자가 학생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예방 접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ADMINISTRATION OF PRESCRIBED MEDICATION (EC §§49423, 49423.1, 48980):

(처방약 투여) 만약 자녀가 정규 수업일에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는 학교 간호사나 다른 지정된 학교 직원에게 자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약품 이름, 복용 방법, 양 및 시간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의사와 외과 의사 또는 의사 조력자의 서면 진단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문제들에 대해 풀러튼 교육구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는 학부모의 서면 진술서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풀러튼 교육구가 학부모 및 자녀의 주치의로부터 법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서면 진술서를 받을 경우, 자녀 역시 처방전으로 받은 자동 주사에 피넨프린 또는 천식 약물 소지 할 수 있고 자가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첨부 파일 **Attachment 11** 을 참조하십시오.

TOBACCO-FREE CAMPUS POLICY (H&SC §104420):

(담배 없는 캠퍼스 정책)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담배 없는 캠퍼스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정책 **3513.3** 은 풀러튼 교육구 소유지 또는 임대 건물, 풀러튼 교육구 재산에서, 그리고 풀러튼 교육구 차량에서 어느 때라도 담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사회 정책 **5131.62** 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교육구 직원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는 동안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소지, 흡연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든 자연 또는 합성을 불문하고 흡입하기 위해 고안된 불이 불거나 가열된 시가, 담배, 파이프, 담배 성분 또는 식물성 제품을 흡입, 배출, 연소 또는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흡연 금지를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에어로졸이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전자 흡연 장치 또는 구강 흡연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MEDICAL AND HOSPITAL SERVICES NOT PROVIDED (EC §§49471, 48980):

(제공되지 않는 의료와 병원 서비스)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입은 부상에 대해 의료 혹은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ONCUSSIONS AND HEAD INJURIES (EC §49475):

(뇌진탕과 머리 부상)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선정하는 교육구는 뇌진탕과 머리 부상이 의심되는 운동 선수를 당일의 나머지 시간동안 제외시키고 해당 선수가 평가를 받고 서면 승인을 받고, 점진적인 보귀 프로토콜을 완료하거나,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감독 하에 최소 7 일동안 활동 복귀를 금지하며, 교육구는 매년 선수가 그 부모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뇌진탕 및 머리 손상 정보지를 제공하여 선수가 연습이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INSURANCE NOTICE FOR OPERATION OF INTERSCHOLASTIC ATHLETIC TEAM(S) (EC §32221.5):

(학교 대항 운동팀(들) 운영에 대한 보험 통지)

학교 대항 운동 팀(들)을 운영하는 교육구는 눈에 띄는 크기의 굵은 글씨체로 인쇄된 다음 진술을 보험 보장 제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교 운동팀의 모든 구성원이 의료비와 병원비를 보장하는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험 요건은 의료비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기타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구에 의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은 무료 또는 저렴한 지역, 주 또는 연방 후원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1-800-880-5305 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또한 학교의 이름이나 로고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보험 보호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학교 운동 팀 구성원에게 전송되는 눈에 잘 띄는 크기의 굵은 글씨로 다른 편지나 인쇄물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MEDICAL AND HOSPITAL SERVICES FOR STUDENTS (EC §§49472, 48980):

(학생을 위한 의료와 병원 서비스)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소유지에서 혹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오고 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기된 학생들의 부상에 대해 의료 혹은 병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사고 보험의 그룹,

총괄적인 혹은 개인 정책을 통해, 혹은 손해배상 보험의 정책을 통해, 비영리 회원 단체를 통해 의료 혹은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학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TEMPORARY DISABILITIES (EC §§48206.3, 48207.3, 48207.5, 48980):

(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만약 자녀가 정규수업 학급이나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 출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권할 수 없는 일시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면,

자녀는 그들의 거주지역으로 간주되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개별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교육은 주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상황들 아래있을 때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주립 병원들은 배제되지만 다른 거주해야 하는 건강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포함합니다. 개별 학습이 시작된 학년도에 학교에 복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개별 지도를 받은 학생은 개별 학습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학생 가정에서의 개별 교육 지침은 교육구가 학생이 이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된 후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STUDENTS WITH TEMPORARY DISABILITIES (EC §§48207, 48208, 48980):

(일시적 장애 학생들) 자녀가 일시적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병원이나 풀러튼 교육구 밖에 위치한 다른 거주지역 건강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교육구 거주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는 자녀가 자격을 갖춘 병원에 있기 위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지역 교육구에 통보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TYPE 1 DIABETES (EC §49452.6): (제 1 형 당뇨병) 제 1 형 당뇨병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첨부 14 를 참조하십시오.

TYPE 2 DIABETES (EC §49452.7): (제 2 형 당뇨병) 7 학년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제 2 형 당뇨병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Attachment 14** 에서 참조하십시오.

PROOF OF ORAL HEALTH ASSESSMENT (EC §49452.8):

(구강 건강 검진 증명) 자녀가 킨더 유치부 또는 1 학년을 입학하는 해의 5 월 31 일 이전 날짜로 된 구강 건강 검진서 (치과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시작되기 전 12 개월 안에 받은 검진은 이 요구에 부합됩니다. 자녀의 치과 의사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구강 건강 검진서-**Oral Health Assessment Form** 을 작성해 주도록 문의하십시오. **Waiver of Oral Health Assessment Form** (구강 건강 평가 면제 양식)을 작성하시면 치과 검진 의무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자동 체외심장충격기(AED): 풀러튼 교육구는 CPR 및 AED 교육을 받은 적격 직원이 있는 모든 학교에 AED 를 배치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모든 초등학교는 보건 보조 사무실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할 것입니다. 모든 중학교와 K-8 학교는 보건 보조 사무실과 다목적/체육관 위치에 설치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AED 에는 오디오 지침이 있지만 지정된 직원은 이러한 구명 장치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NARCAN AND OPIOID FACTSHEET (EC §49475):

NARCAN 및 오피오이드 팩트시트(EC §49475) 풀러튼 교육구는 오피오이드 약물로 인한 과다복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Naloxone(Narcan)이라는 응급 약물을 보유할 것입니다. 설계된 FSD 직원은 과다복용 시 이 약물을 투여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Naloxone(Narcan)은 건강 지원 사무소에서 "긴급 과다복용"이라고 표시된 눈에 잘 띄는 용기에 담겨 제공될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자료표는 첨부 35 를 참조하십시오.

DANGERS OF SYNTHETIC DRUGS (EC §48985.5):

(합성 약물의 위험): 교육구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합성 약물 (예: 펜타닐) 사용과 관련된 위험한 합성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펜타닐과 같은 합성 약물을 마케팅 하고 판매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성 약물, 위조 약품의 위험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약물을 판매할 위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와 각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EE AND REDUCED-PRICE MEALS (EC §§49510, et seq., 48980):

(무상 및 할인 급식) 교육구는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급식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매 수업일 동안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두 끼의 식사 (아침 및 점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 www.fullertonnutrition.org 를 이용할 수 있으며 District Links 아래 Nutrition Services 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Nutrition Services Department (영양 서비스 부서), 714-447-7435 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NOTIFICATION OF PESTICIDE USE (EC §§17611.5, 17612, 48980.3): (살충제 사용에 관한 고지) 학교의 통합 해충 관리 계획 사본이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내년에 자녀의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살충제 제품의 목록은 첨부 Attachment 4 를 참조하십시오.

ASBESTOS MANAGEMENT PLAN (40 CFR §763.93):

(석면 관리 계획) 풀러튼 학군의 각 학교에 대한 업데이트된 석면 관리 계획은 풀러튼 교육구 본청에 위치한 유지 관리 사무실 (Maintenance and Operations Office)에서 검토 할 수 있습니다.

CANCER PREVENTION ACT (EC §48980.4: H&SC

§120336): (암 예방법): 6 학년에 입학했거나 진급하는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자문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대로 학생들이 현재 예방접종 지침을 준수할 것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권고한다 는 사실을 이에통보합니다. 미국 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소아과학회, 미국가정의학회 ACIP(예방접종 관행)에 따라 입학 또는 8 학년으로 진급하기 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완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HPV 예방접종은 HPV 로 인한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HPV 백신은 매우 안전하며, 과학 연구에 따르면 HPV 예방접종의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HPV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6 학년에 입학하거나 진급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 통지는 첨부 #을 참조하십시오.

PARENT GUIDE TO EMERGENCY PROCEDURES:

(비상 절차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Attachment 27 을 참조하십시오.

ATTENDANCE

출석

STATUTORY ATTENDANCE OPTIONS (EC §§35160.5, 46600, 48204, 48300, 48980):

(법적 출석 학교에 관한 선택) 풀러튼 교육구는 풀러튼 교육구 안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존의 법적 출석 학교 선택과 지역 출석 학교 선택에 대해 각 학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보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출석이 지정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전학 옵션에는 학군 내 전학, 학군간 전학, 학부모 고용에 따른 전학, 그리고 운영위원회 경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 “선택 학군” 전학이 포함됩니다. 학군간 전학 허가 정보 및 정책은 풀러튼 학군 웹사이트 (www.fullertonsd.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석 옵션에 대한 요약은 첨부 5 이사회 정책 5116.1 학군 내 전학/공개 등록 및 5117 학군 간 전학을 참조하십시오.

EXCUSED ABSENCES (EC §§48205, 48980):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 자녀가 의료상의 사유 또는 정당한 개인적 사유로 결석할 때 학교로부터 결석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석한 학생은 결석 기간 동안 하지 못한 모든 과제물과 시험을 완료하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교육법 제 48205 조에 대한 완전한 자료는 첨부사항, Attachment 6 를 참조하십시오.

GRADE REDUCTION/LOSS OF ACADEMIC CREDIT

(EC §§48205, 48980):

(학점 감점/또는 손실)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과제물과 시험이 적절한 시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료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교육법 48205 조항에 의거하여 결석이나 면제된 결석에 대해 학점이 감점되거나 손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48205 조항의 전문은 첨부사항 Attachment 6 를 참조하십시오.

ABSENCES FOR RELIGIOUS PURPOSES (EC §§46014, 48980):

(종교적 이유로 인한 결석) 귀하의 학군 운영위원회가 EC §46014 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 귀하의 서면 동의 하에 귀하의 자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예배 장소 또는 학교 부지에서 벗어난 종교 단체가 설계한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도덕 및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 결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러한 목적으로 한달에 4 일을 초과하여 결석할 수 없습니다.

EXCUSE TO OBTAIN CONFIDENTIAL MEDICAL SERVICES (EC §46010.1):

(기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예외조항) 7-8 학년 학생들은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없이 기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에서 결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PREGNANT/PARENTING STUDENTS (EC §§222.5, 46015, 48980):

(임신/육아 학생) 임신부 또는 육아 학생은 결석 및 예외 사항, BP/AR 5113 - Absences and Excuses 에 따라 기밀 의료 예약과 관련된 결석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임신, 출산, 상상 임신, 임신 중절 및 관련 회복으로 인해 학생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면 학생은 휴가가 시작되었을 때의 상태로 복직되어야 합니다.

SCHEDULE OF MINIMUM DAYS AND STUDENT-FREE STAFF DEVELOPMENT DAYS (EC §48980):

(교직원 연수일과 단축수업일 일정표) 풀러튼 교육구는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 결강 교직원 연수를 위한 날수와 단축수업일의 일정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ttachment 7 풀러튼 교육구의 2025-2026 학생 출석 일정표 참조. 만약 어떤 단축수업일 혹은 학생결강 교직원 연수를 위한 날의 일정이 이 통보의 배부에 이어 정해진다면 풀러튼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가능한 일찍, 그러나 일정이 잡혀진 최소 혹은 학생 결강일 한달 이전에 통보할 것입니다.

NON-DISCRIMINATION
비-차별정책

STATEMENT OF NON-DISCRIMINATION (EC §§200, 220;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풀러튼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집단 정체성, 종교, 성/성별 (성 구분, 성별 표식), 신체적/정신적 장애 혹은 이민자 신분 등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풀러튼 교육구는 영어 부족이 풀러튼 교육구의 입학과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민과 관련된 첨부 25 “교육적 권리 알기”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개발한 이민자 학생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추가 정보는 <http://oag.ca.gov/immigrant/resourc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반-차별 정책에 주장되는 이의 제기들은 부교육감에게 (714-447-7450) 보내질 것입니다. 풀러튼 교육구 반-차별 정책의 사본이 필요하면 풀러튼 교육구 사무실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SEXUAL HARASSMENT POLICY (EC §§231.5, 48980; 5 CCR §4917): (성희롱 정책) 풀러튼 교육구의 서면 성희롱 정책은 첨부사항, Attachment 8 이사회 정책 5145.7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을 참조하십시오.

MARRIED/PREGNANT/PARENTING STUDENTS (EC §§221.52): (기혼/임신/육아 학생) 이사회 정책 5146 에 따라 풀러튼 교육구는 학생의 혼인 상태, 임신, 출산, 상사 임신, 임신 중절 또는 관련 회복을 근거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학생

SPECIAL EDUCATION (EC §56000, et seq., 20 USC §1401 et seq.): (특수 교육) 캘리포니아 주법 및 미국연방법은 가장 비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LRE) 자유롭고 적절한 공교육 (FAPE)이 장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격, 절차상의 보호장치,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 학생 지원 업무 부서 Student Support Services Department, 714-447-7500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CHILD FIND (EC §§56300, 56301): (아동 발굴) 풀러튼 교육구는 특수 교육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확인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접촉할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학부모께서 자녀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학부모께서는 풀러튼 교육구의 학생 지원 업무 부서인 Student Support Services Department, 714-447-7500 에 연락하여 평가를 위한 문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MISCELLANEOUS
기타

COMPREHENSIVE SEXUAL HEALTH AND/HIV/AIDS PREVENTION EDUCATION (EC §§51938, 48980): 교육구는 성 건강 및 HIV/AIDS 예방 교육 및 학생 건강 행동 및 위험에 관한 연구 교육을 올해 학년도에 제공합니다. 이 교육에 사용되는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는 교장실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학군 직원/외부 컨설턴트가 가르칩니다.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 (California Healthy Youth Act)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 사본 자료를 풀러튼 교육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 또는 HIV/AIDS 예방 교육을 승인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풀러튼 학군은 7, 8 학년의 익명의 자발적 기밀 연구 및 평가 도구를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설문지 및 성별과 관련된 학생의 태도 또는 관행에 대한 연례에 적합한 질문이 포함 된 설문 조사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시험, 설문지 또는 설문 조사를 미리 검토하고 자녀가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COURSES (EC § 48980.6): (국제 학사 학위 과정)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국제 학사 학위 (비치우드 학교만 해당) 과정에 대한 정보는 첨부 30 을 참조하십시오.

DISSECTION OR OTHERWISE HARMING OR DESTROYING ANIMALS (EC §32255, et seq.): (해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파괴) 만약 자녀가 동물을 해부하거나 또는 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 윤리적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면, 자녀는 이 반대의사에 대해 교사에게 통보할 권리,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해악적인 혹은 파괴적인 사용의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반드시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증된 서면에 의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CAASPP STATE EXAMS (EC 60615; 5 CCR 852):
(주 학력 평가시험)
봄 학기 중에, 3-8 학년 학생들은 연례 주 학력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주 학력 평가시험 CAASPP 의 일부 또는 모든 부분에서 자녀를 면제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매년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첨부사항, Attachment 28 을 참조하십시오.

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 (EC §§35256, 33126, 32286): (학교업무 성적보고서)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내의 각 학교를 위해 해마다 학교업무 성적보고서 (SARC)를 발행합니다. 자녀 학교의 보고서 사본은 요청 시 학교에서 제공될 것이며, 그리고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 www.fullertonsd.org 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SARC 는, 제한되지는 않으나,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33126 에 명기된 학교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SARC 는 중요 요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자녀 학교의 안전계획 상태에 대한 매년 보고서도 포함합니다.

LANGUAGE PROGRAMS AND LANGUAGE ACQUISITION PROGRAMS INSTRUCTION (EC §310, 5 CCR §11309): (언어 프로그램 및 언어 습득 프로그램 지침) 교육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언어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정보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첨부사항, Attachment 27 을 참조하십시오.

HEALTH INSTRUCTION/CONFLICTS WITH RELIGIOUS TRAINING AND BELIEFS (EC §51240):

(건강교육/종교적 수련과 신념 갈등) 만약 건강에 대한 학교 교육의 어떤 부분이라도 학부모의 종교적 수련과 신념과 상충한다면, 학부모께서는 자녀가 학부모가 가진 종교적 수련 및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부분으로부터 면제받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OF ALTERNATIVE SCHOOLS (EC §58501):

(대안학교에 대한 통지) 법은 풀러튼 교육구로 하여금 학부모/보호자에게 대안학교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법 조항 58501 에 명기된 통지에 대한 사본을 위해 첨부사항, Attachment 9 을 참조하십시오.

PARTICIPATION IN CAREER COUNSELING AND COURSE SELECTION (EC §221.5):

(진로 상담과 과정 선정에의 참여) 학부모께서는 7 학년을 위한 학과과정 선정을 시작으로, 진로 상담과 학과과정 선정에 관한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5 CCR §4622):

(획일적 이의제기 절차) 풀러튼 교육구는 불법적 차별에 관한 주장들을 포함,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혹은 주법 혹은 규정에 관한 진술된 위반사항에 대해 소송, 조사 그리고 이의제기의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복사본은 풀러튼 교육구의 Personnel Services 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정책 1312.3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사본을 위해 Attachment 10 을 참조하십시오.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20 USC §6301, et seq.; EC §§313.2, 440):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하는 법안)

Limited English Proficient Children: (제한된 영어 능숙도 아동)

ESSA 에서는 풀러튼 교육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를 위해 확인되어진 제한된 영어 능숙도 (LEP) 아동을 학부모 또는 부모들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 (1) 제한된 영어 능숙도 평가 이유와 언어교육 프로그램 배정에 대한 필요
- (2) 자녀의 영어 능숙도 수준, 그러한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 상태
- (3) 자녀가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육의 방법들, 그리고 다른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육의 방법들
- (4)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의 필요와 교육적 장점에 부응할 것인가
- (5)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그리고 학년진급과 졸업을 위해 연령에 맞는 학문성취 기준에 부응할 것인가
- (6)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종결 요구조건
- (7) 장애를 지닌 자녀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의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 (IEP)의 목표들에 부응할 것인가, 그리고
- (8) 학부모 요청시, 자녀를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즉시 이동하는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안내서를 포함하는 학부모 권리에 숙한, 그리고 학부모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자녀의 등록을 거부해야 하거나,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 혹은 교육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사항, 그리고 만약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하나 이상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 제공된다면 교육 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돕는 학부모 정보

만약 자녀가 제한된 영어 능숙자 (LEP)이고 참여가 확인되었거나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효율적인 상기 정보를 위해 714-447-7541, 풀러튼 교육구 교육 서비스 담당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ight to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교사와 전문 보조인의 전문적 자격에 관한 정보 권리)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하는 법안, ESSA 는 학부모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아동의 학급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 (1) 교사가 교육을 하는 주제 영역과 학년 수준을 위해 추가 정한 자격과 인가 기준에 부응했는가:
- (2) 교사가 위급 사태 아래 혹은 추가 정한 자격과 인가 기준을 면제받게 해줬던 잠정적 상태로 가르치는가
- (3) 교사의 학사학위 전공과 교사가 소유한 어떤 다른 졸업장 혹은 학위, 그리고 졸업장 혹은 학위의 교과영역, 그리고
- (4) 자녀의 전문 보조인에 의해서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자격은

이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 인사부, Personnel Services Department 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높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사에 의해 4 주 혹은 그 이상의 연속적인 주 동안 가르침을 받았거나 할당되었거나 하면 풀러튼 교육구는 적절한 때에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Information on Child's Level of Achievement: (자녀의 성취수준에 관한 정보) 풀러튼 교육구는 주의 학업 평가 각각에 있어서 자녀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제공할 것입니다.

Homeless Liaison: (노숙자 연락/중재자) 주거지가 없는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법에 따라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풀러튼 학교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지역 연락 담당자에게 714-447-7576 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 32 를 참조하십시오.

Foster Youth Liaison: (위탁 청소년 연락관): 위탁 청소년은 캘리포니아 및 미국 연방법에 따라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풀러튼 교육구 위탁 청소년 연락담당 전화번호 714-447-7576 으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 33 을 참조하십시오.

Military Families: (군인 가족들) 군인 가족들은 캘리포니아 및 미국 법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관한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의 군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연락관인 행정 서비스 담당관에게 714- 447-7529 로 연락하십시오.

STUDENT INSURANCE (EC §49472): (학생 보험) 풀러튼 교육구는 학교활동 참가 중 입은 부상에 필요한 의료와 병원 서비스를 위해 학생 보험에 들도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학교 혹은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혹은 교통으로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의료와 병원 서비스는 부모 동의서의 수령시 제공됩니다. **Myers- Stevens** 자발적인 보험 정보는 학년 초에 수령된 양식 묶음과 함께 동봉되며, 같은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UGGESTED ROUTES TO SCHOOL: (제안된 학교에 가는 경로) 학부모께서는 www.fullertonsd.org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Suggested Routes to School”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NSF CHECK COLLECTION: (부도수표 소급) 2016 년 7 월 1 일에 효력된, 간혹 “부도가 난” 수표로 언급되는 불충분한 자금 (NSF)의 수표 금액을 소급하기 위해 풀러튼 교육구에서는 지불 할 수 없는 수표들에 대해 조사 할 것입니다.

부도 수표 (NSF)의 비용은 \$25 불이며 부도 수표 지급 시 내야 하는 지불금 입니다. 수표 당 25 달러의 요금은 캘리포니아 민법 1719 조 및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수표 21 법안에 따릅니다. 수표의 금액을 소급 할 수 없는 경우 수표는 추후 조치를 위해 수급 대행사 (collection agency)로 넘겨 질 수 있습니다.

PET AND CLASSROOM ANIMAL PARTICIPATION WAIVER: (애완 동물 및 교실 동물 참여 면제) 면제 사본은 첨부 Attachment 31 을 참조하십시오. 학부모와 보호자는 연례 정보 검토 (Annual Information Review)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학부모 핸드북에 제공된 이 면제 내용에 대해 통지 받았음을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중요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첨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중요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첨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Attachment 1 - Suspension/Expulsion
정학/퇴학
- Attachment 2 - Bullying Policy
따돌림 정책
- Attachment 3 - FERPA
가족 교육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 Attachment 4 - Pesticide/Herbicide
농약/제초제
- Attachment 5 - Transfer Policies
편입 정책
- Attachment 6 - Excused Absences/Illness
양해된 결석/질병
- Attachment 7 - Pupil Attendance Calendar
학생 출석일정
- Attachment 8 - Sexual Harassment
성희롱
- Attachment 9 - Notice of Alternative Schools
대안학교 공지사항
- Attachment 10 - Uniform Complaint Proc.
통일 불만사항 처리 절차
- Attachment 11 -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 Forms
의약품 관리 및 양식
- Attachment 12 - First Aid Supplies
응급조치 용품
- Attachment 13 - Allergy Awareness Notice
알러지 인식
- Attachment 14 - Type 1 and Type 2 Diabetes info
제 1 형 및 제 2 형 당뇨병 정보
- Attachment 15 - Crutches/Wheelchairs Proc.
목발/휠체어 사용 절차
- Attachment 16 - Lice Information
머릿니/유충 정보
- Attachment 17 - HPV Notice
HPV 공지
- Attachment 18 - School Restrooms
학교 화장실
- Attachment 19 - Mental Health Information
정신건강 정보
- Attachment 20 - Civility Policy/Code of Conduct
시정 정책/행동 강령
- Attachment 21 - Parent Involvement Policy
학부모 참여 정책
- Attachment 22 - Visitors/Outsiders Policy
방문객/외부인 정책
- Attachment 23 - Transportation
교통 운임
- Attachment 24 - Nutrition Services
영양 서비스
- Attachment 25 - Immigration Status of Pupils
학생의 이민 신분/지위
- Attachment 26 - Universal Behavior Screening
보편적 행동 검사
- Attachment 27 - Emergency Procedures
비상사태 시 절차
- Attachment 28 - Language Programs
언어 프로그램
- Attachment 29 - CAASPP
주 학력 평가 시험
- Attachment 30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국제 학사 학위 과정
- Attachment 31 - Pet and Classroom Animal Waiver
애완 동물 및 교실 동물 면제
- Attachment 32 -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Rights and Protections
집이 없는 아동의 교육 / 권리와 보호
- Attachment 33 - Foster Youth Rights
위탁청소년 권리
- Attachment 34 - Firearms Safety Notification
총기 안전에 관한 알림
- Attachment 35 - Opioid Factsheet
오피오이드 자료표

ATTACHMENT #1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학생

Policy No.: 5144.1

Suspension and Expulsion Due Process – Page 1

Board Adopted: June 10, 2005

정학 및 퇴학/적법 절차 – 페이지 1
월 10 일

이사회 채택: 2005 년 6

Revised: September 5, 2006

수정: 2006 년 9 월 5 일

이사회는 배움을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들과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개인과 교육구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품행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기준이 위반될 때, 정규 학급 학습활동으로부터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 혹은 퇴학당한 학생들은 퇴학 혹은 정학 기간동안 모든 학교와 관련된 과외활동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그리고 교육구내의 어느 학교든지 그 시설의 부지나 소유물에 있지 못합니다.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일시 중지가 법에 따라 보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정수단들이 적절한 행동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에만 정학이 내려질 것입니다.

퇴학은 학생에 의한 심각한 혹은 지속적인 규율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와 중대한 성격의 확실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퇴학은 비행의 경력이 있거나, 정학을 포함해서 다른 형태의 징계가 적절한 행동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혹은 학생의 현존이 자신과 혹은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교육구는 교육구로부터 퇴학을 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포함하는 케이스/사례를 심의하도록 교육감/대행인에게 행정심의위원회인 **Administrative Review Committee (ARC)**를 확립하고 조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의위원회 (ARC)는 사실에 대해 조사결과를 서면형식으로 교육구로 직접 퇴학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행정심의위원회 (ARC)에 의해 주어진 퇴학에 대한 건의를 고려하며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그 케이스/사례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구는 행정심의위원회 (ARC)에, 퇴학을 건의하는 것에 따르지 않더라도, 퇴학에 앞서 징계 케이스를 적절하게 다루도록 모든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의위원회 (ARC)에 의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심리된 케이스는 이사회에 의해서 직접 심의받게 됩니다. 적법성의 결정은 교육감/대행인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행정심의위원회 (ARC)는 정기적으로 그 조치/조사결과를 교육구로 보고합니다.

Zero Tolerance 무 관용

교육구는 심각한 위반사건에 대해서 무 관용 접근법을 지지합니다. 이 접근법은 잠재적인 위협 학생들을 교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법이 되며 그리고 모든 위반 학생들은 규정으로 허용되는 최고의 범위까지 처벌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규정, 정학 혹은 퇴학에 관한 근거로서의 교육구 정책과 행정규정에 명시된 어떤 위반 사건들이라도 교육감 혹은 대행인에게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감/대행인은 학교 내에서, 학교 활동에서, 혹은 등하교 길에서, 또는 등하교 길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드러난 학생에 대해 즉각 정학을 주거나 퇴학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교육감 또는 대행인의 동의와 더불어, 인증된 학교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총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제공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

ATTACHMENT #1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학생

Policy No.: 5144.1

Suspension and Expulsion Due Process – Page 2

Board Adopted: June 10, 2005

정학 및 퇴학/적법 절차 – 페이지 2
월 10 일

이사회 채택: 2005 년 6

Revised: September 5, 2006

수정: 2006 년 9 월 5 일

3. 규제 물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4. 성폭행을 범하거나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성추행을 범하는 경우
5. 폭발물의 소유

학생이 위의 행위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시도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 교육구는 그 학생을 퇴학시킬 것입니다. 학교에서 혹은 학교활동에서 화기를 구입했거나 소유하여 (E.C. 48916[a]), 위의 #1 에 대한 위반으로 퇴학되는 학생은 퇴학날짜로부터 적어도 1 년 동안 퇴학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각 케이스 상황에 근거하여 재입학을 위한 날짜를 보다 앞당겨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교, 학교활동, 혹은 등하교길에서 혹은 등하교길에서의 학교활동에서 화기, 무기, 혹은 다른 위험한 물건의 불법적인 소유나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법률실행기관에 즉각 신고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인은 직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교육구의 제로 허용한도 정책과 학생 위반자들로부터 나온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의 엄격한 실행 역시 보장할 것입니다.

Student Due Process 학생의 적법한 절차과정

교육구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 과정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므로서 정학과 퇴학을 맞게 되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인은 행정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정학과 퇴학에 대한 통보와 항소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On-Campus Suspension Program 학교내에서의 정학 프로그램

교육구는 학교로부터 정학당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을 때 종종 감독이나 지도가 없으며 학업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많은 사례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을 정규 학급에서 분리시켜 감독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행동양식을 다루는데 이롭다고 믿습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인은 감독된 학교 내의 정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며, 그것은 학교에서 긴급한 위협이나 위협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퇴학조치가 시작되지 않은 정학 학생들을 위한 법규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인은 학교 밖의 정학에 대한 대안을 점검할 것이며, 그것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동안 점진적 징계와;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와 학생 상담; 별착; 학생 스터디 그룹이나 다른 시험관련 팀; 그리고/혹은 학교지원서비스 임직원에게 보내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대안 이용이 학교밖의 정학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ATTACHMENT #1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학생

Policy No.: 5144.1

Suspension and Expulsion Due Process –Page 3

Board Adopted: June 10, 2005

정학 및 퇴학/적법 절차 – 페이지 3
일

이사회 채택: 2005 년 6 월 10

Revised: September 5, 2006

수정: 2006 년 9 월 5 일

Required Parental Attendance 학부모 출석 요구

교육구는 학부모 참여가 교실 안에서의 품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구는 품행 문제가 야기될 때 교사들이 학부모/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외설적인 행동을 범했거나, 모독이나 무례한 행동에 연루되거나, 학교활동을 훼방하거나, 혹은 정당한 교직원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저항하므로 학생이 교실에서 퇴거될 때마다, 학생이 퇴거당한 그 교실의 교사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해당 학급의 학업일자의 일정부분에 출석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실방문을 마친 후 그리고 학교구내를 떠나기 전, 학부모/보호자는 또한 교육감이나 대행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하기 전, 교사들이 학부모/보호자로 하여금 학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리적으로 시도하기를 권장합니다. 교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학부모교육기회에 대해서도 통지해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진척시키고 수업시간 행동양식을 개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케이스/사례에 대해 필수 학부모출석을 선택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교사는 이 정책을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해당학생과 함께 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학부모출석은 학생이 학급으로 돌아오는 날 혹은 그후 한 주일 안에 요청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인은 학교에 출석하라는 요청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그들의 심각한 질병/상해/장애, 부재 중, 혹은 직장으로부터 틈을 낼 수 없음과 같은 이유들로 연기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제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징계에 관한 교육구 규정과 학교부지 규칙은 학부모가 출석 조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진행절차를 포함합니다.

Decision Not to Enforce Expulsion Order 퇴학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결정

사안별로, 퇴학 명령 집행은 법률 요건에 따라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

법률 참조

풀러턴 교육구 웹사이트 www.fullertonsd.org 에 게시된 이사회 정책 (Board Policy)에 대한 법률 참고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ATTACHMENT #2

BULLYING POLICY “BULLYING IS NOT ALLOWED AT FULLERTON SCHOOL DISTRICT”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정책
“풀러튼 교육구에서는 따돌림/괴롭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풀러튼교육구이사회는학생들에게가해지는 왕따/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출석과 학업에 대한 해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구 직원들은 학생의 안전을 최상의 순위로 정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학생이든 따돌림/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도 신체적으로, 서면으로, 구두(언어표현)으로,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어떤 다른 학생 혹은 학교 직원에 대해 조직적으로 혹은 눈에 띄는 방법으로 회롱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사이버 괴롭힘을 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인종혐오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 활동 혹은 학교 출석의 실제적인 회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대화, 직접적인 위협, 혹은 학교 내, 학교 밖에서의 전화, 컴퓨터, 혹은 무선소통 장비의 사용을 통한 다른 해악적인 문자, 음성, 혹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하거나 희생시킬 목적으로 그 사람의 전자계정에 침입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왕따/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때는 학교 직원에게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왕따/괴롭힘을 목격한 학교 직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그 사건이 중지되도록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교육 법규 234.1)

학생들은 자신이 왕따/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간주되면 교사나 행정관(학교장/부교장)에게 구두-말로 혹은 서면으로 품행교정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왕따/괴롭힘에 대한 항의서는 AR 5145.7-Sexual Harassment (성희롱)에 명시된 학교 사이트 수준 불평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되고 처리될 것입니다.

학내 혹은 학교 밖에서 학교 활동 혹은 학교 출석의 실제적인 회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왕따/괴롭힘에 관여하는 학생은 누구라도 징계를 받게 되며, 그것은 교육구 정책과 규정에 따라 정학 혹은 퇴학이 포함될 것입니다.

왕따/괴롭힘 사건은 풀러튼 교육구의 어느 교사에게든지; 학교장/부교장에게; 또는
Child Welfare and Attendance (아동복지와 출석관리) 사무실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714-447-7529

ATTACHMENT #3

Notification of Rights under FERPA

FERPA 에 따른 권리에 대한 통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은 학부모와 18 세 이상의 학생들 (“유자격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 기록 및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할 권리. 이러한 권리는 자격이 있는 학생이 18 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재학할 때 해당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학교장 (또는 적절한 학교 관계자)에게 열람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에게 기록 열람 시간과 장소를 알립니다. 학교는 거리가 먼 등의 이유로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FERPA 하에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기록을 수정하도록 학교에 요청하고자 하는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은 학교장 (또는 적절한 학교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변경되기를 원하는 기록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 당국이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요구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교 당국은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하고, 수정 요청에 관한 청문회의 권리를 통지합니다. 청문 절차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청문회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3.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의 교육 기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FERPA 는 학교가 동의 없이 다음 당사자에게 또는 다음 조건에 따라 해당 기록 (인명록 정보 포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가진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전학하는 다른 학교;
-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관계자;
- 학생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 학교를 위해 또는 대신하여 특정 학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인가 기관;
-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급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 건강 및 안전 비상 사태 발생 시 적절한 관계자; 또는
- 특정 주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의 주 및 지방 당국.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관리자, 감독자, 강사 또는 지원 직원(보건 또는 의료 직원 및 법 집행 부서 직원 포함)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서 자체 직원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는 기능을 아웃소싱한 사람 또는 회사(예: 변호사, 감사관, 교육 과정 공급업체 또는 온라인 또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앱 개발자, 의료 컨설턴트 또는 치료사), 공식 위원회(예: 징계 위원회 또는 불만 처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 다른 학교 관계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 학부모, 학생 또는 기타 자원봉사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공급업체 및 앱 개발자에는 MyMath, Discovery Education, Adobe, Canva, Wonders, Apple, Google, Microsoft, Seesaw, PowerSchool, Zoom 등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자신의 전문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학교 담당자는 정당한 교육적 관심을 갖습니다. 요청 시, 학교는 학생이 등록을 원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다른 교육구 직원의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하거나, 공개가 학생의 등록 또는 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공 분야,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운동팀 구성원의 키와 몸무게, 출석 기간, 받은 학위 및 상, 학생이 가장 최근에 다녔던 공립 사립 학교와 같은 "디렉토리"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부모와 적격 학생에게 디렉토리 정보를 알려야 하며, 부모와 적격 학생이 학교에 자신에 대한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FERPA에 따른 권리를 매년 학부모와 적격 학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통지 방법은 각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4. 학교가 FERPA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tudent Privacy Policy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ATTACHMENT #4

Fullerton School District Pesticide/Herbicide Expected Use List for 2025-2026 School Year 2022-2023 학년도 풀러튼 교육구 살충제/제초제 예상 사용 목록

2000 년의 건강한 학교 법령 (Healthy Schools Act)의 연간 서면 통보 요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살충제 사용에 대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을 위해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알람표는 각 살충제 제품의 활성 성분 또는 성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및 그 대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dpr.ca.gov> 를 참조하십시오.

Per the Healthy Schools Act of 2000 **Proposed materials that may be applied on District sites.** 2000 년도의 건강한 학교 법령에 따라 교육구 부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 약품들

<u>Product</u> 제품	<u>Active Ingredient</u> 실제성분	<u>Manufacturer</u> 제조사	<u>Usage</u> 용법	<u>Signal Word</u> 주의 신호
Advance 375A	Abamectin	Basf	Ants 개미	Caution 주의
Advion Ant Gel	Indoxacarb	Syngenta	Ants 개미	Caution 주의
Advion Roach Gel	Indoxacarb	Syngenta	Roaches 바퀴벌레	Caution 주의
Alpine Rotation II	Dinotefuran	Basf	Insects 곤충	Caution 주의
Alpine WSG	Dinotefuran	Basf	Insects 곤충	Caution 주의
Bio-Gel			Flies/Knats 파리/모기	None 없음
Boracare	Boron Sodium Oxide	Nisus	GenPest 일반곤충	Caution 주의
Crossfire Aerosol	Clothianidin Metofluthrin Piperonyl Butoxide	Mgk	Bedbugs	Caution 주의
Delta Dust	Deltamethrin	Envu	Roaches 바퀴벌레	Danger 위험
Fendona Cs	Alpha-Cypermethrin	Basf	GenPest 일반곤충	Caution 주의
Foam Fresh			Flies/Knats 파리/모기	None 없음
Gentrol Igr	(S)-Hydropene	Zoecon	Fleas 벼룩	Caution 주의
Granular Ant Bait			Ants 개미	None 없음
Maxforce Fc Rch Bait	Fipronil	Bayer	Roaches 바퀴벌레	Caution 주의
One Guard	Piperonyl butoxide, Prallethrin, pyroproxyfen, lambda-Cyhalothrin	Mgk	GenPes/Mosqt 일반곤충/모기	Caution 주의
OnSlaught Fast Cap	Esfenvalerate, Piperonyl Butoxide, Prallethrin	Mgk	GenPest 일반곤충	Caution 주의
Rozol Gopher Bait	Chlorophacinone	Liphatech	Gophers 땅다람쥐	Caution 주의
Rozol Squirrel Bait	Chlorophacinone	Liphatech	Squirrels 다람쥐	Caution 주의
Selontra	Cholecalciferol	Basf	Rodents 설치류 (쥐) 종류	Caution 주의
Suspend Polyzone	Deltamethrin	Control Solu	GenPes/Mosqt 일반곤충/모기	Caution 주의
Taurus	Fipronil	Bayer	Ants, Termites 개미, 흰개미	Caution 주의
Tempo SC Ultra	Cyfluthrin	Bayer	Insects 곤충	Caution 주의
TekkoPro	Pyriproxyfen	CSI	IGR 곤충 추진로	Caution 주의
Temprid Fx	Imidacloprid	Envu Envir	GenPest 일반곤충	Caution 주의
Termidor SC	Fipronil	Basf	Insects 곤충	Caution 주의

ATTACHMENT #5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Intradistrict Open Enrollment 학군내 공개 입학

BP 5116.1

Students 학생

Board Adopted: April 25, 2006

Board Revised: February 12, 2008, December 14, 2010

이사회 채택: 2006년 4월 25일

이사회 수정: 2008년 2월 12일, 2010년 12월 14일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이웃 학교들의 개념을 지지합니다. 학교출석의 범위는 현존하는 시설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과밀 현상을 피하고,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리적 장벽을 고려하며, 학교와 프로그램에 사회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학교 등교 거리와 안전하고 적절한 도보 상황을 유지하는 이사회에 의해서 확립됩니다.

이사회는 교육구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입학 옵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교육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학생들의 선택 및 전학을 위한 절차를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일부 부모님들이 자녀가 거주지역의 지정된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군 경계 지역 안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교육구 내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구의 학교에 자녀를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법규 35160.5)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매년 이 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법규 35160.5, 48980)

출석 학교 지역 밖에서 등록하는 다른 모든 신청자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학교 정원을 초과하는 무작위적이고 공평한 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입학 대상을 고려할 것입니다. 학교의 정원은 학생 등록 및 사용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여 비 임의적인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교육 법규 35160.5)

균일하게 모든 지원자에 적용되어 있는 기존의 입학 기준을 지닌 전문 학교 또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입학 결정은 학생의 학업이나 운동 능력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학업 성적은 자격, 또는 영재 및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배정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법규 35160.5)

현재 거주지역 출석 학교 내 또는 교육구 절차에 의해 결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아무도 거주지역 밖 외부 지역에서 전학은 다른 학생에 의해 배정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육 법규 35160.5) 이러한 지침하에 학생들이 가능한 한 학년 내내 일관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구의 의도입니다. 공개 입학이 완료된 후 거주지역 학교에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거주지역 내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원 초과로 인하여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그 학생은 거주지역 지정 학교의 수용 능력에 따라 다음 학년도, 혹은 더 빠른 기간 내에 학생의 거주지역 지정 학교에서 자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Terms and Conditions 약정과 조건

편입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모든 해당 교육구 방침, 절차 및 규정, 그리고 모든 학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구 내의 편입은 행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Transportation 수송/교통

Title I 프로그램 개선 학교로부터의 전학자들을 위해 20 USC 6316 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가 거주 지역 밖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수송 자리 및 자금의 가능성에 의거하여 수송 분담의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s: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교육 법규

35160.5 District policies; rules and regulations 35291 Rules

35351 Assignment of students to particular schools 48980 Notice at beginning of term

CODE OF REGULATIONS, TITLE 5 규정 코드

11992-11994 Definition of persistently dangerous schools UNITED STATES CODE, TITLE 20 미국령

코드

6316 Transfers from program improvement schools 7912 Transfers from persistently dangerous school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4 연방 법규

200.36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200.37 Notice of program improvement status, option to transfer

200.39 Program improvement, transfer option

200.42 Corrective action, transfer option

200.43 Restructuring, transfer option

200.44 Public school choice, program improvement schools

200.48 Transportation funding for public school choice

COURT DECISIONS 법원 결정

Crawford v. Huntington Beach Union High School District, (2002) 98 Cal.App.4th 1275

ATTORNEY GENERAL OPINIONS 검찰 소견

85 Ops.Cal.Atty.Gen. 95

(2002) Management

Resour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GUIDANCE 미 교육부 안내서

Unsafe School Choice Option, May

2004 Public School Choice,

February 2004 WEB SITES 웹사이트

CSBA: <http://www.csb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Unsafe School Choice

Option: <http://www.cde.ca.gov/ls/ss/se/usco.asp>

U.S. Department of Education, No Child Left Behind: <http://www.nclb.gov>

CSBA Revisions (11/99 3/03) 11/08

ATTACHMENT #5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Interdistrict Attendance 타학군 출석

BP 5117

Students 학생

Board Adopted: May 10, 2005 이사회 채택: 2005년 5월 10일

Board Revised: December 14, 2010 이사회 수정: 2010년 12월 14일

이사회는 프로그램과 학교의 학무모 선택권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학생과 교육구에 최선일 때 부모의 선택은 수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한 교육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른 교육구의 학교에 출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학 허락을 부여하거나 갱신하는 조건으로서, 부모님들과 타 학군에서의 전학 학생들은 이 정책의 조건들과 교육구 학교들의 규칙들을 따르도록 요구됩니다.

Interdistrict Attendance Permits 타학군 출석 허가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사안에 따라 타 학군과의 타 학군 출석 허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타 학군 출석 허가는 수용 자리 상황에 따라 매년 검토될 것입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교육구 내 학교들의 정원 초과 혹은 제한된 교육구 자원으로 인한 사정으로 타 학군 출석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s: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41020 Annual district audits

46600-46611 Interdistrict attendance agreements

48204 Residency requirements for school attendance

48300-48316 Student attendance alternatives, school district of choice program

48915 Expulsion; particular circumstances

48915.1 Expelled individuals: enrollment in another district

48918 Rules governing expulsion procedures

48980 Notice at beginning of term

52317 Regional Occupational Center/Program, enrollment of students, interdistrict attendance

ATTORNEY GENERAL OPINIONS

87 Ops.Cal.Atty.Gen. 132 (2004)

84 Ops.Cal.Atty.Gen. 198 (2001)

COURT DECISIONS

Crawford v. Huntington Beach Union High School District, (2002) 98 Cal.App.4th 1275

Management Resources:

WEB SITES

CSBA: <http://www.csb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cde.ca.gov>

CSBA Revisions

(7/04 11/07) 11/09

ATTACHMENT #6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Students 학생

Absences and Excuses 결석 및 면제

BP 5113

Board Adopted: June 10, 2005 이사회 채택: 2005년 6월 10일

Board Revised: July 28, 2015 이사회 수정: 2015년 7월 28일

교육구 이사회는 정기적인 출석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사회는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학교에 출석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책임을 인식합니다. 만 6-18 세 사이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자녀를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주(州)의 출석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 및 학생들과 협력해야 하며, 만성 결석 또는 무단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used Absences 면제되는 결석

학교 결석은 법률, 이사회 정책 및 행정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건강상의 이유, 가정의 긴급 상황 및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가 됩니다. (교육법 48205)

수업 참여는 학생의 학습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학교 수업 외의 시간에 진료 예약을 하도록 권장됩니다. 학부모는 또한 학교 시간 중에 예약되어진 경우 일정이 끝나는 즉시 학생을 학교로 돌려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매 학년 초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 및 7-8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없이 어느 학생이라도 기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면제해 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법 46010.1)

학생들은 의료적 응급 상황이나 기밀 의료 예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보호자의 지식이나 동의없이 학교에 결석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이나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떠나야 하는 학생 결석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예외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교육법 46014)

Excessive Illness Verification 과도한 질병 검증

질병 또는 검역으로 인한 결석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공립 교육장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기밀 의료 서비스 나 의료 약속을 확인하는 학생을 면학 할 때, 교육구 직원은 그러한 방문의 목적을 묻지 않고 의사 또는 진료소에 연락하여 진료 예약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46011)

질병 또는 격리로 인한 결석은 교육구나 카운티의 교육감이 공공 지침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밀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학생의 부재를 허락할 때 또는 의료 약속을 확인하려 할 때, 교육구 직원은 그러한 방문의 목적을 묻지는 않지만 의사 또는 진료소에 연락하여 진료 예약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46011)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격리로 인한 결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학교나 보건 담당 간호사, b) 출석 감독관, c) 의사, d) 학교장, e) 교사, f) 해당 검증을 위해 지정된 교육구의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카운티의 교육감. (CCR, Title 5, Section 421)

장기간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장기간 동안 출석을 못하게 하는 사고의 희생자가 된 학생은 가정,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만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현재 학년을 초과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부모들은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보건소에서 이용 가능한 "Verification of Chronic Illness" (만성 질환의 검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CCR, Title 5, Section 423)

학년도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10 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11 번째 결석부터 시작하여 그 이상 되는 결석이 의사, 학교 간호사, 건강 보조사, 사무실 직원, 또는 적절한 교직원에게 의해 점검되고 검증 될 수 있습니다. 의사, 학교 간호사, 건강 보조사, 사무실 직원, 또는 적절한 교직원에게 의해 검증되지 않은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11 번째 결석부터 시작하여 5 일 내에 결석 사실을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Effect of Absence on Grades/Credits 결석이 학점/또는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결석이 교육 법령 48205 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담당 교사가 결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누락된 과제물 또는 시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합당한 기간 내에 과제물 또는 시험을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과제물 또는 시험에 대한 완전한 점수를 인정 받게 됩니다. (교육법 48205)

학생의 성적은 이사회 정책에 따라 과도한 무단 결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s: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교육법

1740 Employment of personnel to supervise attendance (County Superintendent) 출석 감독 직원 채용 (카운티 교육감)

2550-2558.6 Computation of revenue limits 수익 한도 계산

37201 School month 학기

37223 Weekend classes 주말 수업

41601 Reports of average daily attendance 평균 일일 출석 보고서

42238-42250.1 Apportionments 배분 46000 Records (attendance) 기록 (출석) 46010-46014 Absences 결석

46100-46119 Attendance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s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출석

46140-46147 Attendance in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출석

48200-48208 Children ages 6-18 (compulsory full-time attendance) 6-18 세 아동 (의무적 정규 출석)

48210-48216 Exclusions from attendance 출석 면제 48240-48246 Supervisors of attendance 출석 감독관 48260-48273 Truants 무단결석자

48292 Filing complaint against parent 부모에 대한 불만 신고

48320-48324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s 학교 출석 검토 위원회

48340-48341 Improvement of student attendance 학생 출석률 향상

49067 Unexcused absences as cause of failing grade 성적 불량으로 인한 무단 결석

49701 Provisions of the interstate compact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ilitary children 군인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에 대한 각 주 (州)간의 협약 조항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복지 및 기관 법령

601-601.4 Habitually truant minors 습관적인 무단 결석 미성년자

11253.5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의무적인 학교 출석

CODE OF REGULATIONS, TITLE 5

306 Explanation of absence 결석 설명

420-421 Record of verification of absence due to illness and other causes 질병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결석 확인 기록

Management Resources:

CSBA PUBLICATIONS

Improving Student Achievement by Addressing Chronic Absence, Policy Brief, December 2010 교

WEB SITES

CSBA: <http://www.csba.org>

CSBA Revisions (2/98 11/99)

California Education Code § 48205 - Excused Absences; Average Daily Attendance Computation

캘리포니아 교육 법령 48205 - 면제된 결석; 평균 일일 출석 계산

(a) 제 48200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결석이 다음과 같을 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1) 학생의 정신적 혹은 행동 건강상 장애의 호전을 위한 결석 등 학생의 질병으로 인할 때
- (2) 카운티 혹은 해당 도서 건강 관리관의 지시로 격리 조치
- (3) 의료, 치과, 검안, 또는 척추 교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목적등으로 .
- (4)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학생의 직계 가족이나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의 가족으로 간주될 만큼 학생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목적등 직계 가족. 단, 부재 기간은 사건당 5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5)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배심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 (6) 양육 부모 책임하에 자녀가 의사의 통지서가 필요없이 학교의 허락을 얻어 보살핌을 받기 위한 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시간 중에 있는 의료 약속 또는 질병으로 인한
- (7) 법정 출두, 장례식 참석, 명절이나 종교 의식 준수, 종교 수련회 참석, 고용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입법 또는 사법 절차에 관한 교육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학교장 또는 지정 대리인이 승인한 경우 교육구의 행정 이사회가 제정한 균등한 기준에 따라 승인됩니다.
- (8) 선거법 제 12302 항에 따라 선거구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목적으로 인해
- (9) 제 49701 항에 규정된 대로, 제복을 입은 현역 직무 일원이며, 의무를 위해 부름을 받았거나, 배치에서 즉시 돌아왔거나 떠나는 경우로 학생의 직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목적일 때. 이 항에 따라 부여된 결석은 교육구의 교육감 재량으로 결정되는 기간 동안 허용됩니다.
- (10)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학생의 귀화식에 참석하기 위해
- (11) 문화적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
- (12)(A)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시민적 또는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B),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생이 결석 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B)(i) 하위 단락 (A)에 따라 결석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은 학년도 당 하루종일 결석에 대해서만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ii) 하위 단락 (A)에 따라 결석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은 학교 행정관의 재량에 따라 섹션 48260 의 하위 조항 © (c)에 설명된 대로 추가 사유가 있는 결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13) (A) (i)부터 (iii)까지의 조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학생의 직계 가족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러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결정한 사람인 경우 학생의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는 학생과 함께 사망한 경우, 결석 기간은 사건당 3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i) 피해자 서비스 조직이나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ii) 애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iii) 안전 계획에 참여하거나 학생이나 학생의 직계 가족,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결정한 사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 이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의 직계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 (B) (A) 항에 설명된 사유로 인해 3 일을 초과하는 결석은 섹션 48206 에 따라 학교 행정관 또는 그 지정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14) 학생이 군 입대 절차에 참여할 경우.
- (15) 48260 항의 (c)항에 설명된 대로 학교 행정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됩니다. .
- (b)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학교에 결석한 학생은 결석 중에 하지 못한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과제물과 시험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그에 준하여 충분한 점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한 수업의 교사는 시험과 과제물이, 결석 동안 놓친 시험 및 과제물과 동일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험과 과제물을 결정해야 합니다.

- (c) 이 조항의 목적 상, 종교 수련회의 참석은 한 학기 당 1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d) 이 조항에 의거한 결석은 평균 일일 출석 계산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 할당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 이 조항에서 사용하기 다음의 정의를 따릅니다:
 - (1) “시민적 또는 정치적 행사”에는 투표, 여론 조사, 파업, 공개 논평, 후보자 연설, 정치 또는 시민포럼, 시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2) “문화적”이라 함은 어떤 집단의 습관, 관례, 신념 및 전통에 관련됨을 뜻함
 - (3) “직계 가족”은 부모, 또는 보호자, 형제 또는 자매, 조부모 또는 학생의 가족과 거주하는 기타 친척을 의미합니다.
 - (4) “피해자 지원 조직 또는 기관”은 정부법제 12945.8 조(j)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ATTACHMENT #7

		Fullerton School District 2025/2026 학생 출석 달력																											
		July 2025														January 2026													
2025년 7월	4 독립기념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1	2	3							
		6	7	8	9	10	11	12	4											7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1	12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8	19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2025년 8월	6 세교사 첫출근 7.8 교사 연수일 11 모든학생 개학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2025년 9월	1 노동절/공휴일 24 중일-학부모 상담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5년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2025년 11월	3 교사 연수일 11 재향군인의날/공휴일 24-28 추수감사절 방학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5년 12월	19 휴일: 학생, 교사, 12개월 이하 직원 22-31 겨울방학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학생개학일

✕ 학생비출석일

공휴일/방학 (학생 비출석일)

○ 교사 연수일/상담일/기록일 (학생 비출석일)

△ 마지막 수업일

4학기제 (7-8학년)

8월 11일 - 10월 10일 (43 일)

10월 13일 - 12월 18일 (42 일)

1월 6일 - 3월 13일 (46 일)

3월 23일 - 5월 29일 (49 일)

3학기제 (K-6학년)

8월 11일 - 11월 7일 (62 일)

11월 10일 - 3월 6일 (64 일)

3월 9일 - 5월 29일 (54 일)

기타일정

가을학기 학부로 상담주간: 2025년 9월 22일 - 26일

PreK-K 학생의 등록상담일

중학교 가을학기 상담일: 2025년 9월 18일 과 19일

봄학기 학부로 상담주간: 2026년 3월 9일 - 13일

PreK-K 학생의 등록상담일

중학교 봄학기 학부로 상담일: 2026년 2월 5일 - 6일

199일 학생출석일

2019년 8월 11일 11:40:00

186일 교사 근무일 (제교사 186일)

2019년 8월 11일 11:40:00

2026년 1월

1-2 겨울방학 연속

5 기록일 (중학교)

5 교사 연수일 (초등학교)

6 모든학생 복귀

19 마틴루터 킹 기념일/공휴일

2026년 2월

9 링컨대통령 기념일/공휴일

16 워싱턴 기념일/공휴일

2026년 3월

16-20 봄방학

2026년 4월

2026년 5월

25 메모리얼 데이/공휴일

29 마지막 수업일

2026년 6월

19 노동절 기념일/공휴일

ATTACHMENT #8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Sexual Harassment 성희롱

BP 5145.

Students 학생

Board Adopted: June 10, 2005 이사회 채택일: 2005 년 6 월 10 일

Board Revised: November 15, 2016 이사회 수정일: 2016 년 11 월 15 일

이사회는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사회는 다른 학생, 직원 또는 다른 사람,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학생의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신고자가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언하거나 기타 불평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또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교육구는 어떤 학생이든 학교 밖에서 다른 학생 또는 성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 영향을 주는 성희롱을 당했거나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선생님, 학교장,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학교 직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고서를 받거나 성희롱을 목격한 직원은 교장 또는 준법 감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가 된 후, 교장 또는 준법 감시인은 첨부된 행정 규정에 명시된대로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관한 불만 사항은 AR 1312.3 - 통합 항의 절차에 명시된 법률 및 교육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성희롱 신고가 AR 1312.3 에 의거하여 제출될 수 있으며 절차 사본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은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nstruction/Information 지침/정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모든 교육구 학생이 성희롱에 관한 연령에 맞는 지침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위 및 행동은 성희롱이 동성을 가진 사람들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수반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2.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희롱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
3. 성희롱을 당한 희생자가 항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희롱의 사례를 보고하도록 장려합니다.
4. 학생 안전이 교육구의 주요 관심사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희생자 또는 성희롱 사건을 보고한 다른 사람에 대한 별도의 규칙, 위반은 별도로 다루어 질 것이며 성희롱 신고의 접수, 조사 또는 해결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5. 항의자가 서면, 일정표 또는 기타 정식 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불만 사항, 응답자 또는 성희롱의 희생자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희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학생의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반드시 조사하여 성희롱을 멈추고 재발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 항의 사항을 조사하는 교육구 절차 및 성희롱 신고에 필요한 지정된 사람과 절차에 관한 정보

7. 성희롱에 대한 교육구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민원 또는 형사 고발을 제기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8. 필요시 교육구는 조사 중에 학대자 또는 성희롱 피해자 및/또는 다른 학생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가능한 한 그러한 임시 조치가 취해지면, 그들은 항의된 가해자나 희생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Complaint Process and Disciplinary Actions 불만사항 처리 절차 및 징계 조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불만 사항은 **AR 1312.3 - 통합 항의 절차**에 명시된 법률 및 교육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성희롱에 관한 항의가 **AR 1312.3**에 의거하여 제기 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를 조사한 결과, 이 정책을 위반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가담 한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4 학년에서 12 학년의 학생의 경우 징계 조치에는 정학 및 /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징계를 부과 할 때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나 성적 폭력에 가담 한 것으로 밝혀진 직원은 법과 해당 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 해직을 받아야 합니다.

Record-Keeping 기록 보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구가 학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모니터하고 해결하며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희롱 사례를 기록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모든 불만과 혐의는 조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Legal Reference: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교육법

200-262.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48900 Grounds for suspension or expulsion 정학 또는 퇴학 근거

48900.2 Additional grounds for suspension or expulsion; sexual harassment 정학 또는 퇴학을 위한 추가 근거; 성희롱

48904 Liability of parent/guardian for willful student misconduct 고의적 학생 비행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책임

48980 Notice at beginning of term 학기 시작 시 주의 사항

CIVIL CODE 민사법

51.9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business, service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성희롱에 대한 책임; 비즈니스, 서비스 및 전문직 관계

1714.1 Liability of parents/guardians for willful misconduct of minor 미성년자의 고의적 비행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임

GOVERNMENT CODE 정부법

12950.1 Sexual harassment training 성희롱 교육

CODE OF REGULATIONS, TITLE 5 규정 코드, 제 5 조

4600-4687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4900-4965 Nondiscrimin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ogram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금지

UNITED STATES CODE, TITLE 20 미 연방법, 제 20 조

1221 Application of laws 법률 적용

1232g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1681-1688 Title IX, discrimination 제 9 조, 차별

UNITED STATES CODE, TITLE 42 미 연방법, 제 42

1983 Civil action for deprivation of rights 권리 박탈을 위한 민사 소송

2000d-2000d-7 Title IV, Civil Rights Act of 1964 제 4 조, 1964 년 민권법

2000e-2000e-17 Title VII,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제 7 조, 개정된 1964 년 민권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4 연방 규정 코드, 제 34 조

99.1-99.67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106.1-106.71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 education programs 교육 프로그램의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Management Resources: 관리 자원

CSBA PUBLICATIONS CSBA 간행물

Providing a Safe, Nondiscriminatory School Environment for Transgender and Gender-Nonconforming Students, Policy Brief, February 2014

Safe Schools: Strategies for Governing Boards to Ensure Student Success, 2011

성전환 및 전통적 성별 표현 방식에 반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차별없는 학교 환경 제공, 정책

개요, 2014 년2 월

안전한 학교: 2011 년 학생들의 성공 보장을 위한 이사회 전략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PUBLICATIONS 미 교육부, 민권실 간행물

Dear Colleague Letter: Transgender Students, May 2016

Examples of Policies and Emerging Practices for Supporting Transgender Students, May 2016

Dear Colleague Letter: Title IX Coordinators, April 2015

Questions and Answers on Title IX and Sexual Violence, April 2014

Dear Colleague Letter: Sexual Violence, April 4, 2011

Sexual Harassment: It's Not Academic, September 2008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Harassment of Students by School Employees, Other Students, or Third Parties, January 2001

WEB SITES

CSBA: <http://www.csb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cde.ca.gov>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

CSBA Revisions

(3/12 10/14) 9/16

Sexual Harassment 성희롱

Approved: December 12, 2016 승인: 2016 년 12 월 12 일

풀러튼 교육구는 1972 년 교육법 타이틀 IX 및 가주 교육법 234.1 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행정규정 1312.3 하에 있는 통합 불만 절차에 따라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교육구의 준법 감시인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ssistant Superintendent of Personnel Services 인사과 부교육감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714-447-7450

금지된 성희롱에는 교육적 환경에서 동성 또는 이성을 가진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성향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위, 성적인 호의에 대한 원치 않는 요청 또는 기타 원치 않는 언어적, 시각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법 212.5; 5 CCR 4916)

1. 행위에 대한 제출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학생의 학업 상태 또는 진행 상태를 결정합니다.
2. 학생의 행동 제출 또는 거부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 결정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3. 이러한 접촉이나 행위가 학생의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협박적이고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일 때
4.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제출 또는 거부는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및 서비스, 명예,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금지되어 있는 성희롱을 구성할 수 있는 행동 유형의 예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원치 않는 음탕한 성욕, 성적인 희롱, 또는 명예
2. 불쾌한 성희롱, 별칭, 위협, 언어적 학대, 비하적인 의견 또는 성적인 묘사
3. 개인의 신체 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대화에 대한 구두 발언
4. 성적 농담, 비방 포스터, 메모, 이야기, 만화, 그린 그림, 사진, 외설스러운 제스처 또는 컴퓨터로 작성된 성적인 이미지
5. 성적인 소문 확산
6. 다수의 성이 차지하는 클래스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성적인 발언
7. 몸을 마사지하거나, 잡아 당기거나, 애정을 표현하거나, 어루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
8. 성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신체나 옷을 만지는 행위.
9. 성에 근거하여 학교 활동이나 움직임을 신체적 간섭처럼 방해하며 차단하는 개인적인 지시를 할 때
10.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물건을 표시할 때
11. 성폭력, 성행위 또는 성적인 강요
12. 위에서 설명한 의견, 단어 또는 이미지가 포함된 전자 통신

학교 외에서도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교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에서의 활동에서도 교육구성희롱 방침에 따라 가해자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교육구 정책에 위배되는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Reporting Process and Complaint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신고 절차 및 불만사항 조사 및 해결 방안

다른 학생, 직원 또는 제 3 자에게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교사, 교장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보고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보고받은 학교 직원은 그러한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AR 1312.3 에 명시된 교장 또는 교육구 준법 감시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과 관련된 성희롱 사건을 관찰하는 학교 직원은 하루 동안 학교장 또는 교육구 준수 담당관에게 자신의 관찰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피해자가 불만 사항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신고나 불만 사항이 교내 밖의 행위를 포함할 경우 교장은 그 행위가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창출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된 행위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구두 또는 비공식 성희롱 신고서가 제출되면 교장 또는 준법 감시인은 학생 또는 부모/보호자에게 교육구의 통합된 불만 사항 절차에 따라 공식 서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공식적인 불만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교장 또는 준법 감시인은 진술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희롱이 발견되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불만 사항이 처음에 학교장에게 제출되면 2 일 이내에 준법 감시 담당관에게 보고하여 불평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법 감시 담당관은 AR 1312.3 에 명시된 법률 및 교육구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서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조사과정에서 학교장과 준법 감시 담당관이 연류되었을 경우엔 보고서는 대신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되어 누가 이의 제기에 대한 조사를 할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Confidentiality 기밀유지

성희롱에 대한 모든 불만과 혐의는 조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5 CCR 4964)

항의자 또는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통고하였으며 기밀 유지를 요청할 경우 담당자는 그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기밀 유지를 지키나 조사과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밀 유지 요청을 끝까지 존중하며 교육구는 그 요청에 부합하는 항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항의자 또는 성희롱 피해자가 교육구에 고발장을 통보하지만 교육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을 시 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러한 요청을 존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sponse Pending Investigation 응답 보류 중인 조사

성희롱 사건이 보고 될 때 교장 또는 피지명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 또는 준법 감시 담당관은 괴롭힘을 중지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임시 조치는 주장된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불평한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시 조치에는 법률 및 이사회 방침에 따라 개별 수업에 참여하는 개인을 배치하거나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으로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괴롭힘을 당한 개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경우 학업 및 과외 활동을 변경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항의자가 상담원과 같은

자원 및 지원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정식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성적 괴롭힘이 학교 운동장 밖에서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Notifications 통지사항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의 사본은 :

1. 매 학년 초에 학부모/보호자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48980, 5 CCR 4917)
2. 교육구 규칙, 규정, 절차 및 행동 강령에 대한 공지가 게시된 주요 관리 건물 또는 기타 지역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십시오 (교육법 231.5).
교육구의 성희롱 방침 및 규정 사본은 교육구 웹사이트 및 교육구 지원 소셜 미디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3. 각 분기, 학기 또는 여름 학기 초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231.5).
4. 학교 또는 교육구의 포괄적인 규칙, 규정, 절차 및 행동 규범 (교육법 231.5)을 명시한 학교 또는 교육구 출판물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ATTACHMENT #9

NOTICE OF ALTERNATIVE SCHOOLS 대안 학교 통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58501 캘리포니아 교육법 58501 항

캘리포니아주법은 모든 교육구에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육법 58500항은 대안 학교를 아래와 같이 지정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학교 안에 개별적 클래스 그룹 혹은 학교로서 정의합니다:

- (a) 학생들이 자신감, 창의력, 친절함, 자발성, 풍부한 자력, 용기, 창조성, 책임감, 그리고 기쁨의 긍정적인 가치를 개발하도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 (b) 가장 훌륭한 배움은 학생이 배우려는 의지로 인해 배울 때 일어납니다.
- (c) 학생이 자가 동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관심사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배움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 (d) 교사, 부모, 그리고 학생이 함께 공동으로 배움의 과정과 주제를 개발하도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이 기회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 (e) 학생, 교사, 그리고 부모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제한하지 않고 포함하여,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가 대안 학교에 대한 추가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오렌지 카운티 교육감, 풀러튼 교육구 행정부 국장실 및 해당 학교 학교장실에는 귀하의 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법률 사본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각 교육구에 대안 학교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구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TTACHMENT #10

FULLERTON SCHOOL DISTRICT

Fullerton School District 풀러튼 교육구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불만제기 통합 처리 절차

BP 1312.3

Community Relations 지역사회 관계

Board Adopted: August 19, 2009 이사회 채택: 2009 년 8 월 19 일

Board Revised: November 14, 2012, May 21, 2013, September 9, 2014, May 10, 2016,

November 15, 2016, August 14, 2018 이사회 수정: 2012 년 11 월 14 일, 2013 년 5 월 21 일, 2014 년 9 월 9 일,

2016 년 5 월 10 일, 2016 년 11 월 15 일, 2018 년 8 월 14 일

이사회는 교육구가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사회는 제기된 불만에 대해 가능한 조기 해결을 권장합니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5 CCR 4600-4670 및 수반되는 행정 규정에 명시된 불만 사항 처리 절차의 통일된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교육구의 불만제기 통합 처리 절차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UCP)는 다음과 같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사용됩니다.

1. 성인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직업 교육, 아메리칸 인디언 교육 센터 및 육아 교육 프로그램 평가, 이중 언어 교육, 동료 지원 및 교사 검토 프로그램, 직업 기술과 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보상 교육, 통합 범주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영향 지원,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Title I-VII의 연방 교육 프로그램, 이민자 교육,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교 안전 계획, 특수 교육 프로그램, 주 유아원 프로그램, 담배 사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코드 64000 (a)에 나열된 기타 교육구 구현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해당 주 및 연방법, 또는 규정을 교육구에서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
2.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이에 국한되지 않은 주 재정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직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에 대한 다음의 실제 또는 인식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과의 연관성으로 인한 불법적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발생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 인종 또는 민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인종 그룹 식별, 연령, 종교, 혼인 여부, 임신 여부, 부모 상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사회적 성별, 성 정체성, 유전 정보, 또는 교육법 200 또는 220, 정부법 11135 또는 형법 422.55에 명시된 기타 특성
3. 학교에서 유충중이거나 유아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등 학생의 기타 모유 수유 관련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항의 사항 (교육법 222)
4. 학생에게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수수료, 착수금, 또는 기타 부과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 (5 CCR 4610)
5.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LCAP의 실행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 (교육법 52075)

6. 위탁 청소년인 학생에 의한 또는 대신한, 교육구의 배치 결정, 학생에 대한 교육구 연락 담당자의 책임, 교과과정에 대한 다른 학교 또는 학군에서의 학점 수여, 전학,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관련하여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구사항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7. 42 USC 11434a에 정의된 노숙자 학생, 전 청소년 법원 학교 학생, 또는 교육법 49701에 정의된 군인 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교육구로 전학을 온 경우, 다른 학교 또는 학군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수여 또는 이사회에서 부과한 졸업 요건 면제 허가 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교육법 51225.1, 51225.2)
8. 교육적 내용이 없는 과정을 학생에게 한 학기에 1주 이상 배정하는 것이나 학생이 이전에 만족스럽게 이수한 과정을 충족하는 요건 없이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법 51228.1 및 51228.2의 요구사항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교육법 51228.3)
9. 교육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 교육 시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항의 사항 (교육법 51210, 51223)
10.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이나 불만 처리 절차의 이의 제기자, 또는 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을 밝히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경우
11. 교육구 방침에 명시된 기타 불만 사항

이사회는 협의의 성격에 따라 대체 분쟁 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불만에 대한 해결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중재와 같은 ADR은 성인 없이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과 관련된 불만을 해결하거나 중재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는 적합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ADR의 사용이 주 및 연방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불만 제기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불만에 대해 조사할 때 관련 당사자의 신원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의 신원, 및/또는 불만 제기자와 다를 경우, 불만 대상은 처리 과정의 무결성이 유지되는 한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불만제기 통합 처리 절차, UCP의 처리 대상이 아닌 불만 사항이 UCP 불만 사항으로 제기된 경우, 교육구는 UCP가 아닌 주장을 적절한 직원이나 기관에 회부하고, 적절한 경우 교육구의 UCP를 통해 UCP 관련 주장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구 직원이 정책 및 수반되는 행정 규정에 명시된 단계 및 일정을 포함하여 현행법 및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법률 및 교육구 정책에 따라 모든 UCP 불만 사항 및 불만 사항 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Non-UCP Complaints

불만제기 비통합 처리 절차

다음의 불만 사항들은 교육구의 UCP 처리 대상이 아니며 특정 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카운티 사회 복지부, 카운티 보호 서비스 부서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2.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의한 건강 및 안전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허가된 시설의 경우 사회 복지부에 회부되고, 면허 면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 발달 지역 관리자에게 회부되어야 합니다.
3. 사기를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준수 부서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AR 4030-고용 차별 금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과서 또는 교육 자료의 충분성,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 또는 긴급 시설 조건, 교사 결원 및 잘못된 배정과 관련된 불만은 AR 1312.4-윌리엄스 통합 불만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35186)

Legal Reference: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교육법

200-262.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차별 금지

222 Reasonable accommodations; lactating students 적절한 숙박 시설; 수유중인 학생

8200-8498 Child care and development programs 육아 및 개발 프로그램

8500-8538 Adult basic education 성인 기초 교육

18100-18203 School libraries 학교 도서관

33380-33384 California Indian Education Centers 캘리포니아 인디언 교육 센터

32289 School safety plan,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학교 안전 계획, 균일 한 불만 절차

35186 Williams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윌리엄스 항의 불만 절차

44500-44508 California Peer Assistance and Review Program for Teachers 교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동료 지원 및 검토 프로그램

48853-48853.5 Foster youth. 위탁 청소년

48985 Notices i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통지

49010-49013 Student fees 학생

부담금 49060-49079 Student

records 학생 기록 49069.5

Rights of parents 학부모 권리

49490-49590 Child nutrition programs 아동 영양 프로그램

51210 Courses of study grades 1-6 학습 과정 1-6학년

51223 Physic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s 체육, 초등학교

51225.1-51225.2 Foster youth and homeless children; course credits; graduation requirements 위탁 청소년 및 노숙 아동; 교육 학점; 졸업 요건

51228.1-51228.3 Course periods without educational content 교육 내용이 없는 과정 기간

52060-52077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especially 특별한 지역 관리 및 책임 계획

52075 Complaint for lack of compliance with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requirements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요구 사항 준수 결여에 대한 불만 사항

52160-52178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52300-52462 Career technical education 직업 기술 교육

52500-52616.24 Adult schools 성인 학교

52800-52870 School-based program coordination 학교 기반

프로그램 조정 54400-54425 Compensatory education programs

보상 교육 프로그램 54440-54445 Migrant education 이주 교육

56000-56867 Special education programs 특수 교육 프로그램

59000-59300 Special schools and centers 특수 학교 및 센터

64000-64001 Consolidated application process 통합 응용 프로그램 절차

GOVERNMENT CODE 정부 법규

11135 Nondiscrimination in programs or activities funded by state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

12900-12996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공정 고용 주택법

HEALTH AND SAFETY CODE 건강 및 안전 코드

104420 Tobacco-Use Prevention Education 담배 사용 예방 교육

PENAL CODE 형사법

422.55 Hate crime; definition 증오 범죄; 정의/의미

422.6 Interference with constitutional right or privilege 헌법 상의 권리 또는 특권에 대한 간섭

CODE OF REGULATIONS, TITLE 5 규정 코드, 제 5조

3080 Application of section 단면 적용

4600-4687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통합 불만사항 절차

4900-4965 Nondiscrimin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ograms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금지

UNITED STATES CODE, TITLE 20 미국 법규, 제 20조

1221 Application of laws 법률 적용

1232g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1681-1688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1972년 교육
 개정안 제 9조 6301-6577 Title I basic programs 기본 프로그램 제 1조
 6801-6871 Title III language instructio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and immigrant students 제한된 영어 능력과
 이민자
 학생을 위한 타이틀 III 언어 교육
 7101-7184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 관한 법률
 7201-7283g Title V promoting informed parental choice and innovative programs 정보에 입각한 부모의 선택과 혁신
 프로그램 홍보 제 5조
 7301-7372 Title V rural and low-income school programs 농촌 및 저소득층 학교 프로그램 제 5조
 12101-12213 Title II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장애 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 2조

UNITED STATES CODE, TITLE 29 미국 법규, 제 29조
 794 Section 504 of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3년 재활법 제 504항

UNITED STATES CODE, TITLE 42 미국 법규, 제 42조
 2000d-2000e-17 Title VI and Title VII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1964년 개정 민권법 제 6, 7항
 2000h-2-2000h-6 Title IX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년 민권법 제 9항
 6101-6107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1975년 연령 차별 금지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 연방 규정 법규, 제 28조
 35.107 Nondiscrimination on basis of disability; complaints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불만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4 연방 규정 법규, 제 34조
 99.1-99.67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100.3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basis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104.7 Designation of responsible employee for Section 504 504 조항 담당자 지정
 106.8 Designation of responsible employee for Title IX 제 9 조 담당자 지정
 106.9 Notification of nondiscrimination on basis of sex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통보
 110.25 Notification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ge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통보

Management Resources: 관리 자원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PUBLICATIONS 캘리포니아 교육부 간행물
 Sample UCP Board Policies and Procedures 샘플 UCP 위원회 정책 및 절차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PUBLICATIONS 미국 교육부, 민권실 간행물
 Dear Colleague Letter: Title IX Coordinators, April 2015
 Questions and Answers on Title IX and Sexual Violence, April 2014
 Dear Colleague Letter: Bully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ugust
 2013 Dear Colleague Letter: Sexual Violence, April 2011
 Dear Colleague Letter: Harassment and Bullying, October 2010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Harassment of Students by School Employees, Other Students, or
 Third Parties, January 2001

U.S. DEPARTMENT OF JUSTICE PUBLICATIONS 미국 법무부 간행물
 Guidance to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Recipients Regarding Title VI Prohibition Against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Affecting Limited English Proficient Persons, 2002

WEB SITES 웹사이트

CSBA: <http://www.csb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cde.ca.gov>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http://familypolicy.ed.gov>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www.justice.gov>

CSBA Revision (9/16 5/17) 3/18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불만제기 통합 처리 절차

Approved: March 24, 1994 승인: 1994 년 3 월 24 일

Revised: February 24, 2004, December 12, 2016 수정: 2004 년 2 월 24 일, 2016 년 12 월 12 일

이사회가 다른 교육구 방침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는 이사회 정책 BP 1312.3 에 명시된 불만 사항만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사용됩니다.

Compliance Officers

준법 담당관

교육구는 아래에 명시된 개인을 교육구가 불만 사항에 대응하고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민권법을 준수할 책임있는 직원으로 지명합니다. 또한 지명된 개인은 불법적인 차별과 관련된 차별대우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처리할 책임있는 직원으로 행정 규정 5145.3 에 명시된 준법 담당관의 역할도 합니다. 지명된 개인은 불만 사항을 수사하고 조정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Assistant Superintendent of Personnel Services 인사 담당 부교육감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714-447-7450

불만 사항을 접수 받은 준법 담당관은 다른 준법 담당관을 지명하여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준법 담당관은 다른 준법 담당관이 배정될 시 즉시 불만 제기자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준법 담당관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불만 해결을 금하는 편견이나 이해 상충이 있는 불만 사항에 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담당관이 불만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공정하고 편견없이 조사해야 하는 다른 담당관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교육감이나 피지명자에게 제기해야 하며, 교육감은 피고소인 조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지정된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해당 불만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현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법률 및 규정, 불법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의 불만 사항 결정에 적용 가능한 표준을 포함하여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의 판단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 담당관 또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관리인은 조사 결과 동안 그리고 조사 결과가 보류될 때까지 중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법 담당관 또는 관리관은 교육감, 교육감의 지명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각 학교의 교장과 합의하여 하나 이상의 임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는 준법 담당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교육구가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어느 쪽이든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서) 유지됩니다.

Notifications

통지사항

교육구의 통합 항의 절차, UCP 정책 및 행정 규정은 직원 휴게실 및 학생회 회의실을 포함한 모든 교육구 학교 및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교육법규 234.1)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불법 학생 수수료 LCAP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요구 사항 및 위탁 청소년 및 노숙 학생의 교육 권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학생, 직원, 교직원, 학부모/보호자, 교육구 자문 위원회, 학교 자문 위원회, 적절한 사립 학교 공무원이나 대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매년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 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법규 262.3, 48853.5, 49013, 49069.5, 51125.1, 51125.2, 52075.5 CCR 4622)

준법 담당관의 연례 통지 및 모든 연락처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가능하다면 교육구 지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까지 포함해 교육구의 방침, 규정, 양식 및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 에 관한 통지에 제공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의 15%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다른 기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교육 법규 과 48985 에 따라 교육구의 통합 항의 절차, UCP 정책, 규정 및 양식을 해당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부모/보호자에 대해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 정보를 잘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다음의 것들을 내포합니다:

1. 불만을 접수하는 사람의 신원과 직책, 책임 부서를 파악합니다.
2. 해당되는 경우, 주 또는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민사법 상 가능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3. 불법적 차별과 관련된 (예: 차별적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 관련된 경우,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CE)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또는 미 교육부 민권부 (OCR)와 같은 민사 법원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항소 절차에 대한 이해를 이의 제기인에게 알려줍니다.
4. 다음의 진술을 포함합니다:
 - a) 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주와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 b) 불만 제기자가 항의 일자의 연장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불만 사항에 대한 검토는 불만 사항 접수 시점으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c) 보복 또는 불법적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 제기는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기자가 처음으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장 이유를 설명하는 제기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이 정당한 사유로 최대 90 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d)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기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기자가 장애인 문맹 등의 조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제기자의 불만 신청 제출을 도와야 합니다.
- e) 만일 서면으로 불만 사항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교육구는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 의 적용되는 주장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교육구는 특정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혐의에 대한 보복 또는 불법 차별 (예: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등)이 포함된 조사에서 차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교육구는 차별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자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교정할 것입니다.
- f)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과외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g) 이사회는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LCAP 개발 및/또는 검토에 의미있는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LCAP 을 채택하고 매년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h) 위탁 청소년은 교육 배치, 학교 등록 및 퇴교와 관련된 교육 권리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요구사항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구 연락 담당의 책임을 받으며 학생이 전학시 학점, 기록 및 이전되는 성적이 학군과 다른 학군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전 되는것을 도울것입니다.
- i) 불만사항 제기자는 교육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항의서를 주 교육부, CDE 로 접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의 결정에 불만족스러울 시, 불법 차별 (예: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등)을 행한 피고인도 제기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 교육부, CDE 에 항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 j) 주 교육부, CDE 항소시 반드시 교육구에 첨부했던 항의서와 교육구의 결정에 대한 복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k) 교육구의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 의 사본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District Responsibilities

교육구 책임

통합 불만사항 처리 절차, UCP 와 관련된 모든 항의는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구로부터 통지받은 후 60 일내에 검토 후 완료되어야 합니다. (5 CCR 4631)

불법적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등)에 대한 항의일 경우 교육구는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만사항 제기자가 연장에 동의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준법 감시인은 조사중에 취해진 조치 및 CCR 4631 및 4633 준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항의 사항과 그 이후의 관련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혐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결정 또는 판결이 내려질 때 이를 통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준법 담당관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후속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수행하거나, 또는 진행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복 또는 불법적 차별 (예: 차별적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등)에 대한 모든 불만이나 진술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5 CCR 4630, 4964)

Filing of Complaints

불만사항 제기

불만 제기는 준법 담당관에게 제기해야 하며 담당관은 받는 항의를 차례대로 기재하며 각각의 불만 제기에는 스탬프로 찍힌 날짜와 코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만 제기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제기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기자가 장애나 문맹 등의 조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이 제기자의 불만 제기 신청을 도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CCR 4600)

해당 경우 불만 제기는 다음과 같은 진행 규칙들로 접수됩니다:

1. 성인 교육 프로그램, 통합된 범주 지원 프로그램, 이주 교육, 직업 기술 및 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육아 및 발달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및 특수 교육을 관할하는 주정부 및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의 교육구에 대한 불만은 개인, 공립 교육기관 또는 관계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CCR 4630)
2. 학생들이 학생 수수료, 착수금 및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LCAP 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 사항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증거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불법 학생 요금 부과에 대한 금지 위반에 대한 항의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 사항은 위반이 제기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육법 49013, 52075, 5 CCR 4630)
3. 불법적인 차별 (예: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등)을 주장하는 항의는 개인이 불법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개인 또는 특정 부류의 개인이 본인이었을 때 그 당사자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의는 불법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혹은 항의가 인지된 첫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기자가 서면으로 연장 이유를 제출한 후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이 그 이유가 납득이 될 경우 90 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 만일 익명으로 불법 차별에 관한 항의가 접수되었을 경우, 준법 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거나 제공된 정보의 특수성 및 신뢰성 및 혐의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5. 불법 차별 (예: 차별적인 괴롭힘, 위협, 따돌림 등) 또는 혐의 대상자가 신고자가 아닌 경우 기밀 유지를 요청할 때, 준법 담당관은 교육구가 그 행위를 조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기밀 유지 요청을 이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구는 요청에 부합하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대응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Investigation of Complaint

불만 사항 조사

준법 담당관이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준법 감시 담당관은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개시 근무일 하루 이내에 수락 담당자는 신고자 및/또는 대리인에게 신고서에 포함 된 정보를 준법 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제기자는 이의 제기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를 준법 감시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증거 또는 정보는 조사 중 언제든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법 담당관은 모든 가능한 문서를 수집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만과 관련된 모든 기록, 메모 또는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제기자는 가능한 모든 증인에게 불만과 관련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인터뷰하고, 해당 조치가 취해 졌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준법 감시인은 조사 상황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복 또는 불법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 (예: 차별적 괴롭힘, 위협, 따돌림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 집행관은 피해자(들), 혐의가 있는 혐의자 및 기타 관련 증인을 개별적으로, 기밀로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직원이나 법률 고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기자/고소인이 조사관에게 불만 사항이나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서류나 기타 증거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답자/피고소인이 조사관에게 불만 사항, 조사 실패 또는 조사에 대한 협력 거부, 또는 관련된 서류나 기타 증거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조사 방해 행위를 하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신고자에 유리한 해결책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CCR 4631)

법에 따라 교육구는 조사관에게 불만 사항과 관련된 기록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위반 사실이 발생했고 신고자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CCR 4631)

준법 담당관은 불만 사항에 대한 진실성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때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증거의 우세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Report of Findings

조사 결과 보고서

고소인과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교육구가 고소장을 접수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고소인에게 보내집니다. 준법 담당관은 불만 사항을 접수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아래의 "최종 판결문" 란에 설명된대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의 제기자에게 보냅니다. 고소인이 준법 담당관의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정기 이사회 회의 또는 소집 된 60 일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소집된 특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불만 사항을 듣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법 담당관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사회가 불만 사항들을 들은 경우, 준법 담당관은 교육구가 불만 사항을 처음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또는 불만 제기자와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정을 불만 제기자에게 보냅니다. (5 CCR 4631)

불법 차별을 주장하는 항의 사항 (예: 차별적 괴롭힘, 위협, 따돌림 등)을 해결할 때 피청구인도 교육구의 결정에 회부되어야 하며, 불만 제기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에 불만족하면 이사회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Final Written Decision

최종 서면 결정

교육구가 법령을 어떻게 준수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인과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5 CCR 4631)

지방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 결정의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및 결정을 이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거나 고소장의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불법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불만에서 피해자 주장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 통지에는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고용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의 사항에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이나 학부모 / 보호자가 관련되어 있고 학생이 참여한 학생 중 15%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단일 기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 결정은 해당 언어로 번역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부모 / 보호자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에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항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5 CCR 4631)

1. 사실에 대한 발견들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 될 수 있습니다.
 - (a) 증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 (b) 관련된 개인의 상대적 신뢰도
 - (c) 항의하는 사람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 (d) 주장된 행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 또는 기타 증거
 - (e) 기소 혐의자에 의한 유사한 행위의 과거 사례
 - (f) 신고자가 과거에 제기한 허위 진술
2. 법적 결론
3. 불만처리
4. 그러한 처분에 대한 합리적 근거

보복 또는 불법 차별에 대한 불만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의 경우, 이의 제기의 처리에는 보복 또는 불법 차별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각각의 혐의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a) 위법 행위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b) 위법 행위의 유형, 빈도 및 기간
 - (c)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 (d) 행동에 참여하고 행동이 지시 된 사람의 수
 - (e) 학교의 크기, 사건의 위치, 사건 발생 상황
 - (f) 다른 개인과 관련된 학교의 기타 사건
 5. 학생 부담금 불만과 관련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또는 취해질 조치를 포함하여 시정 조치 (들),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 에 부합하는 구제책
- 차별적인 차별, 협박 또는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의 경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a) 응답자에게 부과된 시정 조치
- (b) 고소인 또는 고소 대상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개인 구제 조치. 그러나 이 정보는 응답자와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 (c) 학교가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체계적 조치

6. 항소인과 피청구인이 주 교육부, CDE 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을 15 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결정에는 재발 또는 보복을 방지하고 후속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적인 괴롭힘, 협박 및 괴롭힘과 같은 주법에 근거한 불법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 교육부, CDE 에 이의 제기를 제출 한 후 60 일 이내에 중재 센터 또는 공공 / 사립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불만 절차 이외의 가능한 민법 절차를 추구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법규 262.3)
2. 60 일간의 유예 결정은 주 법원의 금지 명령 구제 또는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요구하는 불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법규 262.3)
3.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장애 또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주장하는 고소는 www.ed.gov/ocr 에서 미 교육부, 민사 권리 관청에 180 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rrective Actions

시정 조치

항의에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준법 감시인은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규모 학교 또는 교육구 환경에 중점을 두는 적절한 시정 조치에는 교육구 방침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교육; 학교 정책 업데이트; 또는 학교 기후/분위기 설문 조사,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보복 또는 불법 차별과 관련된 불만 사항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응답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구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상담
2. 학업 지원
3. 보건서비스
4. 피해자가 캠퍼스 주변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호위를 배당합니다.
5. 사용 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 및 유사한 사건이나 보복을 보고하는 방법
6.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사건에 개입된 다른 모든 개인과 분리시키는 방법
7. 회복적 사법
8. 행동이 중단되었고 보복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

9. 징계 조치를 받은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 피해자가 접수하여 신고한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결정

보복 또는 불법 차별과 관련된 불만 사항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은 학생 위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적절한 시정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1.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수업 또는 학교에서 전학
2. 학부모 / 보호자 간담회
3. 타인에 대한 행위의 영향에 관한 교육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 팀에 의뢰
6. 과외 활동 또는 공동 교과 과정 또는 법이 허용하는 기타 특권에 대한 참여 거부
7. 법이 허용하는 정학이나 퇴학 같은 징계 조치

교직원이 보복 또는 불법 차별 (차별적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 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구는 적용 가능한 법과 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 해고까지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더 큰 범위의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 및 기타 개입을 고려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보호자가 교육구가 하지 않는 불법 차별 행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괴롭힘 또는 따돌림) 을 구성하는 행위 유형을 용인하고 보고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비, 예금 및 기타 비용,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교육 수업 시간 또는 LCAP 관련 요구 사항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만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주 교육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립 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 법규 49013, 51223, 52075)

교육구는 학생 수수료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불법 학생 수수료를 납부 한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를 제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확인하고 전액 상환합니다. 고소장의 (교육법 49013, 5 CCR 4600)

Appeals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이의 신청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불만을 가진 이의 제기자는 교육구의 결정을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주 교육부, CDE 에 서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법규 222, 48853, 48853.5, 49013, 49069.5, 51223, 51225.1, 51225.2, 51228.3, 52075; 5 CCR 4632)

차별적인 차별, 협박 및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을 주장하는 신고서에 대한 응답자가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신고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 교육부, CDE 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피고인은 결정의 항소를 위한 근거와 사실이 정확한지 그리고 법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는 현지에서 제기한 불만 사본과 교육구의 결정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CCR 4632)

주 교육부, CDE 가 항의자 또는 피청구인이 교육구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통보하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 서류들을 주 교육부, CDE 에 전달해야 합니다: (5 CCR 4633)

1. 최초 불만사본
2. 서면 결정의 사본
3.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가 수행한 조사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요약
4. 당사자가 제출하고 조사관이 수집한 모든 메모, 인터뷰 및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5.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서
6. 교육구의 통일된 항의 절차 사본
7. CDE 가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ATTACHMENT #11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Health Services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 Phone 714/447-7502 • Fax 714/447-7793

2025-2026 PARENT/GUARDIAN INFORMATION
FOR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AT SCHOOL
2025-2026 학교에서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학부모/보호자 정보

학부모/보호자 여러분께:

오늘날의 학교 환경 내에 있는 많은 아동들은 의약품 투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상이지만, 때로 학교 시간 중에 아동들에게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구의 간호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의약품 투여를 하기 위해 학교의 비-의료 인력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여러분의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학교 시간 이외의 시간에 약을 줄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권장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9423 항에 의거하여, 교직원인 학생에게 약을 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서면으로 된 지시 사항과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은 처방이 변경될 때마다 그리고 매 학년도 초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약물 용기에 있는 처방 표시는 의사의 소견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의사나 치과 의사가 처방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학교는 모든 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고 오직 의사와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투여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동들이 학교에서나,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서나, 또는 통학버스에서 약을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의 유일한 예외는 EpiPen, 천식 흡입기와 같은 약물 치료가 학생에게 수행되지 않는 한 학생의 건강 상태가 위태로운 경우입니다. 적법한 해제 양식을 학교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생의 건강 상태가 약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처방전 레벨이 용기에 부착된 구입할 때의 용기 그대로의 상태로 학교에 제공해야 하며, 관리받게 될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처방되어져야 합니다. 교직원은 비닐 봉지, 플라스틱 용기, 또는 어떤 경우라도 재 포장되어서 학교로 보내져온 약은 줄 수 없습니다. 날짜가 지난 약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인이 완성된 허가서와 함께 약을 학교에 가져 와야 합니다.

자녀의 담당 의사나 치과 의사를 방문하여 약의 처방이나 복용량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해당 양식을 문의하거나 또는 첨부된 의약품 양식 (Medication for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 드리며,

Director of Student Support
Services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 담당 부장



ATTACHMENT #11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Community and Student Support Services
 오렌지 카운티 교육청 지역사회 및 학생 지원 서비스

PARENT/GUARDIAN AND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REQUEST FOR MEDICATION

의약품·약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및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요청서

Name of Student: _____ Birthdate: _____
 학생이름 생년월일
 School/District: _____ Teachers Name: _____ Grade/Track: _____
 학교/교육구 교사이름 학년

**PARENT/GUARDIAN REQUEST FOR THE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

의약품·약물 관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요청서, 처방약 및 비처방약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423 항은 학교 간호사 또는 다른 지정된 비-의료 교직원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투약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면서 교육 및 학습 잠재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본인은 우리의 공인된 보건의료 제공자/주치의가 작성한 지침에 따라 약을 저의 자녀에게 투여하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은 지정된 비-의료 교직원이 자격을 갖춘 학교 간호사의 감독 하에 서면 지시 사항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복용량, 복용 시간과 또는 처방권을 행사하는 공인 의료 제공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새로운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공인 의료 제공자와 의약품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학교 간호사는 약물과 그 효과에 대해 해당 교직원에게 상담/조언할 수 있습니다.

에피펜(EpiPen) 또는 흡입기와 같은 응급약은 공인 의료 제공자 및 학부모가 권장한 경우 학생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위해 추가 약품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스스로 관리하는 약물로 인해 부작용을 겪게 될 경우 본인은 교육구와 학교 관계자/교직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Parent/Guardian Signature: _____ Date: 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Telephone: (Work) _____ (Home): _____
 전화번호 직장 가정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REQUEST FOR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공인 의료 제공자의 의약품 관리 요청

Reason for Medication: _____
 투약 이유

Medication: _____ Dose: _____ Route: _____ Time: _____
 약품 복용량 경로/방법 시간

If PRN: Amount of time between doses _____ Maximum number of doses _____ per day.
 필요 시: 복용 시간 구간 최대 복용 횟수 (하루 기준)

Possible medication reactions: _____

가능성 있는 약물 반응

Instructions for emergency care: _____

응급 상황 지침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Signature: _____

공인 의료 제공자 서명

Telephone: _____

전화번호

Date of Request: _____

요청 일자

Date to Discontinue Medication: _____

약품 중지 일자

Regarding EpiPen/Inhalers: (에피펜/흡입기에 관하여) 본 학생이 응급 자체 흡입기/또는 에피펜(EpiPen)을 스스로 관리/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전문적인 소견입니다. 위 학생은 적절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용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ealth Care Provider Initials 의료 제공자 이니셜 서명 _____

SCHOOL USE:

Reviewed by: _____ Date: _____

본 요청서의 효력은 최대 1 년간 유효합니다.



ATTACHMENT #11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Community and Student Support Services 오렌지 카운티 교육청 지역사회 및 학생 지원 서비스

PARENT NOTIFICATION FOR THE ADMINISTRATION OF MEDICINE AT SCHOOL 학교에서의 의약품 투여에 대한 학부모 통지문

Name of Student: _____
학생이름

학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약물 치료는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허가받은 개인입니다. 처방약 및 비-처방약들을 포함한, 약품은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학생이 학교 시간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학교에서 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가정에서 약물 투여하는 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49423 항은 교직원이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서면으로 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비-의료 교직원이 자녀의 약물 투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인된 학교 간호사들의 훈련과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의약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경우 잠금 장치 또는 냉장 보관됩니다.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학부모의 권고가 있을 때 EpiPens 또는 흡입기와 같은 응급 의약품을 학생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 학교 간호사가 서면 지시사항에 따라 학생이 약물을 안전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는지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Title 5). 비상 사태 시의 사용을 위해 추가 공급분의 약품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의학적 상태(당뇨, 간질 등)를 가진 학생은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동의서와 함께 학교에서 그들의 처방약을 긴급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IF MEDICATION IS TO BE ADMINISTERED AT SCHOOL,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학교에서 의약품 투여가 시행되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또는 치과 의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된 진술서에 구체적인 약물 투여 사유, 약품 이름, 투여량, 투여 시간, 투여 경로, 부작용 및 비상 시 특별 지시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학부모/보호자의 서명이 있는 요청서가 학교 파일에 있어야 합니다.
3. 의약품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성인이 학교에 전달해야 합니다.
4. 의약품은 자녀 앞으로 약국에서 발급한 영어로 된 원본 표지가 붙어 있는 본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5. 모든 액체 약물은 적절한 개량 도구(스푼/컵)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6. 의약품의 정확한 투여/복용량을 얻기 위해 알약 분할이 필요한 경우 측정된 알약만을 분할할 수 있으며, 측정된 알약만이 오직 반으로 나눌 수 있고, 정확한 분할을 위해 상업용 알약 분할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7.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한 일반 약물(비-처방전 약물)은 본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8. 각 약품마다 해당 요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의약품, 투여/복용량, 투여 시간 또는 투여 경로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학부모/보호자 및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사항을 자녀와 상의하여 학교에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간을 알고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 요청서의 효력은 최대 1 년간 유효합니다.

ATTACHMENT #12



School Health Office First Aid Supplies

학교 양호실 응급 처치 용품

학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아래 나열된 제품들은 풀러튼 교육구에서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지정된 비-전문 교직원이 학교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투여 관리하도록 승인한 것입니다. 의약품들은 각 학교 현장의 양호실에 보관되어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위해 활용됩니다.

- Alcohol (clean, disinfect) 알코올 (세척, 소독)
- Bee Sting Swabs/Wipes (itch/pain relief) 벌침 소독거즈/물티슈 (가려움/통증 완화)
- Eucerin/Lubriderm (rehydrating dry skin) 유세린/루브리덤 (건성 피부 완화)
- Salt Water Gargle (minor soar throat) 소금물 가글 (경미한 인후통)
- Petroelum Jelly (chapped lips) 바셀린 (갈라진 입술)
- Eye Wash (flush eye) 눈 세척제 (눈을 씻어내는)

주의사항: 자녀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예: 타이레놀, 애드빌 등)과 또는 처방전 약품을 학교에서 투여해야 하는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필요한 의약품 투여 관리 양식 (**Medication Administration Form**)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침 사탕은 질식 위험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리며,

Your School Nurse

학교 간호사

ATTACHMENT #13



ALLERGY AWARENESS NOTICE

알러지/알레르기 인식에 대한 공지사항

학부모/ 보호자님께:

상당수의 학생들은 다양한 식품, 의약품, 및 환경에서 유발되는 알러지/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러지가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교실과 가정들이 이러한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인식/조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러지 인식 점심 테이블은 요청 시 점심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땅콩, 견과류 제품 및 유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자녀가 학교에서 음식을 다른 학생과 나누어 먹지 않도록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기 위해 점심을 가져 오거나 보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감독관들은 이 안전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녀가 식사 전과 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당부하십시오. 만약 식품 알러지가 있는 자녀가 아플 경우 즉시 성인들에게 알림으로써 도움을 받도록 당부해주시요.

특히 교실의 특별 활동이나 파티를 준비할 때 식품 알러지를 상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급의 특별 이벤트에 기부하기 원하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먼저 담임교사와 상의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급의 특별 행사는 학용품이나 도서 기증과 같은 기부품으로 축하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식이 제한 사항이 있고 급식을 구입하는 경우 “특별식 요청을 위한 의료 진술서 (Medical Statement Form to Request a Special Diet)”를 작성하여 영양 서비스부에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은 교육구 사무실의 영양 서비스부와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 www.fullertonsd.org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드리며,

Your School Nurse

학교 간호교사

ATTACHMENT #14

TYPE 1 DIABETES INFORMATION

제 1 형 당뇨병 정보

2023년 1월 1일부터 California 교육법 섹션 49452.6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학생의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본 제1형 당뇨병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아 제1형 당뇨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침은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제1형 당뇨병은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병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전국적으로 2018년 18만 7천명에서 2019년 24만 4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청소년 1만 명당 25명에서 1만 명당 35명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 제1형 당뇨병 진단의 최고 연령은 13~14세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진단이 내려지거나 늦게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상적일 때 우리 몸은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을 신체 세포의 기본 연료인 포도당(혈당)으로 전환합니다.
- 체장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성합니다.
- 제1형 당뇨병에서는 신체의 체장이 인슐린 생산을 중단하여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도당은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고혈당증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아래에 설명된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징후를 보이는 학생은 담당 헬스케어 제공자로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선별 검사(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요인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1형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1형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으면 제1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른 요인도 제1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TYPE 1 DIABETES INFORMATION

제 1 형 당뇨병 정보

제1형당뇨병및당뇨병성케톤산증과관련된경고징후및증상

소아제1형당뇨병의경고징후와증상은몇주또는몇달안에빠르게나타나며심각할수있습니다. 자녀에게아래와같은경고징후가나타나면자녀의당당헬스케어제공자또는소아과의사에게연락하여제1형당뇨병검사를받는것이좋은지상담하십시오.

- ☐ 갈증심화
- ☐ 배변훈련 후 야뇨증을 포함한 배뇨 증가
- ☐ 식사후에도공복감증가
- ☐ 원인불명의체중감소극심한
- ☐ 피로
- ☐ 감호린시아
- ☐ 매우건조한피부
- ☐ 상처나베인상처의느린회복
- ☐ 기분변화, 안절부절못함, 짜증또는행동변화

DKA는치료하지않은제1형당뇨병의합병증입니다.DKA는의학적인응급상황입니다. 증상은다음과

- ☐ 프루티한숨결
- ☐ 건조하고홍조가나는피부
- ☐ 메스꺼움
- ☐ 구토
- ☐ 복통
- ☐ 호흡곤란
- ☐ 착란

이용가능한당뇨병선별검사의유형

- ☐ 당화혈색소(A1C) 검사. 혈액검사는 2-3개월동안의평균혈당수치를측정합니다. 두번의개별검사에서A1C 수치가6.5% 이상이면당뇨병을의미합니다.
- ☐ 무작위(공복아님) 혈당검사. 금식하지않고언제든지채혈합니다. 무작위혈당수치가데시리터당200밀리그램(mg/dL) 이상이면당뇨병을의심할수있습니다.
- ☐ 공복시혈당검사. 하룻밤금식후채혈합니다. 두번의개별검사에서수치가126mg/dL 이상이면당뇨병을나타냅니다.
- ☐ 경구당부하검사. 하룻밤금식후공복혈당수치를측정하는검사로, 단음료를마신후다음몇시간동안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2시간 후혈당수치가200mg/dL 이상이면당뇨병을나타냅니다.

제1형 당뇨병 치료

제1형당뇨병을예방할수있는알려진방법은없습니다. 제1형당뇨병이발병하면약물치료가유일한치료법입니다. 자녀가 제1형당뇨병진단을받으면헬스케어제공자가치료계획을세우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자녀의헬스케어제공자가 내분비계및당뇨병과같은질환을전문으로진료하는내분비전문의를소개할수도있습니다.

궁금한점이있다면학생의학교보건교사, 학교관리자또는헬스케어제공자에게문의하십시오.

자료제공

질병통제예방센터KidsHealth

Mayo Clinic

미국국립의학도서관및National Institutes of Health's MedLine

질문: 학교기반보건프로그램사무국 | schoolnurse@cde.ca.gov

Last Reviewed: Monday, March 4, 2024

ATTACHMENT #14

TYPE 2 DIABETES INFORMATION

제 2 형 당뇨병 정보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49452.7 에 준하여, 지방 교육 기관들이 2010 년 7 월 1 일을 시작으로 입학하는 7 학년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제 2 형 당뇨 정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미국 당뇨병 협회), California School Nurses Organization (캘리포니아 간호교사 단체), 그리고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들과 협력하여 이 제 2 형 당뇨 정보를 개발하였습니다.

Description 설명

제 2 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당뇨병의 형태입니다.

- 몇 년전까지, 제 2 형 당뇨는 아동들에게서는 드물었지만, 더욱 흔해지고 있으며 특히 과체중인 십대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 미국 당뇨 통제 예방 센터,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하면, 2000 년 이후 출생한 3 명의 미국 아동들 가운데 한명은 그들의 생애 중 제 2 형 당뇨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제 2 형 당뇨병은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당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 몸은 음식 속의 탄수화물을 몸의 세포를 위한 기본적인 연료인 당분으로 전환한다.
- 췌장은 당분을 혈액으로부터 세포로 옮기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 제 2 형 당뇨에서는,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영향을 저항하며, 혈당수치는 올라간다.
- 시간이 가면서 당분은 혈액 속에서 위험스럽게 높은 수치에 이르는데, 그것은 고혈당이라고 불리운다. 고혈당은 심장병, 시력상실, 그리고 신장질환과 같은 건강문제를 야기한다.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및 경고 신호를 나타내거나 경험하는 학생들은 이 질병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Risk Factors

위험 요소들

연구자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제 2 형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지 완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아동들의 제 2 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 **Being overweight.** (과체중) 아동들에게 제 2 형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과체중입니다. 미국에서는 5 명의 아동 중 1 명이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아동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두배 이상입니다.
- **Family history of diabetes.** (당뇨의 가족력) 당뇨병에 걸린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적어도 당뇨병을 가진 한명의 부모가 있거나 당뇨병의 심각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Inactivity.** (비-활동) 비 활동 상태의 생활습관은 신체의 인슐린 반응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 **Specific racial/ethnic groups.** (특정 인종/민족 그룹) 아메리칸인디언, 흑인, 히스패닉/라티노, 혹은 아시안/태평양섬 원주민들은 다른 인종 그룹들보다 제 2 형 당뇨병에 걸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 **Puberty.** (사춘기) 사춘기의 젊은이들은 어린 아동들보다 제 2 형 당뇨병에 걸리는 성향이 있는데, 아마도 급격한 성장과 신체 발달 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 수치의 정상적 상승 작용 때문일 것입니다.

ATTACHMENT #14

TYPE 2 DIABETES INFORMATION

제 2 형 당뇨병 정보

Warning Signs and Symptoms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제 2 형 당뇨병과 관련된 징후 및 증상

아동에게서 제 2 형당뇨병의 징후와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2 형 당뇨병 혹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이러한 징후를 보이지는 않으며,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제 2 형 당뇨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식후에도 배고픔이 증가
-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감소
- 갈증 증가, 구강 건조, 잦은 배뇨
- 몹시 피곤한 느낌
- 시력이 흐려짐
- 상처가 잘 낫지 않음
- 특히 팔 아래 혹은 목뒤에 어두운 벨벳 또는 솜털 모양의 피부 반점
- 불규칙한 생리, 무 생리 및 또는 여자아이들에게서는 얼굴과 몸의 과도한 털의 성장
- 고혈압이나 비정상적 혈중 지방 수치

Type 2 Diabetes Prevention Methods and Treatments 제 2 형 당뇨병 예방법과 치료

건강한 삶의 습관을 선택하는 것은 제 2 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더라도, 올바른 양의 건강 식품을 섭취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아동들이 정상체중과 정상 혈당 수준에 도달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Eat healthy foods.**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현명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지방과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 **Get more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십시오) 신체 활동을 매일 최소 60 분 이상 늘리십시오.
- **Take medication.** (약을 복용하십시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질병을 조절할 수 없다면, 제 2 형 당뇨병을 약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2 형 당뇨병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의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녀의 나이, 체중, 신장에 따라 과체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녀가 당뇨인지 혹은 당뇨병 전 단계인지 (제 2 형 당뇨병으로 가는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혈당테스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Types of Diabetes Screening Tests That Are Available 유효한 당뇨병 검사의 유형

- **Glycated hemoglobin (A1C) test.** (혈당 측정 헤모글로빈, A1C 시험) 평균 혈당을 2-3 개월에 걸쳐 채는 혈액 검사. 두 번의 개별 검사에서 A1C 수준이 6.5 %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Random (non-fasting) blood sugar test.** (무작위, 비 금식, 혈당 검사) 혈액 샘플은 임의의 시간에 수집됩니다. 200 밀리그램 / 데시리터 (mg/dL) 이상의 무작위 혈당치는 당뇨병을 암시합니다. 이 검사는 공복 혈당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 **Fasting blood sugar test.** (단식 혈당 검사) 혈액 샘플은 하룻밤 금식 후에 채취됩니다. 공복 혈당치가 100 mg/dL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00-125 mg/dL 의 수준은 당뇨병 전 단계로 간주됩니다. 두 번의 개별 검사에서 126 mg/dL 이상이 되면 당뇨병임을 나타냅니다.
- **Oral glucose tolerance test.**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설탕 액체를 마신 후 다음 몇 시간 동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밤새 단식 후 공복 혈당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 2 시간 후 200 mg/dL 이상으로 읽히면 당뇨병임을 나타냅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제 2 형 당뇨병은 예방 혹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이 정보지 안에 제공된 지침은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의 학교 간호교사, 학교 행정관, 또는 건강관리 담당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국-CDE 최종 검토: 2021년 2월



ATTACHMENT #15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Procedure for Use of Crutches, Wheelchairs, Cast and Assistive Devices on School Property Following Injury

부상에 따른 학교 시설에서의 목발, 휠체어, 조형 구조물 및 보조장비 사용 절차

풀러튼 교육구는 간혹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목발, 휠체어, 이동성 스쿠터, 보행기, 조형 구조물 (기부스), 보행용 부츠, 붕대, 슬링, 부목 등과 같은 보조 장비들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상해에 따른 학교 참여 양식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참조). 이러한 장비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캠퍼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의사의 서면 설명 없이 발생한 학생의 부상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은 의사의 서면으로 된 참여 지시 사항이 있을 때까지 신체 활동 (예: 놀이, 체육) 등이 제한됩니다.

학부모는 목발,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학생이 학교에 돌아올 때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상해에 따른 학교 참여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간호교사가 초청되어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학생이 목발, 휠체어, 기부스,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학생의 보조장비 사용 제한 및 사용 기간을 명시한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양식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학생이 이러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만 이러한 장비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완료해야 하는 임시 학습 과제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양식에는 체육과 쉬는 시간, 또는 기타 신체 활동으로부터 면제되는 예상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학부모님은 학생에게 적합한 크기의 의사 승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안전 벨트와 가능하다면 후진 안전 장치 (tip bars)가 있어야 합니다.
4. 학생의 상태가 변경되면 학부모는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은 학생이 목발,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음 단계들을 수행합니다:

1. 학생이 부상으로 인하여 보조 장비가 필요할 때 사무실 직원은 간호교사에게 알립니다.
2. 교직원은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학생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확인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교실로부터 또는 교실로 가는 계단이나 캠퍼스 혹은 교실의 장애물 등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화장실 시설이 지정될 것입니다.
3. 필요한 경우, 학생의 책, 급식 쟁반 및 비상 상황에서의 도움을 위해 또다른 도우미 학생이 배정될 것입니다. 두 학생 모두 하교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탈 수 있도록 5 분 일찍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4. 학생이 안전하게 장비를 스스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교직원만이 부상당한 학생의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부상당한 학생의 휠체어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form attached “부상에 따른 학교 참여” 양식 첨부

Procedures for Use of Crutches, Wheelchairs, Cast and Assistive Devices on School Property Following Injury Eng May 2025

ATTACHMENT #15

Fullerton School District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School Health Services Phone 714/447-7502 Fax 714/447-7793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부상에 따른 학교 활동 참여

Student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학생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School _____ Grade _____ Teacher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교사 _____
 Diagnosis _____ Date of Injury _____
 진단 _____ 부상/질병 날짜 _____

The above-named student may return to school on _____

위의 학생은 이 날짜에 학교에 다시 출석할 수 있습니다

Recommendations to be in effect until (date) _____

유효한 권고 사항 (어느 날까지)

Student will return to school with: ☐ No Assistive Device 보조 장치 없음

학생은 다음의 기구들과 함께 학교에 재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 | | | | | |
|--|--|--------------------------------|---------------------------------------|------------------------------|
| ☐ Wheelchair | ☐ Cast | ☐ Crutches | ☐ Walking Boot | ☐ Brace |
| 휠체어 | 캐스트/기부스 | 목발 | 보행신발 | 금속보호대 |
| ☐ Sutures | ☐ Walker | ☐ Sling | ☐ Elastic Bandage | ☐ Splint |
| 봉합 | 보행기 | 매는 장치 | 탄력붕대 | 부목 |
| ☐ Mobility Scooter | ☐ Other Device _____ | | | |
| 이동성 스쿠터 | 다른 장치 | | | |

I have examined the above named student and consider him/her able to participate in regular school activities wit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본인은 위의 학생을 검사해본 결과 다음 권장 사항에 따라 정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commendations for Recess 쉬는시간: ☐ May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음 ☐ May not participate 참여하지 못함

☐ May not participate, but may circulate with peers 참여할 수 없지만, 친구들과 있을 수 있음 ☐ Other 기타 _____

Recommendations for Physical Education 체육: ☐ May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음 ☐ May not participate 참여하지 못함

☐ May not participate with limitations 제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_____

Recommendations for Field Trips 견학: ☐ May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음 ☐ May not participate 참여하지 못함

☐ May not participate with limitations 제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_____

Comments/Additional Instructions 소견/추가 지침: _____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Signature _____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서명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Name (print clearly) _____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름 (인쇄체 기입)

NPI#: _____

Telephone _____ **Date** _____

전화번호

날짜

Office Stamp

I give my permission for my child (name) 자녀이름 _____ to return to school under conditions described above. I give permission for the School Nurse to exchange health-related information with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본인은 위에 명시한 조건 하에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재 출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건강 관련 정보를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Parent/Guardian Signature _____ **Date** 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ATTACHMENT #15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Procedure for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llness

질병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 절차

풀러튼 교육구는 간혹 학생들이 연장되는 질병, 입원, 수술, 911 응급전화, 상처를 꿰매거나/붙이는 경우 및 응급실 방문 등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llness” form, 질병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 양식 참조). 이러한 경우 학교가 의사로부터 특별한 안전 지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질병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 양식 작성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llness” form)
2. 질병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 양식에는 학교로부터 면제되는 예상시간이 포함됩니다.
3. 양식에는 학교 수업 시간, 체육, 쉬는 시간, 또는 기타 신체 활동 중 특별한 주의/고려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의사의 처음 지시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사로부터 서면으로 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연장된 기간의 질병에서 학교로 복귀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학교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5.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간호사에게 알리게 됩니다.
6. 교직원은 이 양식의 사본을 학교 간호사 및 학생과 관련된 교직원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ATTACHMENT #15

Fullerton School District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School Health Services Phone 714/447-7502 Fax 714/447-7793

Doctor's Note to Return to School

학교로 돌아가는 의사의 지시

(Such as: Extended illness, hospitalization, surgery, 911 calls, stitches, staples)
(질병에 따른 학교 활동 참여 (예: 연장된 질병, 입원, 수술, 911 응급전화, 깃거나 꿰맨 상처 등))

Student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학생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School _____ Grade _____ Teacher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교사 _____
Diagnosis _____ Date of Illness _____
진단 질 _____ 병날짜 _____
Student may return to school on: _____
학생이 학교에 다시 출석할 수 있는 날짜 _____
Recommendations to be in effect until (date): _____
유효한 권고 사항 (어느 날까지) _____
Treatment Plan/Current Medication(s): _____
치료 계획/현재 복용약(들) _____
Special Precautions During School Hours: _____
학교 시간 동안 특별 주의 사항들 _____
Contagious: _____ Non Contagious: _____
전염성 _____ 비 전염성 _____

I have examined the above named student and consider him/her able to participate in regular school activities wit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본인은 위의 학생을 검사해본 결과 다음 권장 사항에 따라 정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commendations for Recess 쉬는시간: ☐ *May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음 ☐ *May not participate* 참여하지 못함 ☐ *May not participate, but may circulate with peers* 참여할 수 없지만, 친구들과 있을 수 있음 ☐ *Other* 기타 _____

Recommendations for Physical Education 체육: ☐ *May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음 ☐ *May not participate* 참여하지 못함 ☐ *May not participate with limitations* 제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_____

Recommendations for Field Trips 견학: ☐ *May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음 ☐ *May not participate* 참여하지 못함 ☐ *May not participate with limitations* 제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_____

Comments/Additional Instructions 소견/추가 지침: _____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Signature _____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서명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Name (print clearly) _____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름 (인쇄체 기입)

Telephone _____ Date _____

전화번호

날짜

Office Stamp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llness Eng/Kor – Revised 2020

I give my permission for my child (name) 자녀이름 _____ to return to school under conditions described above. I give permission for the School Nurse to exchange health-related information with authorized health care provider.

본인은 위에 명시한 조건 하에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재 출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건강 관련 정보를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Parent/Guardian Signature _____ Date 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날짜

ATTACHMENT #16

LICE INFORMATION SHEET

머릿니/유충 정보 사항

머릿니/유충은 라이스라고 불리우는 작은 회색 벌레가 있는 두피 감염입니다. 머릿니 감염은 부모님에 의한 일관되고 세심한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매주 자녀의 머리와 두피를 확인하여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머릿니는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What does a "NIT" (lice egg) look like? "서캐" (유충알)은 어떻게 생겼나요?

Color: (색깔) 옅은 회색, 은빛/흰색

Shape: (모양) 눈물 또는 빗방울처럼 각이 없습니다. 침의 끝부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Sticky:** (접착) 머리에 붙어 있으며, 비듬이나 모래와 다르게 털어 낼 수 없습니다.

Where: (어디에) 모발 기둥, 가장 흔하게, 꼭대기에, 귀 뒤에, 그리고 머리 뒷면에 있습니다. 두피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Itching: (가려움) 두피의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Transmission of Head Lice: Live lice not nits. 머릿니/유충의 전이: 서캐/유충알이 아닌 살아있는 머릿니/유충

- 살아있는 머릿니/유충만이 다른 아동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서캐/유충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전염은 직접 머리에서 머리로 (모발에서 모발)의 접촉으로 전해 집니다. 머릿니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점프하거나 날아갈 수 없습니다.
- 일반모자, 스포츠 모자, 숄빳, 빗, 헤드폰 및 기타 물건에서 머릿니가 간접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머릿니 전염은 학교나 공공 장소가 아닌 집에서 발생합니다. 외박, 침대 공유, 소파 등이 주요 출처입니다.
- 머릿니는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What must I do if my child has "NITS"? 자녀가 서캐/유충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동네 약국에서 처방없이 특별한 유충 빗과 함께 머릿니 샴푸를 구입하십시오. 약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머릿니 샴푸로 머리를 감도록 하십시오. 샴푸 포장 상자에 있는 지시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 모발을 빗질 또는 수동으로 잡아 당겨서 모든 서캐들을 제거합니다. 모발이 젖어 있으면 제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의복, 침대 시트 및 수건들을 뜨거운 물에 세탁하십시오. 빗이나 솔 같은 모든 개인 용품은 물에 삶거나 또는 머릿니 샴푸에 약 1 시간 동안 담가 두어야 합니다.
- 모든 카펫, 바닥, 매트리스, 베개 및 천으로 된 의자와 소파는 진공 청소 하십시오. 세척할 수 없는 물건 (예: 모자, 코트, 스카프, 동물 인형)은 밀봉된 비닐 봉지에 2 주간 보관해야 합니다.
- 특히 기온이 높은 계절에 학교가 휴교인 경우에도 서캐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머리를 재 점검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머릿니 샴푸를 재 사용하십시오.

IMPORTANT

주요사항

제외된 학생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 일 이상 학교를 빠져서는 안됩니다. 자녀가 학교에 복귀 할 때 반드시 학교 사무실에서 머리를 재 확인 받아야 합니다.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48320-48325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s

49451 Physical examinations: parent's refusal to consent

Management Resources: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UBLICATIONS

Guidelines on Head Lice Prevention and Control for School Districts and Child Care Facilities, Fullerton School District BP5141.33

WEB SITE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http://www.aap.org>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ttp://www.cdph.ca.gov> California School Nurses Organization:

<http://csno.org>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arasitic Disease Information, Head Lice: <http://cdc.gov/parasites/lice/head>

ATTACHMENT #17

학부모 또는 보호자 및 풀러튼 교육구 학생 여러분: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우리는 자녀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유 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HPV)에 대한 정보와 예방접종을 통해 HPV가 유발할 수 있는 암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HPV 란 무엇인가?

HPV는 10명중 8명이 일생 중 한번은 감염될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 입니다. 일부 HPV 감염은 나중에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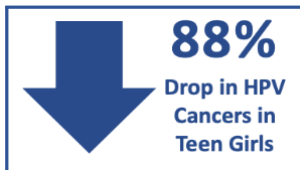


HPV는 미국에서 매년 남성과 여성에게 약 37,000건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메이저 리그 야구 경기의 평균 관중 수와 같습니다!

HPV로 인해 발생하는 암중 하나인 자궁경부암만 세포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HPV로 인한 다른 암(인후암, 생식기암, 항문암)은 심각해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이러한 암을 유발하는 감염을 예방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HPV로부터 보호할 수 있나요?

HPV 예방접종을 하면 HPV로 인한 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HPV백신은 매우 안전하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HPV 예방접종의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6년 이후 미국에서 1억 3,500만 회 이상 투여된 HPV백신은 15년 이상의 모니터링을 통해 뒷받침되는 오랜 안전성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경미하며 하르나 이를 내에 좋아집니다. 여기에는 다른 백신과 유사하게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 발적 또는 부기가 포함됩니다.



HPV 예방접종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2006년에 HPV예방이 처음 권장된 이후, 대부분의 HPV 암을 유발하는 HPV 유형에 대한 감염은 10대 소녀에서 88%, 젊은 성인 여성에서 81% 감소했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연방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미국 소아과 학회, 미국 가정의학회에서 권장합니다. 미국 암학회와 캘리포니아 암 예방법에서도 권장됩니다.

백신은 누가 접종해야 하며 언제 접종해야 할까요?



백신은 더 어린 나이에 접종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9-12세 사이의 모든 어린이에게 HPV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며, 두번째 접종은 8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접종해야 합니다.

(첫번째 백신을 너무 늦게 받는 어린이는 3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PV 백신은 종종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한 Tdap, 세균성 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막구균 백신과 같은 다른 청소년 백신과 동시에 접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HPV 백신을 어디서 접종받을 수 있나요?

HPV 백신과 접종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약사 또는 지역 보건부에 문의하세요. 백신은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에서 보장됩니다. 건강 보험이 없더라도 자녀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용 백신(VFC) 프로그램은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백신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최대 18세 어린이에게 무료 백신을 제공합니다.

VFC에 관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지역 보건부에 [local health department](#), 또는 [here](#)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귀하가 지역에서 VFC에 참여하는 의사를 찾으십시오. [in your area](#).

HPV, 백신, 암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방문하세요.

Last Reviewed: Monday, March 4, 2024

ATTACHMENT #18



학부모 여러분에게:

2018 년 1 월 1 일, **Assembly Bill (의회법안) 10**: 여성 위생 용품: 공립학교 화장실이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의회 법안 10 은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모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3-12 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화장실의 최소 50%에 항상 여성 위생 용품을 비치하고, (b) 여성용 위생 용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생리 용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c) "여성용 위생 용품"은 생리주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탐폰과 생리대를 의미합니다.

2024 년 7 월 1 일부터 교육법 35292.6 조항에 의거 개정된 의회 법안 10 은 모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3-12 학년 (이전에 6-12 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여자 화장실, 혼성 화장실 및 최소한 한 곳의 남자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화장실에는 교육법 조항 35292.5의 본문을 포함하여 요구된 생리용품의 공급 관리 책임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이 게시될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풀러튼 교육구내의 각 캠퍼스의 모든 여학생 화장실, 혼성 화장실 및 최소한 한 곳의 남자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 용품 자동기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성 위생 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자녀의 학교 사무실이나 학생 지원 서비스 (714) 447-7500 으로 문의하십시오.

감사드리며,

Director of Student Support Services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 담당 부장

ATTACHMENT #19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여러분에게:

풀러튼 교육구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와 교육 관련 카운셀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사무실을 통하거나 학생 지원 서비스에 연락하여 (714- 447-7500) 외부 카운셀링을 기관에 대한 추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 학교 심리학자 또는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학교 생활 동안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자료는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 (www.fullertonsd.org) 학생 지원부 (Department: Student Support Services)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www.caresolace.com/fsdparents 에 접속하여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외부 정신 건강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Care Solace* 서비스는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지역 사회 상담 기관에 연결해드립니다. 지역사회 내의 추가 상담 의뢰 자료는 다음의 첨부 자료 또는 웹사이트 <https://www.211oc.org/mental-health.html> 을 참고하십시오.

감사드리며,

Director of Student Support Services
학생 지원 서비스 부서 담당 부장

COUNSELING REFERRAL RESOURCES

상담 의뢰 자료

CHILD GUIDANCE CENTER – FULLERTON

Phone: 714-871-9264
Address: 2050 Youth Way, Fullerton, CA 92835
Hours: Monday – Thursday 8 a.m. – 7 p.m., Friday 8 a.m. – 5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Medi-Cal only and Special Education students qualify for a grant
Services: Outpatient mental health, child abuse, and substance abuse related counseling, peer social skills groups, PCIT (Parent/Child Interactive Treatment)

WESTERN YOUTH SERVICES - ANAHEIM

Phone: 714-871-5646
Address: 505 N. Euclid, Suite 300, Anaheim, CA 92801
Hours: Monday – Thursday 8 a.m. – 7 p.m., Friday 8 a.m. – 5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Medi-Cal only
Services: Outpatient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related

CHILDREN AND YOUTH BEHAVIORAL HEALTH COUNTY CLINICS

Phone: 714-577-5400
Website: <http://ochealthinfo.com/bhs/about/cys>
Address: 377 E. Chapman Ave., Suite 110, Placentia, CA 92670
Hours: Monday – Friday 8 a.m. – 5 p.m.
Bilingual: Yes (Spanish, Vietnamese, Korean)
Fees: Medi-Cal, sliding scale
Services: Outpatient mental health services, group, individual, and family counseling,

ST. JUDE NEIGHBORHOOD CLINIC:

Phone: 714-446-5100
Website: <http://www.stjudehc.com>
Address: 731 S. Highland Avenue, Fullerton, CA 92832
Hours: Monday – Friday 8 a.m. – 5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None
Services: Counseling/Mental health, medical and dental

COMFORT CONNECTIONS FAMILY RESOURCE CENTER

Phone: 714-558-5400 or 888-371-2229 (toll free)
Website: <http://www.rcocdd.com/frc/ccfrc/>
Address: 1525 N. Tustin Ave., Santa Ana, CA 92705
Hours: Monday – Friday 8 a.m. – 5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None
Services: Parenting classes – referrals through family center
Services and referral to families who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SELING REFERRAL RESOURCES

상담 의뢰 자료

CPS COMMUNITY SERVICE PROGRAMS

Phone: 949-250-0488
Website: www.cspinc.org
Address: 1221 East Dyer Road, Suite 120, Santa Ana, CA 92705
Hours: Monday – Friday 8 a.m. – 5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Based on services rendered.
Some require no fee and others on sliding scale.
Services: Parenting classes, individual, family and group counseling for juveniles in diversion

FACES – FAMILY ASSESSMENT COUNSELING EDUCATION SERVICES

Phone: 714-447-9024
Website: www.facescal.org
Address: 1015 E. Chapman Ave., Ste A, Fullerton, CA 92831
Hours: Monday – Friday 8 a.m. – 5 p.m.
Weekends with appointment
Bilingual: Yes (Spanish)
Fees: Sliding scale and no insurance or Medi-Cal
Services: Parenting Classes, counseling for individuals, parents, children, co-parenting, reunification, adult/teen anger management, and family counseling.

FRANCIS SMITH CLINIC – CHAPMAN COLLEGE

Phone: 714-997-6746
Address: 501 W. Palm Ave - Crean Building – Chapman University, Orange, CA 92866
Hours: Monday – Thursday 9 a.m. – 9 p.m.
Friday 9 a.m. – 5 p.m.
Saturday 9 a.m. – 3 p.m.
Bilingual: No
Fees: Sliding scale – no insurance, \$15-\$60 per session
Services: Counseling – Family, stepfamily, divorce recovery, parenting, parent/child issues, depression, anxiety, chronic illness, trauma, self-esteem, behavior problems.
Adult Croups – Parenting Self Care, Grief Loss, Self-Esteem, Healthy Relationship, Stress Management. Free Groups or \$5 per group.

GARY CENTER

Phone: 562-691-3263
Address: 341 S. Hillcrest St., La Habra, CA 90631
Hours: Monday – Thursday 8 a.m. – 8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Intake \$25, sliding scale, Medi-Cal
Services: Family,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drug & alcohol groups for teens and adults

COUNSELING REFERRAL RESOURCES

상담 의뢰 자료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ka Hope Counseling Center)

Phone: 714-879-3901 Ext 1266
Address: 2400 East Katella #900, Anaheim, CA 92806
Website: www.hiu.edu/current-students/students-life/health-and-wellness/hope-counseling-center.php
Hours: Monday – Friday 9 a.m. – 6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Sliding scale - no insurance or Medi-Cal
Services: Child and family counseling

MARIPOSA WOMEN AND FAMILY CENTER

Phone: 714-547-6494
Fax: 714-547-6464
Address: 812 W. Town and Country Road, Orange, CA 92868
Website: www.mariposacenter.org
Hours: Monday – Thursday 9 a.m. – 9 p.m.
Friday 9 a.m. – 5 p.m.
Saturday 9 a.m. – 3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Sliding scale, no insurance except Medi-Cal only for drug and alcohol program for women
Services: Child and group counseling, parenting classes, substance abuse counseling

OUTPASE PROGRAM – KOREAN COMMUNITY SERVICES

Phone: 714-449-1125
Address: 7212 Orangethorpe Ave., Suite 8, Buena Park, CA 90621
Hours: Monday – Friday 9 a.m. – 5:30 p.m.
Bilingual: Yes (Korean)
Fees: Sliding scale and Medi-Cal
Services: Parenting classes (group and no fee),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family therapy

THE COMPASSIONATE FRIENDS – OC CHAPTER

Phone: 714-993-6708
Address: 1119 S. Lambert Dr., Fullerton, CA 92833
Hours: Meet 3rd Wednesday of each month from 7-9 p.m.
Bilingual: No – literature in Spanish available
Fees: No fee
Services: Support of a loss of a child, for parents, grandparents and siblings over 14 years of age.

COUNSELING REFERRAL RESOURCES

상담 의뢰 자료

TURNING POINT CENTER FOR FAMILIES

Phone: 714-547-8111
Website: www.turningpointsantaana.org
Address: 2101 E. 4th Street, #150-B, Santa Ana 92705
Hours: Monday - Saturday 9 a.m. – 8 p.m.
Willing to work with client's schedule
Bilingual: Yes (Spanish)
Fees: Sliding - no insurance or Medi-Cal
Services: Individual, couples, and group counseling for at risk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een Group Counseling and Education (drug & alcohol, life-skills, anger management, peer support and relationship)
Adult Group Counseling and Education (anger management, domestic violence, arenting, and couple and family issues)
Court approved programs

FAMILY SUPPORT NETWORK, Special Services for Special Families

Phone: 714-447-3301
Fax: 714-447-3302
Warmline: 714-447-3303 (M-F 8:30 a.m. – 4 p.m.)
Address: 1015 S. Placeta Ave, Fullerton, CA 92831
Website: www.familysupportnetworkca.org
Hours: Monday – Friday 8 a.m. – 4 p.m.
Bilingual: Yes (Spanish)
Fees: No fee, for children and families with special needs
Services: Developmental screenings, Mental Health Outreach (ages 0-5 yrs),
Parent-to-Parent Outreach, emergency needs, Camp TLC,
Individual Grant Writing Program, wraparound Parent Institute,
Parent Mentor Services, support groups, information/resource/referral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CONNECT THE TOTS

Phone: 714-480-4678
Fax: 714-480-6608
Address: 1200 N. Main Street, Suite 300, Santa Ana, CA 92701
Website: <http://ochealthinfo.com/pi>
Hours: Monday - Friday 8 a.m. – 6 p.m.
Bilingual: Yes (English, Spanish and Vietnamese)
Fees: No fee, for children and families with special needs
Services: Families with children from birth to those preparing to enter school (under age of 6) and are at risk of mental illness and/or school failure due to social/emotional problems. Services include social/emotional screening and assessment, intervention, parent education, skills building, case management, linkage and collaboration with existing community resources. Referrals to mental health other services will be provided as needed.

ATTACHMENT #20

FULLERTON SCHOOL DISTRICT

COMMUNITY RELATIONS 지역사회 관계

Civility Page 1 예의 1

Policy No.1313

Board Approved: August 19, 2008

이사회 승인: 2008년 8월 19일

이사회는 질서 정연한 교육 및 행정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및 행정 기관에 지장이 없게 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학교/또는 교육구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풀러튼 교육구 직원들은 학부모 및 기타 공공의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같은 이유로 그러한 대우를 그들로부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 직원, 학부모 및 기타 공공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 예의 및 질서있는 행동을 장려합니다. 이 정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러튼 교육구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안전하고 괴롭힘 없는 일터를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육구 내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풀러튼 교육구는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장려하고, 무례하고 무심하며 통명스럽고 남의 기분을 모르는 무감각한 행동을 저지하며, 또한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의 협력을 추구합니다.

Disruptions 방해

1. 교과 교육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또는 사무실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의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고의적으로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폭력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소리로 또는 공격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학교 현장이나 교육구 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의 지속적인 패턴을 설정하는 개인 어느 누구든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즉시 학교 현장 또는 교육구 소유지에서 떠나도록 지시될 것입니다.
2. 공공의 구성원 누구든지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까다롭고 시끄럽고 모욕적이거나 또는 품위를 떨어 뜨리는 태도로 말을 하는 경우, 행정 관리자 또는 교직원은 침착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의사 소통할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학대 당사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 직원은 학대 당사자에게 회의, 회담, 전화 대화가 종료되었음을 구두로 알리고, 회의나 회담이 교육구 내에서 있을 경우, 예의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즉시 떠나도록 지시 받을 것입니다.
3. 이러한 제 1 문항 또는 제 2 문항의 상황에서 떠날 것을 지시받은 개인은, 만약 떠나도록 지시를 받은 후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가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또는 보호자인 경우 7일 이내에 교육구의 어느 시설이든지 재 방문할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그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4811항에 따라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개인이 요청에 따른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해당 기간 이전에 재 방문할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법 집행 당국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보고서 (부록 1313 참조)는 제 1 문항과 제 2 문항에 규정된 모든 상황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FULLERTON SCHOOL DISTRICT

COMMUNITY RELATIONS 공동체 관계
Civility Page 2 예의 2

Policy No.1313
Board Approved: August 19, 2008
이사회 승인: 2008 년 8 월 19 일

Safety and Security 안전 및 보안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교 현장 및 교육구 시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폭력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즉시 자신의 학교장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록 1313 참조). 적절한 경우,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은 학교나 교육구 시설에서 또는 학교나 교육구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격, 폭행, 또는 위협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이 손상된 직원은 교육구에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또는 보호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tion 문서

공공의 구성원이 이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직원이 판단하는 경우, 직원은 사건 발생 시점에서 해당 정책 조항을 포함하여 이 정책의 서면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은 즉시 그의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록 1313 참조).

Legal Reference: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교육법

32210	Disturbing School 학교 방해
44014	Assault on Personnel 인신 폭행
44810	Person on School Grounds 학교 구내에 있는 사람
44811	Insults and Abuses 모욕과 학대

Education Code 형사법

243.5	Arrest on School Grounds 학교 구내에서의 체포
415.5	Fighting on School Grounds 학교 구내에서의 싸움
626.8	Entry of School by Person Not on Lawful Business 합법적 사유가 아닌 개인의 학교 진입
627.7	Refusal to Leave School Grounds 학교 구내를 떠나는 것에 거부 행위

ATTACHMENT #20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Professional Standards 전문직업인 표준

BP 4119.21, 4219.21, 4319.21

Personnel 인사부
Board Adopted: September 29, 2005 이사회 채택: 2005년 9월 29일

Board Revised: October 26, 2010, September 2015 이사회 수정: 2010년 10월 26일, 2015년 9월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직원들이 최고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전문 직업인답게 행동하며, 교육구 정책과 규정을 따르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며,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할 때는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하도록 기대합니다. 직원들의 행동은 교육구의 청렴도를 높이며,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교육구 직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 또는 전문직 협회에서 채택한 직업 기준 및 윤리 강령을 지도 원칙으로 받아 들일 것을 권장합니다.

각 직원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육구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 대한 기여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직원 행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물리적 폭력, 폭력의 위협, 총기 또는 기타 무기 소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과 교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
2.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또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괴롭힘 또는 차별적인 행동에 참여하거나, 학생에 대한 차별, 괴롭힘, 위협, 따돌림 행위가 관찰될 때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3. 아동의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또는 고의적 상해 또는 부상
4. 학생과의 부적절한 사회적 또는 친목 관계에 연루되거나, 또는 학생과의 부적절한 서신, 언어 구사 또는 육체적 관계를 권유하거나 장려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5. 학교 현장에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보거나, 또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보거나, 또는 언제든지 아동을 성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기타 이미지를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6.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욕설적인 언어 사용
7. 시끄럽고 불합리한 소음 또는 기타 행위로 교육구 또는 학교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8. 직장이나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담배나 술 또는 불법 내지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규제 약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9. 고용 기록 또는 다른 학교 기록의 정보 위조,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직원 또는 공공 구성원들과의 부정직성
10. 학생, 교육구 직원 또는 교육구 운영에 관한 기밀 정보를 정보 수신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설
11. 자신의 상업적 목적이거나 정치 활동을 위해 교육구 장비 또는 기타 교육구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12. 긴급 상황이나 예정된 근무의 휴식 시간 또는 개인적인 필요성을 제외하고 근무 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육구 장비 또는 통신 장치 사용

직원들은 전자 메일 및 음성 메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컴퓨터 파일 및 모든 전자 통신이 사적인 것이 아님을 통보받게 됩니다.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직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직원의 교육구 기술 자원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13.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구에 속한 재산의 훼손 또는 도난 행위
14. 부적절한 복장 착용

다른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하거나 증거를 가진 직원은 즉시 해당 행위를 학교장이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직원은 AR 5141.4 아동 학대 예방 및 보고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porting)에 설명된대로 교육구의 아동 학대 신고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보고는 즉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법률 또는 이사회 정책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하며, 자격증 소지 직원의 경우 교사 자격 심사 위원회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적절한 경우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직원 행동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직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자, 기자 또는 교육구의 불만 사항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에 대한 보복을 한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200-262.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44242.5
Reports and review of alleged misconduct

PENAL CODE

11164-11174.4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

CODE OF REGULATIONS, TITLE 5

80303 Reports of dismissal, resignation and other terminations for alleged misconduct 80331-80338
Rules of conduct for professional educators

Management Resources: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PUBLICATIONS

California Standards for the Teaching Profession, 2009

California Professional Standards for Educational Leaders, February 2014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PUBLICATIONS

Educational Leadership Policy Standards: ISLLC 2008, 2008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PUBLICATIONS

Code of Ethics of the Education Profession, 1975

WEB SITES

CSBA: <http://www.csba.org>

Association of California School Administrators: <http://www.acs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cde.ca.gov>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http://www.cft.org>

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 <http://www.csea.com>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http://www.cta.org>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http://www.ctc.ca.gov>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http://www.ccsso.org>

WestEd: <http://www.wested.org>

CSBA Revisions

(11/01 7/09) 7/12

ATTACHMENT #21

풀러턴 교육구 이사회 정책 지침 - 학부모 참여

BP 6020

최초 이사회 채택 날짜: 2006년 11월 28일
수정: 2010년 10월 26일, 2022년 9월 13일

이사회는 자녀의 첫번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자는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이며, 자녀 교육에 관한 학부모/보호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학생의 성취도와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감과 피지명인은 교직원,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과 협력하여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이 모든 학년에 걸쳐 교육구와 학교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합의하기로 한다.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참여는 교육구와 학교 활동에 있어서 자문, 의사 결정 및 옹호 역할 등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육감 및 피지명인은 교육구의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의 참여 노력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가족의 참여 기회가 적절하고 충분했는지,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학부모/보호자 및 스태프의 전반적 의견이 포함된다.

Title I 학교

1.0 Title I, Part A 기금을 받는 지역 교육 기관 이사회(LEA) 또는 이사회는 서면 양식으로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EC] 섹션 [§§ 11500-11504, 51101(b); 20 미국법 [U.S.C.] § 6318(a)[1], 6318(a)[2]]

1.1 풀러턴 교육구는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과 공동으로 지역 교육 기관 수준의 서면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동의하여 배포했다. (20 U.S.C. § 6318(a)[2]).) 가족 설문조사, 토크 포럼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며 이 의견은 교육구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자문 위원회,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학교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자문 위원회와 함께 검토된다. 교육구는 이 정책을 Title I, Part A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가족과 부모/보호자에게 배포한다. 이 정책은 연례 공지, 전화 메시지, 각 학교의 뉴스 레터, 학생-가족 핸드북 등을 통해 가족에게 배포되고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20 U.S.C. § 6318(a)[2])

풀러턴 교육구 Title 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보호자 및 가족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음 실천 내용들이 확립되었다.

- a) 풀러턴 교육구는 부모/보호자 그리고 가족의 참여 정책을 교육구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에 포함한다. (20 U.S.C. § 6312, 6318(a)[2])

풀러턴 교육구는 가족 참여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LCAP)에 포함한다. 이 목표에는 의미 있는 참여와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가족 참여에 대한 조치, 서비스, 지출이 포함된다.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과 LCAP 연방 부록에 조치와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 b)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구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전략이 Title 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 및 가족과 공동으로 개발되고 합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참여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교육구가 20 USC 6318에 열거된 각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설명한다. (20 USC 6318)

풀러턴 교육구 BP6020
6페이지 중 1페이지

풀러턴 교육구는 매년 부모/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목표와 지침뿐만 아니라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과 LCAP 연방 부록에 대해 효과적인 것과 개선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한다.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은 학교 회의, 교육구, 및 학교/학부모 보호자 및 가족 자문 위원회 회의, 학교 현장 협의회 및 기타 여러 방법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정보는 교육구의 LCAP, LCAP 연방 부록 그리고 각 학교의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SPSA)을 수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 c) 풀러턴 교육구는 학생들의 학문 성취도와 학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교육 기관에 있는 모든 학교의 역량을 지원하고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협력,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20 U.S.C. § 6318[a][2][B])

교육구 직원은 학교 행정 직원과 협력해서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협력한다. 두 명의 교육구 커뮤니티 지원 담당 직원이 기획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학교 현장에서 지원한다. 활동으로는 교장과의 다과, 읽기/수학의 밤, 학부모, 보호자 및 가족 정보 세션과 워크숍 그리고 가족 행사 등이 포함된다. 각 학교에서 활동은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 또는 학교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협약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 (SPSA)에 포함되어 있다.

- d) 풀러턴 교육구는 Title I, Part A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전략을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기타 관련 연방, 주 그리고 지역 법률 및 프로그램과 함께 조정하고 통합한다. (20 U.S.C. § 6318[a][2][C])

주립 프리스쿨, 영어 학습자, 특수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활동은 Title I, Part A를 통해 제공되는 활동들과 조율된다.

- e) 풀러턴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의미있는 참여와 더불어 Title I, Part A 학교의 학업 향상을 위한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연간 평가를 실시한다. (20 U.S.C. § 6318[a][2][D])

풀러턴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 가족의 참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학교 현장 및 교육구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LCAP 설문 조사, 토론편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한다.

풀러턴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 가족의 참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학교 현장 및 교육구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LCAP 설문 조사, 토론편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한다.

지역 교육 기관(LEA)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1. 부모/보호자 및 가족이 승인된 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요인 (경제적 불이익, 장애인, 영어 능력 한계, 읽고 쓰는 능력 한계 또는 소수 인종 또는 소수 민족)(20 U.S.C. § 6318[a][2][D][i])

교육구는 매년 학교 현장 및 교육구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LCAP 설문 조사, 토론편 포럼, 현장 및 지역 자문 위원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하여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의 정책의 효율성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장소(학교)에서 모임 갖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가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 등, 가족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학교 직원 및 교사와 함께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항 (20 U.S.C. § 6318[a][2][D][ii])

학교 스마트 프로그램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리소스로 활용하여, 워크숍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학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전략에는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질문,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는 방법, 양식 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3. 성공적인 학교 및 가족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20 U.S.C. § 6318[a][2][D][iii])

각 학교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현장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과 학부모, 보호자 및 가족 협약을 개발한다. 학교는 가족 정보의 밤, 교장과의 비공식 회의 및 가족이 직원과 교류할 수 있는 기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협약은 가족과 교직원이 학생 성취도 향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과 학교와 가족이 학생의 주 학업 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f) 풀러턴 교육구는 (e)의 세부 항목의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더 효과적인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을 참여시키도록 증거 기반 전략을 설정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평가 결과를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을 수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20 U.S.C. § 6318[a][2][E])

평가 결과는 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 참여를 개선시키기 위한 증거 기반 전략을 설정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 평가 결과를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을 수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g) 풀러턴 교육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집단의 요구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Title I, Part A를 지원 받는 학교 활동에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을 참여시킴으로써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을 개발, 수정 및 검토한다. (20 U.S.C. § 6318[a][2][F])

각 학교는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LCAP) 및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AC)에서 봉사할 가족 구성원을 지정한다. 이 위원회는 연간 평가 결과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을 개발, 수정 및 검토한다.

1.2 교육구 내 모든 학교(Title I과 non-Title I 포함)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에 대한 풀러턴 교육구 정책은 아래 나열된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한다. (EC §§ 11502, 11504, 11506)

a) 학교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미래 구성원으로서의 자녀가 자라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을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EC § 11502[a])

모든 학교는 부모/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참여 계획과 학교와 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협약을 개발한다. 각 학교는 가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제공한다. 정보와 리소스는 웹사이트 및 집으로 보내는 자료뿐만 아니라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정보의 밤,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컨퍼런스, 가족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된다.

b)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에게 자녀의 학업 성취를 개선시키고 가정에서의 학습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학업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EC § 11502[b])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모임이나 가족의 밤을 통해 집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전략에 관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한다.

c)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이 교실 학습 활동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상호간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통한다. (EC § 11502[c])

각 학교는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가족들이 추가적인 리소스를 접할 수 있도록 월간 뉴스 레터를 발행한다. 각 학교에서 의사 소통의 유효성에 관한 정보는 연간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설문 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용된다. 가정-학교 간의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구 모든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등을 활용한다. 사회 복지 보조인은 학교-가정간의 소통을 지원한다.

d) 더 효과적으로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 직원을 교육시킨다.(EC § 11502[d])

학교 스마트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교육 기관은 가족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증거기반 전략에 관한 리소스, 정보, 워크숍, 교사 교육 등을 제공한다.

e)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학업 책임을 위한 학교의 기본 계획에 통합한다. (EC § 11502[e])

각 학교는 학업 성취도와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표 외에도 가족 참여를 위한 목표, 지침, 전략 및 지출을 포함하는 학생 성취도를 위한 학교 계획(SPSA)을 매년 개발한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Title I-기금을 받는 각 학교가 20 USC 6318에 따라 매년 학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부모 참여 학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과 학부모 협약을 매년 개발하도록 한다.

1.3 Title I, Part A 기금으로 \$ 500,000 이상을 받는 지역 교육 기관은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할당량의 1 퍼센트를 예비 기금으로 책정한다. (20 U.S.C. § 6318[a][3][A])

교육구는 적어도 Title I, Part A 할당량의 1퍼센트를 교육의 전반에 있어 가족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다. 가족 참여 활동들은 교육구의 지역 통제 및 책임과 연방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가족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구 수준의 직원도 배치한다.

1.4 Title I, Part A 기금을 받는 아동의 부모/보호자 및 가족은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활동을 위해 예비 기금을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 (20 U.S.C. § 6318[a][3][B])

각 학교는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LCAP)과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LAC)에서 봉사할 가족 구성원을 지정한다. 이 위원회는 가족 참여 활동에 대해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을 검토한다. 이 정보는 가족 참여를 위한 조치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과 연방 부록을 매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1.5 예비 기금의 90 퍼센트 이상을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20 U.S.C. § 6318[a][3][C])

풀러턴 교육구는 Title I, Part A 의 90 퍼센트 이상을 기금 공식(funding formula)에 기반해서 학교에 배분한다.

1.6 풀러턴 교육구가 비치하고 있는 예비 기금은 교육구의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과 일치하는 활동 및 전략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20 U.S.C. § 6318[a][3][D])

1. 학부모/보호자 참여 전략과 관련하여 교육구 및 학교 직원에게 전문성을 제공하는 학교와 비영리 단체 지원. (20 U.S.C. § 6318[a][3][D][i])
2. 가정, 지역 사회 및 학교에서 부모/보호자 및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20 U.S.C. § 6318[a][3][D][ii])
3. 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참여에 중점을 둔 모범 사례. 특히 경제적으로 불우한 부모/보호자들의 참여 증가

풀러턴 교육구 BP6020
6페이지 중 4페이지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 배포. (20 U.S.C. § 6318[a][3][D][iii])

4.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를 개선하고 증가시키는 데 성공한 지역사회 기반 또는 조직이나 고용인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를 돕고 하위 보조금 제공. (20 U.S.C. § 6318[a][3][D][iv])
5. 풀러턴 교육구는 부모/보호자 및 가족 참여 정책에 적절하며 일관성 있다고 결정한 다른 활동과 전략에 참여. (20 U.S.C. § 6318[a][3][D][v])

본 정책에서 다루어진 활동과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참여 활동을 위한 지역 예비 기금이 사용된다.

Non-Title I 학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자녀 교육에 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참여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 Title I 기금을 받지 않는 각 학교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교육구와 학교가 교육법 섹션 11502에 명시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전략을 설명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교육법 섹션 11504)

법률 참조:

교육법

11500-11506 학부모 참여를 격려하는 프로그램
48985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공지
51101 학부모 권리와 책임
64001 학생 성취를 위한 단일 계획
노동법
230.8 학교 방문을 위해 휴가 내기
미국법, TITLE 20
6311 교사의 자질과 학생의 성취도 학부모에게 알림
6312 지역 교육 기관 계획
6314 학교 프로그램
6316 학교 개선
6318 학부모 참여
연방 규정법, TITLE 28
35.104 정의, 보조 지원 및 서비스
35.160 소통

관리 리소스:

CSBA 출판물

학부모 참여: 효과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정책 개발, 거버넌스(governance) 및 정책 서비스 정책 요약, 2006년 8월
주 교육 정책 위원회

89-01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 참여, 1994년 개정

미국 교육부 비규제 지침 학부모 참여

학부모 참여: Title I, Part A., 2004년 4월 23일

웹사이트

CSBA: <http://www.csba.org>

캘리포니아 교육부, 가족, 학교, 지역사회 파트너십: <http://www.cde.ca.gov/ls/pf>

캘리포니아 학부모 센터: <http://parent.sdsu.edu>

캘리포니아 주 PTA: <http://www.capta.org>

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전국 연합: <http://www.ncpie.org>

전국 PTA: <http://www.pta.org>

낙오자 없음(No Child Left Behind): <http://www.ed.gov/nclb>

풀러턴 교육구 BP6020

6페이지 중 5페이지

학부모 정보 및 리소스 센터: <http://www.pirc-info.net>
교사로서의 학부모 센터: <http://www.parentsasteachers.org>
미국 교육부: <http://www.ed.gov>
CSBA 개정
(3/91 6/96) 8/06

풀러턴 교육구 BP6020
6페이지 중 6페이지

ATTACHMENT #22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이사회 정책

Community Relations 공동체 관계

BP 1250

Visitors/Outsiders 방문객/외부인사 - 페이지 1

Board Adopted: January 27, 1987 이사회 채택: 1987 년 1 월 27 일

Board Revised: July 25, 2017 이사회 수정: 2017 년 7 월 25 일

이사회는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학군의 학교들과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들을 관람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정규 수업일 동안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수업일 중의 방문은 학교장이나 피지명인 그리고 교사와 먼저 합의되어야 합니다. 만일 면담을 원하는 경우, 비 수업시간에 교사와 약속을 정하셔야 합니다.

수업일 중의 교실/교사 방문은 교사와 학교장/피지명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45분 이내 또는 단일 수업 시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2시간 또는 3 학업 시간 중 더 짧은 시간에 적용하여 그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방해 요소를 피하기 위해, 모든 방문객은 학교 시간 중에 학교 건물이나 구내에 들어오는 즉시 학교 사무실에 방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설정한 모든 합리적 제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의 안전과 보안 목적을 위해, 학교장이나 피지명인은 학교 구내에서 방문객을 식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수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장 모두의 서면 허가없이 학생이나 방문객이 교실에서 전자식 청취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개인이 학교 구내에서 질서있게 행동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호받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것과,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직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육구의 불만사항 처리 절차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형법 6276.7에 따라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격하거나, 적대적이거나, 호전적이거나,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비롯한 혼란을 유발하는 어느 개인이든지 즉시 학교 구내에서 떠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교육 프로그램에 혼란을 주거나; 학생, 교사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거나;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괴롭힘을 줄 때;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할 때; 또는 학교장/피지명인의 의견에 좋지 않고 유익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의 방문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 상, “visitor” (방문객)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임무와 직무가 학교/교실 방문을 포함하는 교육구 정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school is in session” (학교가 수업 중)이라는 뜻은 정규 수업일 30분 전과 30분 후를 의미하며 모든 쉬는 시간, 휴식 시간 및 점심 시간을 포함합니다. “instructional day” (수업 일)이란 학생이 수업, 교육, 훈육 또는 기타 전문적인 목적으로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과 함께 있기 전/후 30분을 의미합니다.

Presence of Sex Offender on Campus 캠퍼스 내 성범죄자의 존재

학군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하여 형법 290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학교 캠퍼스나 구내를 출입하기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 활동에 그러한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및 지역 법 집행 당국과 상의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서면 허가서에 허가가 부여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형법 626.81) 학교장은 등록된 성범죄자가 학교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할 때 성범죄자에게 학교장이 지정하는 성인을 동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또한 해당자가 서면 허가서를 제출할 때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Legal References: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32210 Willful disturbance of public school or meeting
32211 Threatened disruption or interference with classes; misdemeanor
32212 Classroom interruptions
35160 Authority of governing boards
35292 Visits to schools (board members)
49091.10 Parental right to inspect instructional materials and observe school activities
51101 Parent Rights Act of 2002
51512 Prohibited use of electronic listening or recording device

EVIDENCE CODE

1070 Refusal to disclose news source

LABOR CODE

230.8 Discharge or discrimination for taking time off to participate in child's educational activities

PENAL CODE

290 Sex offenders
626-626.10 Schools
626.81 Misdemeanor for registered sex offender to come onto school grounds
627-627.10 Access to school premises, especially:
627.1 Definitions
627.2 Necessity of registration by outsider
627.7 Misdemeanors; punishment

CSBA Revisions

(7/10 3/12) 12/14

ATTACHMENT #23

FULLERTON SCHOOL DISTRICT

TRANSPORTATION DEPARTMENT

PARENT PAY TRANSPORTATION RATES FOR 2025-2026

2025-2026 학년도 학부모 부담 교통 운임비

Annual Round-Trip (연간 왕복 교통비)	첫 형제자매 \$399	두번째 형제자매 \$299	세번째 형제자매 \$199	네번째 형제자매 + \$0
Annual One-Way (연간 편도 교통비)	첫 형제자매 \$200	두번째 형제자매 \$150	세번째 형제자매 \$100	네번째 형제자매 + \$0
Semester Round-Trip (한학기 왕복 교통비)	첫 형제자매 \$200	두번째 형제자매 \$150	세번째 형제자매 \$100	네번째 형제자매 + \$0
Semester One-Way (한학기 편도 교통비)	첫 형제자매 \$100	두번째 형제자매 \$75	세번째 형제자매 \$50	네번째 형제자매 + \$0

도보 가이드라인을 넘어 거주하고 재정적으로 자격을 갖춘 승객은 무료 요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통학 패스 복원 비용 - \$10

이사회에서 정한 보행 지침 거리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

유치부 (K) - 6 학년 1.25 마일

7-8 학년 2.0 마일

이사회에서 정한 보행 지침 거리 내 교통 운임

이사회에서 정한 보행 지침 거리 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이 정해져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경우
2. 버스에 자리가 있는 경우
3. 왕복 운임비가 전액 지불되었을 경우

이사회가 설정한 보행 지침 거리 내에서 거주하는 통학생들은 재정적인 필요에 따른 무료 또는 할인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TTACHMENT #24



풀러턴 교육구 영양 서비스 부서 급식비 정책



I. 목적

풀러턴 교육구의 목적은 건강과 학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양 서비스 부서는 급식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미국 농무부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고를 준수하며,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II. 정책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 전체에 걸쳐 균일한 식사 계정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A. 각 학생들은 완전한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한 아침 식사는 육류/육류 대체식품, 곡물, 우유, 과일 또는 채소 등 최소 3 가지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하나의 과일 또는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한 점심 식사는 육류/육류 대체식품, 곡물, 우유, 과일 또는 채소 등 최소 3 가지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하나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한 간식은 육류/육류 대체식품, 곡물, 우유, 과일 또는 채소 중 최소 2 가지로 구성됩니다.
- 건강한 저녁 식사는 곡물, 육류/육류 대체식품, 우유, 과일, 채소로 구성됩니다.

B. 미국 농무부 (USDA)의 승인을 받아 2025-2026 학년에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이 제공됩니다.

C. 미지급 급식 잔고는 매년 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이는 부모/보호자들의 책임입니다. 마이너스 잔액은 적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계획이 필요한 경우, 영양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D. 학생들이 개별 구매 품목과 두 번째 식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식사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별 구매 마이너스인 학생들은 부족한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계정에 돈을 추가해야만 개별 구매 품 또는 번째 식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 계정 잔액 기록은 www.MySchoolBucks.com 에 계정을 개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학부모/보호자들이 학생들의 개별 구매 품목을 구매를 위해 학생 계정에 돈을 추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불하여 학생들의 계정에 적립하거나 학교에서 지불하기, 또는 풀러턴 교육구 3 영양 서비스 부서를 수취인으로 하여 현금 또는 수표를 보내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부모/보호자는 www.MySchoolBucks.com 에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에는 사용자 요금(풀러턴 교육구과는 무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러턴 교육구 영양 서비스 부서 급식비 정책



www.MyschoolBucks.com 을 참조하십시오.

- 학교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하는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앞 사무실의 점심 디파짓 상자(lunch deposit box)옆에서 선불 봉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봉투에 필요한 정보를 적고 돈을 봉투 안에 넣은 후 점심 디파짓 상자 안에 봉투를 넣으십시오.
- 학생들은 급식을 받을 때 식당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 부서는 앞면에 금액, 날짜, 학생 이름, 아이디 번호 등이 적힌 봉투에 현금이나 수표를 넣을 것을 권유합니다. 구내식당은 거스름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를 초과한 경우 거스름돈은 돌려주지 않고 학생들의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G. 환불 요청은 학년도 중에도 가능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려면 www.fullertonnutrition.org 에 접속하여 식사 계정 환불/이체 요청 양식을 인쇄하여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환불을 요청하실 때는 MySchoolBucks 에서 자동 결제된 금액을 취소/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6 월 2 일 이후 접수된 환불 요청은 2025 년 7 월 24 일에 처리됩니다.

H. 계정 잔액은 학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점심 라인이나 학교에서 학생들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I. 영양 서비스 앞으로 발행된 수표가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은행에서 반환되는 경우 25 달러의 자금 부족(NSF) 수수료가 학생 계정에 부과됩니다.

J. 거래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고소하기 위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저희의 재무 기록이 국가에 제출되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양 서비스 부서는 분쟁을 조사하고 필요한 수정을 할 것입니다.

III. 연락처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 사이트 www.fullertonnutrition.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우려 사항은 영양 서비스 부서 714-447-7435 로 전화하시거나 테리 곤잘레스(Terri Gonzalez)에게 terri_gonzalez@myfsd.org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Victor Trejo, RDN
Director, Nutrition Services



풀러턴 교육구 영양 서비스 부서 급식비 정책



차별 금지:

연방 시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의 시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 와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산하 기관, 사무소, 직원 및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연령, 혼인 여부, 가족/부모 지위, 공공 지원 프로그램 소득, 정치적 신념, 또는 이전 시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앙갚음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USDA 가 시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금지됩니다(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책 및 불만 제기 기한은 프로그램 또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의사소통 수단(예: 점자, 큰 활자체,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 등)이 필요한 장애인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또는 지역 기관에 문의하거나, 711 번(음성 및 TTY)으로 전화하여 통신 중계 서비스를 통해 USDA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양식(AD-3027, PDF)을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은 프로그램 차별 불만 제기 방법(How to File 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웹사이트와 모든 USDA 사무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USDA 앞으로 편지를 쓰고 양식에 요청된 모든 정보를 편지에 기재하십시오. 불만 양식 사본을 요청하려면 866-632-9992 로 전화하십시오. 작성된 양식 또는 편지를 다음 기한까지 USDA 에 제출하십시오.

1. **mail:**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Mail Stop 9410
Washington, D.C. 20250-9410;
2. **fax:** (202) 690-7442; or
3. **email:** program.intake@usda.gov

저희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District Superintendent, Robert Pletka, Ed.D.
Trustees: Beverly Berryman, Ruthi Hanchett
Aaruni Thakur, James Cho, Vanessa Estrella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ph 714.447.7400•www.fullertonsd.org

Proud Member of the
Fullerton Education Community



풀러턴 교육구 영양 서비스 부서 대체 소득 양식 정보



2025년 7월 1일

대체 소득 양식 청서는 **2025-26**학년도에 제공됩니다.

대체 소득 양식(**Alternate Income Form**) 정보는 자녀가 학교 급식을 먹을 계획이 없더라도 학교 기금을 포함하여,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인터넷 접속, 대학 지원 비용, SAT 응시료, P-EBT 혜택, 및 버스 승차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와 가족들이 유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대체 소득 양식의 질문들이 다시 한번 온라인 연간 정보 검토(AIR)의 일부로써, TK/K 부터 8학년 까지 모든 학생들이 학교 개학 전에 완료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7월 마지막 주 또는 8월 첫째 주에 AIR에 로그인하라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알림은 각 학생의 현재 파일에 있는 기본 학부모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학부모의 이메일 주소가 없을 경우, 로그인 정보가 포함된 인쇄된 편지가 학생의 현재 파일에 있는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2025년 8월 1일까지 AIR 접속 알림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은 학교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직접 인증 편지를 받은 경우 대체 소득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소득 양식(Alternate Income Form)

2025년 7월 1일 이후 직접 인증 편지를 받지 못했고 우리 학군의 신입생인 경우 대체 소득 양식을 제출해야 대체 소득 양식(Alternate Income Form).

8월에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세부사항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

- 대체 소득 양식 청서는 풀러턴 교육구(PreK-8 학년)에게만 해당됩니다. 저희 교육구는 풀러턴 연합고등학교 교육구의 양식 및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714-447-7435로 전화하십시오.

Victor Trejo
Director, Nutrition Services

저희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District Superintendent, Robert Metka, Ed.D.
Trustees: Beverly Berryman, Ruthi Hanchett
Aaruni Thaker, James Cho, Vanessa Estrella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ph 714.447.7400-www.fullertonisd.org

Proud Member of the
Fullerton Education Community

Revised:5/15/2025



풀러턴 교육구 영양 부서

급식 가격 정보



2025년 7월 1일

현재 식사 가격:

	정가	할인 가격
아침	무료	무료
초등학교 점심	무료	무료
중학교 점심*	무료	무료

* 비치우드와 휘슬러 초등학교 6-8학년 포함

개별 구매 품목(a la carte)은 우유, 물, 100%주스, 스마트 스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별 구매 품목에 대해 선지불을 권장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식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www.myschoolbucks.com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에는 제 3자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마이스쿨벅스(mySchoolBuck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녀의 계정에 입금 금액이 나타나는 데에 최대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귀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잔액 확인, 개별 구매 품목 구매 및 자동 결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학교 사무실에서, 그리고 급식 시간에 현금 및 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 부서는 새 학년도에 저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학교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Victor Trejo, RDN
Director, Nutrition Services

저희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District Superintendent, Robert Pietka, Ed.D.
Trustees: Beverly Berryman, Ruthi Hanchett
Aaruni Thaker, James Cho, Vanessa Estrella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ph 714.447.7400-www.fullertonsd.org

Proud Member of the
Fullerton Education Community

Revised: 5/15/2025

풀러턴 교육구



마이스쿨벅스(MySchoolBucks)는 학생 급식 계정을 위한 온라인 급식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회사입니다. 저희 영양 서비스 부서는 편리성과 보안을 위해 마이스쿨벅스(MySchoolBucks)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계좌 설정, 자녀의 식사 구매 내역 조회, 잔액 확인, 자녀의 계정이 지정된 달러 금액 이하로 떨어질 때 자동 이메일 알림 설정 등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혜택: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로 하루 24시간 주 7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결제하십시오.
- 결제 후 영업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학생 급식 계정에 크레딧이 적립됩니다.
-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학생 급식 계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지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자동 결제합니다.
- 잔고가 부족할 때 자동으로 이메일 알림을 보냅니다.

MYSCHOOLBUCKS.COM의 결제 수수료에 관한 중요한 정보

거래 수수료 방법: 자녀 1명당 또는 여러 자녀당 최대 120불의 금액을 지불하면 3.25 달러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스쿨벅스 (MySchoolBucks855-832-52260로 문의하시거나, www.MySchoolBucks.com을 방문하십시오.

추가 결제 정보 및 마이스쿨벅스 이용을 위해 저희 웹사이트 www.fullertonnutrition.org를

방문하셔서 "Prepay Options" 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영양 서비스 웹 페이지에 게시된 대로 30일 이전에 통지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급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ATTACHMENT #25

Fullerton School District

Fact Sheet on Immigration Concerns

이민 신분/지위 문제에 관한 사실 자료

Student Enrollment Information: 학생 등록 정보

- 풀러튼 교육구는 학생들을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만 수집합니다.
 - 거주 증명 (다음 중 3개 제출)할 것.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04.1 조항에 의거하여 거주지 확인을 위해 다음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영수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임금 지불 전표
 - 투표 등록지
 - 정부기관에서 받은 편지/서류
 -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거주 확인 진술서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요청한 위에 열거한 문서의 모든 항목들은 객관적 사실 그대로 작성되어야 함.
 -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법적 거주 정보 필요하지 않음
 - 가족의 이민 신분/지위 정보 필요하지 않음
 -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서류 - 다음 중 하나를 제출:
 -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지방 등록대행기관이나 카운티 등록 사무소의 문서
 - 출생 증명서 대신에 학생의 법적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에 관한 진술서 (참고: 진술서는 풀러튼 교육구내의 20개 학교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제출 가능)
 - 여권
 - 세례/침례 증서 (생년월일 확인되는)

PROCEDURES FOR DOCUMENTATION ON AGE VERIFICATION

나이 증명 서류 작성 절차

1. 자녀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2.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위에 적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서류 참조)
 3. 자녀의 학적 기록에 보관할 서류의 사본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법적 이름 및 미성년자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는지 학부모에게 묻습니다.
 4. 학부모가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확인 서류 대신에 진술서를 학적 기록에 보관합니다.
- 방과 후 보육 기관 및 풀러튼 교육구 협력 기관들은 동일한 지침을 따릅니다.
 - 모든 학생들은 이민 신분/지위와 상관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What if a Federal Agent comes to the School Office requesting to see students or documentation?

만약 연방 요원이 학교 사무실에 와서 학생이나 서류를 보기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학교는 "민감한 장소"이며 연방 정부의 정책은 적어도 다음 사항 외에는 이민 집행 조치를 피하는 것입니다.
 1. 적절한 학교 관계자 및 특정 연방법 집행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오직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학교 캠퍼스에서 허용됩니다.
 - ☐ 국가 안보
 - ☐ 테러
 - ☐ 공공 안전
 - ☐ 증거 자료의 중대한 파괴 위험

- 연방 요원을 즉시 학교장에게 의뢰합니다.
 - 학교장은 교육구 법률 고문과 협의할 교육감 및/또는 내각 위원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 법원 명령없이 학생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방 치안 관사의 영장이나 소환장이 없는 한 이민 신분/지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Important Information/FAQs: 주요 정보/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할까요?
 - 모든 학생들에게는 다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제공됩니다.
 - 괴롭힘/따돌림
 - 위협
 - 차별
 - 캠퍼스의 모든 성인들은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다음의 것들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 안전에 중점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 행동에 긍정적인 접근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정
- 나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모든 아동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의 성인들은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학습 환경과 충분한 자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집니다.
-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내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 올 수 있습니까?
 - 우리는 모든 부모님들이 비상/긴급 상황 발생 시에 자녀를 데리러 갈 권한이 있는 다수의 성인들을 자녀의 비상 정보 카드 (Emergency Information Card)에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Board Policy 5145.13



ATTACHMENT #25

Community Resources for Parents and Students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자료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민 문제에 관해 질문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정보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래의 자료 (기사, 웹사이트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을 참조하십시오.

Websites 웹사이트

풀러턴 학군의 이민 자원 웹페이지, (<https://www.fullertonsd.org/ImmigrationResources>) 는 이민자 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 법률 지침 및 지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아동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https://www.nea.org/advocating-for-change/action-center/our-issues/immigration>
활동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ED 100 <https://ed100.org/lessons/undocumented>

서류 미비 학생 및 교육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

2-1-1 <http://www.211.org>

이민자 학생 및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지역 자원을 이용한 무료 기밀 서비스

Orange County Social Services Agency <http://ssa.ocgov.com/>

오렌지 카운티 사회 복지국 메디-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신 건강 및 외상 관련 정보

Regional Center of Orange County <http://www.rcocdd.com>

오렌지 카운티 리저널 센터 조기 중재, 보육, 교통 및 위기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지역사회 기반 조직

CSUF Center for Healthy Neighborhoods <http://healthyneighborhoods.fullerton.edu/>

건강한 이웃을 위한 칼스테이트 풀러튼 주립대학 센터 광범위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제공

St. Jude Neighborhood Health Center <http://stjudenhc.com/>

세인트 주드 인근 보건 센터 1 차 진료, 치과 진료, 정신 건강 서비스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보건 센터

Western Youth Services <http://www.westernyouthservices.org/>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통합 정신 건강 서비스

Joya Scholars <http://joyascholars.org/>

풀러튼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

Community Schools Partnership Program

Office Hours

Mondays, Wednesdays, & Fridays: 8 a.m. - 4:30 p.m.

Tuesdays & Thursdays: 8 a.m. - 5:30 p.m.

(714) 447-2889

bit.ly/FSDCommunitySchools

Legal Resources for Immigration Matters

Camino Immigration Service: DOJ-Accredited

Bethany Anderson, Director

Phone: (657) 217-2365

Email: help@caminoimmigration.org

<https://www.caminoimmigrationservices.org/contact>

Catholic Charities of Orange County

Phone for English or Spanish: (714) 347-9610

phone for Vietnamese: (714) 347-9604

Email: ccocimmigration@ccoc.org

1800 East 17th Street Santa Ana, CA 92705

Community Legal Aid SoCal

2101 North Tustin Avenue, Santa Ana, CA 92705.

Phone: 714-571-5200

<https://www.communitylegalsocal.org/programs-services/areas-of-law/immigration/>

ATTACHMENT #25

Know Your Educational Rights 귀하의 교육 권리를 아십시오

Your Child has the Right to a Free Public Education 귀하의 자녀는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미국의 모든 아동들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민 지위에 상관없이 무상 공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 모든 아동은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6-18 세 사이의 아동들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평화로운 환경의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은 차별, 괴롭힘, 따돌림,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립 학교 교육 환경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특성들 중에 그들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이민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formation Required for School Enrollment 학교 등록에 필요한 정보

- 아동을 등록 시킬 때 학교는 아동의 나이 또는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 증명 (다음 중 3개 제출)할 것. 캘리포니아 교육법 48204.1 조항에 의거하여 거주지 확인을 위해 다음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영수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또는 납부 영수증
 - 공공 서비스 계약서, 명세서 또는 지불 영수증
 - 임금 지불 전표
 - 투표 등록지
 - 정부기관에서 받은 편지/서류
 -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거주 확인 진술서
-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서류 - 다음 중 하나를 제출:
 -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지방 등록대행기관이나 카운티 등록 사무소의 문서
 - 출생 증명서 대신에 학생의 법적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에 관한 진술서(참고: 진술서는 플러틴 교육구내의 20개 학교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제출 가능)
 - 여권
 - 세례/침례 증서(생년월일 확인되는)
- 귀하의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의 기밀 유지

- 연방법과 주법은 학생들의 교육 기록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가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에 대한 응답이 아닌 이상 학생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교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 일부 학교는 공개적으로 기본적인 학생의 안내 정보인 "디렉토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년, 자녀의 학군에서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학교의 디렉토리 정보 정책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자녀들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옵션/선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Family Safety Plans if You Are Detained or Deported 귀하가 구금 또는 추방당한 경우를 대비한 가족 안전 계획

- 귀하는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귀하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 보호자를 확인/식별하기 위해 자녀의 학교에 2 차 연락처를 포함한 비상 연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보호인의 권한 부여 확인서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임시 보호자 지정 청원서 (Petition for Appointment of Temporary Guardian of the Person)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및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Right to File a Complaint 불만 사항 제기 권리

- 만약 자녀가 자신의 실제 또는 인식된 국적, 민족, 또는 이민 지위에 근거하여 괴롭힘, 위협, 따등의 차별을 받는다면 자녀는 증오 범죄를 신고하거나 교육구에 불만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ATTACHMENT #26



Parent Notification Letter for Universal Behavior Screening

보편적 행동 검사를 위한 학부모 통지서

풀러튼 교육구는 전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 선별 도구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와 유사하게 보편적 행동 검사 도구의 데이터는 계층적 지원 시스템에서 추가의 중재안이 필요한 학생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검사는 교직원들이 어떤 학생들이 추가의 학업 또는 행동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에는 특정 학업 또는 행동 검사 테스트뿐만 아니라 주 또는 교육구 테스트들의 최근 결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2-3 회 실시됩니다. 점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보다 전문화된 학업,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식됩니다. 보편적 검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일찍 긍정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돕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수학 및 읽기의 보편적 선별 도구는 학생들이 지식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행동 선별 도구인 SRSS-IE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에 대한 학생 위험 선별척도) 와 RethinkEd 학생 자가 보고 목록은 학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 요구에 중점을 둡니다.

SRSS-IE 는 교사에 의해 작성되고 여러분의 검토를 위해 학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 외에 검사를 실시하며 SRSS-IE 는 교사 평가 척도이므로 학생들에게 추가 시간이나 직접적인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RethinkEd 학생 자가 보고 목록은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 역량을 측정합니다. 평가는 3-5 및 6-8 을 포함하는 학년 수준 범위로 나뉩니다. 매년 두 번, 봄과 가을 시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가지 주요 영역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장을 결정하기 위해 두 시즌 모두 동일한 평가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5 가지 차원은 CA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서 식별한 핵심 SEL 역량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및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나타냅니다. 45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료하는데 평균 15 분이 소요됩니다. 평가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되며 항목은 온라인으로 관리 및 수집됩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식별된 학생들에게 멘토링, 사회적 능력 구축 및 기타 학습 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학문적 보편적인 검사와 마찬가지로, 귀하의 자녀가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되었다면 이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고,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SRSS-IE 및 RethinkEd 학생 자가 보고 항목을 검토한 후, 자녀의 참여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학교장님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이터와 직접 연계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풀러튼 교육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각 학생들은 학업 및 사회-정서적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PARENT GUIDE TO EMERGENCY PROCEDURES

비상사태/긴급상황 절차에 대한 학부모 가이드

풀러턴 학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는 자연재해(지진, 강풍 등), 인재(화재, 화학물질 유출 등), 그리고 학교 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건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What should parents do in an emergency? 부모들은 긴급상황 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Before an Emergency: 긴급상황 발생 전

- 자녀에게 학교에는 학생 안전을 위한 비상 계획이 있으며, 이는 전교생 훈련을 통해 연습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이러한 훈련은 자녀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진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건물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어졌다는 점을 자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 안전 규정이 있으며, 학교에는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 자녀에게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학교 관계자와 법 집행 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오.
- " 학교 비상 정보 (학부모 포털)가 허가된 개인 이름들과 현재의 전화번호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교는 비상 카드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학생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 " 가족을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도움을 원하시면 American Red Cross, 미국 적십자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edcrossplans.org/>

During an Emergency: 긴급상황 동안

- 당황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즉시 비상 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 " 학교 현장에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초기 대응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합니다. 비상 차량들과 초기 대응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합니다.
- "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학교 메시지는 정보 및/또는 지시사항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업데이트 된 연락처 정보는 시기 적절한 소통에 중요합니다.
- "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캠퍼스로 오는 학부모들은 즉각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학교의 능력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 " 학교와 교육구는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Parent Notification Methods: 학부모 통지 방법

- **Emails and Text Messages**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이 시스템은 문자 메시지, 전화, 이메일 알림을 통해 가족들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희 알림 시스템은 자녀 학교의 비상 상황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학부모님께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의 학생 정보 시스템인 PowerSchool 에서 비상 연락처 정보를 가져옵니다. 자녀의 기록과 비상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여 적시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District/School Website** 교육구/학교 웹사이트 : 교육구는 "교육구 및 학교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비상 사태 전, 도중 및 후에 가족과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교육구 웹사이트 주소: <https://www.fullertonsd.org/>
-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전화 및 학군 통신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풀러턴 학군 소셜 미디어에 비상 알림 및 최신 소식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 게시가 가장 빠른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계정들을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학교에서도 유사한 소셜 미디어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으니 구독을 권장합니다..
 - [Fullerton School District Facebook](#)
 - [Fullerton School District Instagram](#)
 - [Fullerton School District X](#)

- **Fullerton Police Department** 풀러튼 경찰국: 교육구는 풀러튼 경찰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정보가 정확하고 적시에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Facebook - Fullerton Police Department](#)
 - [Instagram - @fullertonpd](#)
 - [X - @FPDPIO](#)
- **News Media** 뉴스 미디어: 교육구는 지역 언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ATTACHMENT #28
Fullerton School District
Parent Notice
학부모 공지사항

**Available Language Programs and
Language Acquisition Programs**

이용 가능한 언어 프로그램 및 언어 습득 프로그램

풀러튼 교육구는 학생 등록을 위한 다음과 같은 언어 및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C Section 310[a]).

• **Structured English Immersion (SEI) Program:** 체계화된 영어 집중 프로그램 (SEI)

거의 모든 교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지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커리큘럼과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최소한, 학생들은 ELD 를 제공받으며 학년 수준의 교과 내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 (EC) 섹션 305 (a) (2) 및 306 (c) (3).

• **Dual-Language Immersion (DLI) Program (English/Spanish):**

이중-언어 집중 프로그램 (DLI) (영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집중 프로그램 (DLI)은 양-방향 집중 (Two-Way Immersion)이라고도 합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 1, 2차 언어 숙련도 및 타 문화 이해의 목표에 따라 영어 원어민 및 다른 언어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과 학문적 가르침을 제공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킨더가튼-TK학년에서 시작해서 8학년까지 계속됩니다. EC 306 (c) (1).

• **Dual-Language Immersion (DLI) Program (English/Korean):**

이중-언어 집중 프로그램 (DLI) (영어/한국어)

양-방향 집중 (Two-Way Immersion)이라고도 합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 1, 2차 언어 숙련도 및 타 문화 이해의 목표에 따라 영어 원어민 및 다른 언어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과 학문적 가르침을 제공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킨더가튼학년에서 시작해서 8학년까지 계속됩니다. EC 306 (c) (1).

언어 습득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가능한 언어 및 언어 습득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합니다. 구두, 디지털 또는 서면 요청을 해당 지역 학교의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 Date of request 요청 날짜
- Parent and child names 학부모와 자녀 이름
- Description of request 요청에 대한 설명
- Grade level 학년

How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gram at a School:

학교에서의 새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하는 방법

학교 당 30 명 또는 그 이상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 또는 어느 학년에서든지 20 명 이상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언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학교는 가능한 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EC Section 310[a])

A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영어 학습자의 학부모는 학교의 언어 습득 프로그램이나 언어 습득 프로그램 내 특정 영어 학습자 서비스 참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U.S.C 제 6318 조[c][A](vii)) 그러나 LEA 는 학생이 재분류될 때까지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5 CCR 제 11302 조), 진전이 없는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고, 그 시점에 학부모가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About Language Acquisition Programs and Language Programs

언어 습득 프로그램 및 언어 프로그램 정보

Program Type 프로그램 종류	Characteristics 특성
Language Acquisition Program (English Learners) 언어 습득 프로그램 (영어 학습자)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section 11309 requires that any language acquisition program provided by a school, district, or county shall: 캘리포니아법 시행 규칙 11309 항에 따라 학교, 교육구, 또는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언어 습득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증거 기반 연구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지정되고 통합된 영어 언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 교육 기관 (LEA)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인증을 받은 자격증 소지 교사들, 필요한 교육 자료,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 개발, 그리고 제안된 프로그램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 •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어에서 학년 수준의 숙련도, 프로그램 모델에 다른 언어로 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언어에 대한 숙련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 국가에서 채택한 영어 교육 콘텐츠 표준을 달성하고, 프로그램 모델에 다른 언어로 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언어로 국가에서 채택한 교육 콘텐츠 표준을 달성합니다.
Language Program (non-English Learners) 언어 프로그램 (비-영어 학습자)	• 언어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영어 이외의 언어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Parent and Community Engagement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학부모님들은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개발 과정에서 지역 교육 기관 (LEA)의 언어 및 언어 습득 프로그램에 대하여 또는 LEA 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입력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 Section 52062). 위에 나열된 프로그램 외의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과정에 대해 학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 #29

Statewide Testing Notification

주 전체 실행 학력 평가 테스트 공지사항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주 전역에 걸쳐 몇가지 필수 시험을 치룹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학부모/보호자, 교사 및 교육자에게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으며 대학과 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지역, 주 및 연방 정부 책임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e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CAASPP) tests consist of the following:

학생 성과 및 진도에 대한 캘리포니아 평가시험 (CAASPP)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 assessments** 보다 균형잡힌 컨소시엄 평가시험 (SBAC)

Smarter Balanced 컴퓨터 적응형 평가시험은 Common Core 주 표준 (CCSS)과 일치합니다. 영어 어문학/독해 작문력 (ELA)과 수학 시험은 3 - 8 학년까지의 학생들과, 11 학년 학생들이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 궤도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시행됩니다. 11 학년 때, ELA 및 수학 평가 결과는 대학 진학 준비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alifornia Science Tests (CAST)** 캘리포니아 과학 시험 (CAST)

컴퓨터 기반 CAST 는 학생들이 과학 및 공학 실습, 교육 핵심 아이디어 및 교차 개념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캘리포니아 차세대 과학 표준 (CA NGSS)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CAST 는 5 학년과 8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되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즉, 10 학년, 11 학년, 또는 12 학년)에게 시행됩니다.

- **California Alternate Assessments (CAAs)** 캘리포니아 대체 평가시험 (CAAs)

자격을 갖춘 학생 - 즉,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이 대체 평가시험 사용을 확인한 학생들만이 - CAAs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은 ELA 와 수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컴퓨터 기반 CAAs 를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관리합니다. 3 - 8 학년 학생들, 11 학년 학생들은 ELA 와 수학을 위해 CAAs 를 받게 됩니다. ELA 와 수학용으로 개발된 테스트 항목은 CCSS 와 일치하며 핵심 내용 연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5 학년, 8 학년,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 (즉, 10 학년, 11 학년 또는 12 학년)의 학생들은 과학 CAA 를 치룹니다. 과학 CAA 에 내재된 성과 과제는 CA NGSS 에서 파생된 대체 성과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학 CAA 를 치루는 학생들은 2019 년 봄에 세 가지 내재된 성과 과제를 치루게 됩니다.

- **California Spanish Assessment (CSA) for Reading/Language Arts** 독해/어문학에 대한 캘리포니아 스페인어 평가시험 (CSA)

스페인어 독해/어문학을 위한 선택적 CSA 는 캘리포니아 공통 핵심 주 표준 (Common Core) en Español 과 일치합니다. 이 컴퓨터 기반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은 청취력, 독해력 및 작문력에 대한 스페인어 실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60615 항에 따라 학부모/보호자는 매년 CAASPP 평가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자녀를 면제해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s for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영어 능력 평가

ELPAC 은 2012 년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표준과 일치합니다. 이 시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별도의 영어 능력 평가 (ELP)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영어 학습자로서의 학생을 초기에 식별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그들의 영어 학습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례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Physical Fitness Test

체력 테스트

캘리포니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체력 테스트는 FitnessGram®입니다. 이 시험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평생 습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5 학년, 7 학년, 9 학년 학생들이 체력 테스트를 받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December

ATTACHMENT #30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Courses

국제 학사 학위 과정

비치우드 학교에서만 제공됩니다

7th Grade - 7 학년

Math 7 - 7 학년 수학
Math 7 Honors - 7 학년 우등 수학
Algebra - 대수
English Language Arts 7 - 7 학년 영어
English Language Arts 7 Honors - 7 학년 우등 영어
English Language Comp 7 - 7 학년 종합 영어
History Social Science 7 - 7 학년 사회과학
Science 7 - 7 학년 과학
Cultural Connections II - 문화적 연결 II
IB Prep II - 국제학사 준비반 II
Creative Academy - 창의적 아카데미반
Student Leadership 학생 리더십
Advance Band - 고급 밴드
Advance Orchestra - 고급 오케스트라
History of Forensics and Science - 법의학 및 과학사
Guitar - 기타
Public Speaking - 대중연설
Writing and Game Theory - 글쓰기 및 게임 이론

8th Grade - 8 학년

Math 8 - 8 학년 수학
Algebra - 대수
Geometry - 기하학
English Language Arts 8 - 8 학년 영어
English Language Arts 8 Honors - 8 학년 우등 영어
English Language Comp 8 - 8 학년 종합 영어
History Social Science 8 - 8 학년 사회과학
Science 8 - 8 학년 과학
Cultural Connections III - 문화적 연결 III
IB Prep III - 국제학사 준비반 III
Creative Academy - 창의적 아카데미반
Student Leadership 학생 리더십
Advance Band - 고급 밴드
Advance Orchestra - 고급 오케스트라
History of Forensics and Science - 법의학 및 과학사
Guitar - 기타
Public Speaking - 대중연설
Writing and Game Theory - 글쓰기 및 게임 이론

Attachment 31

FULLERTON SCHOOL DISTRICT PET AND CLASSROOM ANIMAL PARTICIPATION WAIVER

애완동물 및 학급의 동물학습 참여 여부

학생들이 광범위한 범위의 동물과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해하고 친숙해질 필요성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개발시키고 교육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년 동안 학생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오는 다양한 애완 동물들, 학교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살아있는 동물, 또는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 또는 학습 경험의 일부로 교실에서 관리되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은 교육 체험의 일환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만지거나, 다루거나, 또는 돌보도록 격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동물은 교실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동물은 때로는 물거나 할퀴거나 또는 기타 인간의 접촉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충류는 취급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 질병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물과의 상호 접촉 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사고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동들과 성인은 고양이나 새와 같은 특정 유형의 동물에 민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촉의 결과로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을 포함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동물을 처음으로 다루기까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특정한 동물에게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과 그 특정 동물과의 상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온 애완 동물을 다루거나, 학습 경험의 일환으로 교실로 가져온 살아있는 동물을 돌보며, 또는 수업 프로젝트나 기타 교육 과정의 일부로 교실에 보관되어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전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개인 상해, 재산 피해, 또는 풀러튼 교육구가 교육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허가한 살아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소유한 애완 동물을 포함하는 교육 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 모든 종류의 자연적 혹은 모든 책임 청구 등에 대해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 그곳의 개별적 임원들, 교육구의 모든 임원들, 스태프들, 대리인들, 직원들 및 자원 봉사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CWA 7/2016

ATTACHMENT #32

집이 없는 아동의 교육 권리와 보호

정의

집이 없는 학생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적절한 잠자리의 주거지를 갖지 못하는 학생이며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법 48852.7; 42 USC 11434a)

1. 집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는 학생; 적절한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해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혹은 캠핑장에서 생활하는 학생; 응급시설 또는 이동대피소에서 생활; 병원에 버려진; 위탁가정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학생.
2. 정상인을 위한 적절한 숙박시설로 설계되지 않은 공공 또는 개인 시설의 잠자리가 주요 숙박지인 학생.
3. 자동차, 공원, 공공시설, 버려진 건물, 폐가옥, 버스 기차 정류장, 또는 비슷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4. 위의 1-3 번 항에 해당하는 형편으로 집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이주민의 자녀.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내에 있지 않는 동반자 없는 아동.

학생의 권리와 보호

- **즉각적 학교 등록:** 주거지 주소 확인, 예방 접종/의료 및 다른 학교 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 **안정된 학업:** 본래의 학교 또는 주거지 학교에 출석할 수 있음
 - 마지막 등록한 학교(**본래의 학교**)에 출석,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재 가족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주거지 학교**)에 출석 할 수 있음
 - 다음의 졸업-진학 형태의 학교에 출석할 수 있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리고/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 가족들이 영구주택을 마련한 경우 학생은 남은 학년도 동안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교에 계속 출석할 수 있다
- **이동 수단:** 학교 통학에 불편하지 않은 교통편
- **음식:** 자동적으로 무료 급식과 할인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활동과 프로그램:** 적절한 학교 활동과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한다
- **분쟁의 해결:**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의 해결 기간 동안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즉시 등록하고 출석할 수 있다

ATTACHMENT #33

Foster Youth Rights

위탁 청소년 권리

1. 원래 학교에 남을 권리

- 귀하는 새로운 위탁 보호시설로 이사한 후에도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원래 학교’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위탁 보호에 들어갔을 때 다녔던 학교,
 -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 또는
 - 지난 15 개월 동안 다녔다고 생각되는 학교.
- 귀하의 교육구는 귀하, 교육권리보호자(EHR), 보호자, 사회복지사/보호 관찰관과 협력하여 귀하를 원래 학교로 이송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같은 학교로 전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의견 차이가 해결될 때까지 원래 학교에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2. 즉시 학교에 등록할 권리

- 귀하는 배치를 옮긴 후 정규 홈스쿨에 즉시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점이 뒤처지거나 학교에서 정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학교나 독립 학습과 같은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강제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 귀하는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서류 (예: 출생 증명서, 성적 증명서 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가 없거나 학교에서 체크아웃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학교에 등록하고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전학교는 등록 후 새 학교로 교육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 귀하는 가입 시험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스포츠 팀, 개인 교습, 방과 후 클럽 등 새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학교 징계 권리

- 연속 5 일(수업일 기준) 이상 또는 한 학년도에 20 일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귀하는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를 알 권리가 있으며,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사건 및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행위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경우, 학교나 경찰에 구두 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ERH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정학 기간이 5 일 이상 연장되기 전에 귀하의 변호사와 사회 복지사가 회의에 초대되어야 하며, 정학은 귀하가 퇴학을 고려중인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퇴학되기 전에 공식 청문회를 받고 해당 청문회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 징계를 받을 경우 **ERH**, 변호사 및 사회 복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귀하의 행동이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4. 학교 기록에 대한 권리

- 귀하가 16 세 이상이거나 10 학년을 마친 경우 학교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의 사회 복지사/보호 관찰관 및 **ERH** 도 귀하의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보호자는 귀하의 현재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TTACHMENT #34

Firearms Safety Notification 총기 안전에 대한 알림

To: Parents and Guardians of Students in the Fullerton School District 풀러튼 학군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Subject: California Law Regarding Safe Storage of Firearms 총기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률

이 통지문의 목적은 풀러튼 교육구의 모든 학생의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캘리포니아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총기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을 알리고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총기를 학교에 가지고 왔다는 뉴스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동은 집에서 총기를 구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그고 탄약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총기를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보관하면 이러한 사고를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통지서는 화기 보관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간을 내어 이 알림을 검토하고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적인 관행을 평가하십시오.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California 는 아동이 사전 동의 없이 총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자신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구내에서 총기를 장전 또는 하역한 상태로 보관하는 데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게 합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 그리고 아동이 총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여 (1) 아동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2) 유치원이나 유치원에서 12 학년까지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활동 또는 공연을 포함하여 구내 또는 공공 장소로 총기를 운반하는 행위; 또는 (3) 타인에게 총기를 불법적으로 회두르는 행위.¹

참고: 아동이 총기에 접근한 결과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California 는 어린이가 총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장소에 장전 여부에 관계없이 총기를 부주의하게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실제로 총기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아동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²

2020 년 1 월 1 일부로 잠재적인 벌금 및 구금 기간 외에도 이러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총기 소유자는 10 년 동안 총기를 소유, 통제, 소유,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³

마지막으로, 부모나 보호자는 그 사람의 자녀나 피보호자의 총기 발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⁴

참고: 귀하의 카운티 또는 시에는 총기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하여 추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 웹사이트 <https://oag.ca.gov/firearms/tips> 에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을 준수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총기를 잠긴 용기에 잠가 두거나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로 고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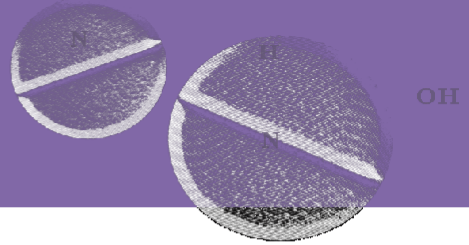
1 캘리포니아 형법 섹션 25100 에서 25125 및 25200 에서 25220 을 참조하십시오.

2 캘리포니아 형법 섹션 25100(c)를 참조하십시오.

3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29805 를 참조하십시오.

4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714.3 을 참조하십시오.

오피오이드 처방: 알아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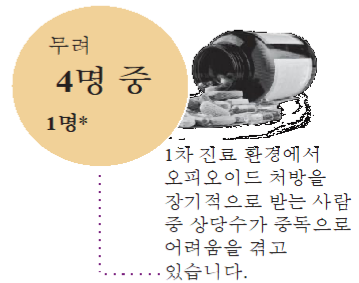


오피오이드 처방약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수술이나 부상 후 또는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은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심각한 위험도 수반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헬스케어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오이드 사용의 위험과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오피오이드 처방은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 및 과다 복용의 심각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이 느려지는 증상은 종종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처방을 사용하면 지시대로 복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성 - 동일한 통증 완화를 위해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의존성 - 약물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증에 대한 민감도 증가
- 변비
- 메스꺼움, 구토, 입 마름
- 졸음과 현기증
- 착란
- 우울증
-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성욕, 에너지, 근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려움증과 발한



다음의 경우 위험이 더 큽니다.

- 약물 남용, 약물 사용 장애 또는 과다 복용 병력
- 정신 건강 상태(우울증 또는 불안증 등)
- 수면 무호흡증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신

오피오이드 처방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음주를 피하십시오. 또한, 헬스케어 제공자가 특별히 권고하지 않는 한 피해야 할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조디아제핀류(예: 자낙스 또는 발름)
- 근육 이완제(소마 또는 플렉세틸 등)
- 수면제(암비엔 또는 투네스타 등)
- 기타 오피오이드 처방



미국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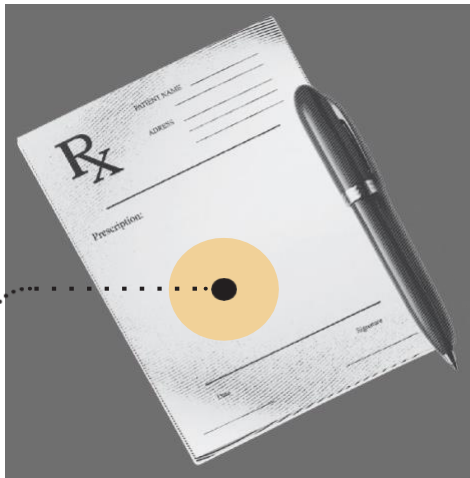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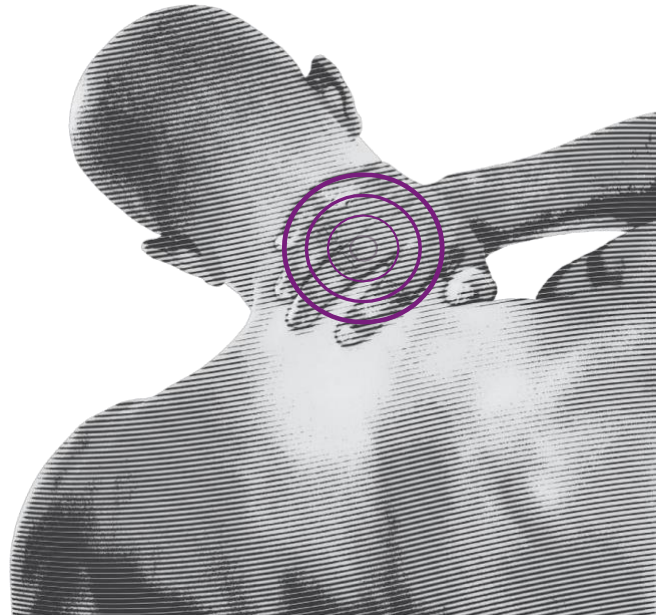
15244107C

2016년 5월 4일

옵션 알아보기

오피오이드 처방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헬스케어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실제로 더 효과적이고** 위험과 부작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진통제
- 우울증이나 발작에도 사용되는 일부 약물
- 물리 치료와 운동
- 인지 행동 치료는 환자가 통증과 스트레스의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유발 요인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적, 목표 지향적 접근 방식입니다.



숙지하십시오! ◀

복용하는 약의 이름, 복용량과 복용 빈도, 잠재적인 위험 및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은 경우:

- 오피오이드를 처방된 양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하지 마십시오.
- 일 이내에 기본 헬스케어 제공자의 추적 관찰을 받으십시오.
 - 함께 상의하여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 오피오이드 처방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 모든 우려 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상담합니다.
-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십시오.
 -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를 판매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이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를 타인(방문자, 어린이, 친구, 가족 등)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사용하지 않은 오피오이드 처방약은 안전하게 폐기하십시오. 미국 식품의약국의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의약품 수거 프로그램 또는 약국의 우편 회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번기에 버리십시오(www.fda.gov/Drugs/ResourcesForYou).
- 오피오이드 남용 및 과다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www.cdc.gov/drugoverdose 를 방문하십시오.
-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알리고 지침을 요청하거나 다음 번호로 SAMHSA의 전국 헬프라인에 연락하십시오. 1-800-662-HELP.

자세히 알아보기 | www.cdc.gov/drugoverdose/prescribing/guideline.html

This parent publication was created by the Superintendent's Office,
Fullerton School District.

Fo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all Helene Morris, Ed. D., at
714-447-7529.

이 학부모 간행물은 플러튼 교육구 교육감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714)447-7529 로 연락해 주십시오.

행정 서비스 담당자 Helene Morris Ed. D.